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2022. 11. 7. 월 | 14:00~16: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결 과 보 고 서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일시 | 2022. 11. 7. 월 14:00~16:00

장소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2022. 11. 7. 월 | 14:00~16: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진행순서

1 | 개회사 및 축사 14:00 ~ 14:20

개회사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격려사 **김진표** 국회의장

축 사 **박대출** 국회기획재정위원장

2 | 주제발표 및 토론 14:20 ~ 16:00

사회자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발제 1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발제 2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토 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장혜영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2022. 11. 7. 월 | 14:00~16: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목 차

개회사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12
격려사	김진표	국회의장	14
축 사	박대출	국회기획재정위원장	16
발제 1	고광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3
발제 2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43
토 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59
	류성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69
	장혜영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85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	111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25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격려해주시기 위해 자리해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 축하의 말씀을 준비해주신 박대출 국회기획재정위원장님,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신동근 간사님, 류성걸 간사님, 장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를 맡아주신 전주성 교수님과 발제를 해주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님,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님, 토론에 나서주실 유호림 교수님, 김우철 교수님, 그리고 오늘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국내외 통화긴축으로 인한 금리 상승,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면서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조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출한 정부의 2022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기업경쟁력 제고, 투자·고용 활성화, 서민·중산층 지원 확대, 유류세 부담 완화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관련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다양한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수의 쟁점사항이 내포되어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 층 더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 대책의 효과성,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과세형평성 및 재정건전성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로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 및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모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참석하여 빛내주신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국회의장 김진표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조의섭 예산정책처장님과 예정처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와 금리·환율이 모두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복합위기 국면입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대내외 여건이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위기와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조세는 정부의 재원 조달 수단일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세정책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합니다. 정치·사회·경제적 목적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조세정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영국의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사태에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재정·금융정책 등 거시정책 기조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조화롭게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합니다. 국회는 각 정책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인지,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세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국회와 정부, 학계가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조세정책 운용 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뜻깊은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박대출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대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신동근 간사님, 류성걸 간사님, 장혜영 의원님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를 맡아주신 전주성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님,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님과 유호림 교수님, 김우철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영향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상기후, 주요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적 요인으로 글로벌 경제 전망도 어둡습니다.

점증하는 경제 위기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내 민생경제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초고령화가 진행되어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재정지출 소요와 조세부담의 지속적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열리게 된 오늘의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는 안정적인 국가 재정 운영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과 목표를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내실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개편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참석하신 여·야 의원님들과 전문가 분들께서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다양한 고견을 기탄없이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재정과 조세 제도에 대한 최적의 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박대출**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 발제 1 |

2022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고광효

| 발제 2 |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이정은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 제 1

2022년 세제개편안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22년 세제개편안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1

CONTENTS

1. 조세정책 여건 및 기본방향
2.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 2-1. 경제 활력 제고
 - 2-2. 민생안정
 - 2-3.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3.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2

1

조세정책 여건 및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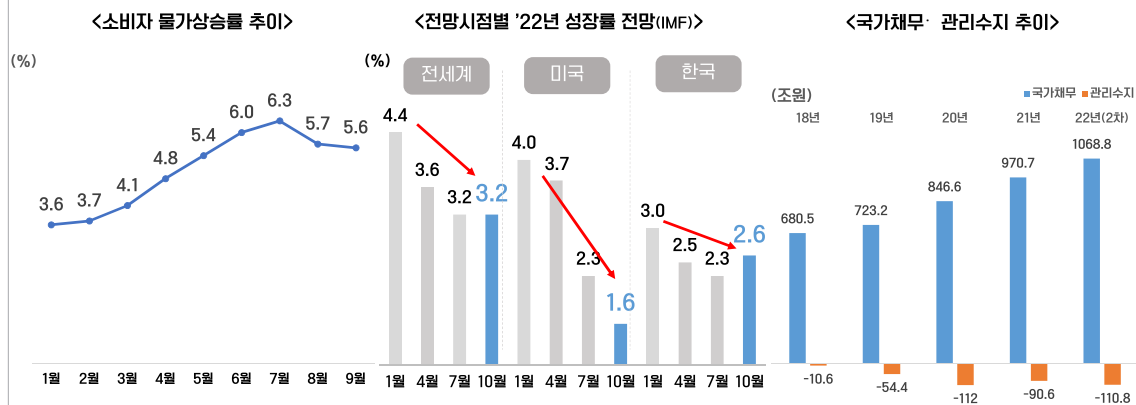
· 조세정책 여건

· 기본방향

3

조세정책 여건

고물가경기둔화 우려되는 가운데, 국가채무 지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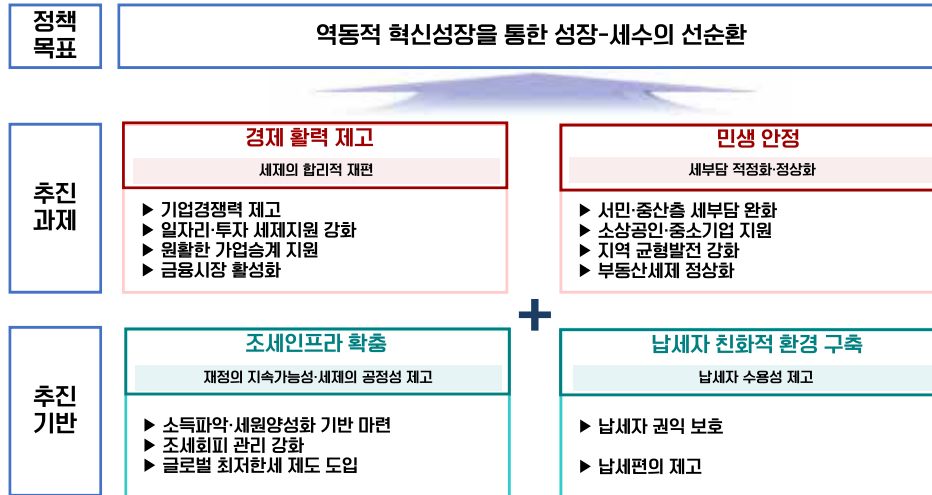


➡ 저성장 극복, 민생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할 필요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세입기반 확충 추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4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에 역점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충 노력 강화



2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2-1. 경제 활력 제고

- 법인세 과표구간·세율체계 개선
-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
- 금융시장 활성화
- 기타 투자·고용 창출 유인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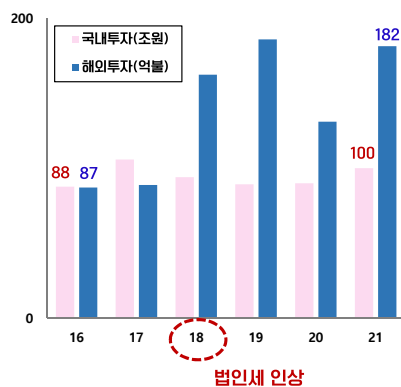
7

법인세 과표구간·세율체계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 조세경쟁력 하락

✓ 국내 기업의 국내투자 위축, 해외투자 확대

< 국내 제조업기업의 국내외 투자 >



✓ 외국인들의 국내투자 부진

< 외국인 제조업 국내 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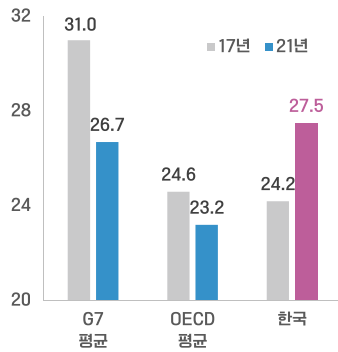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세제실

8

법인세 과표구간·세율체계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 조세경쟁력 하락, But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선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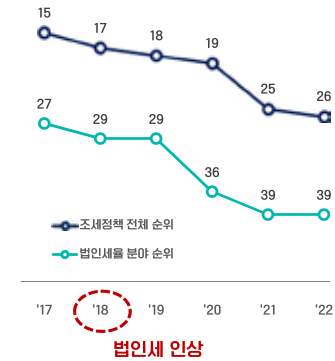
<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



< 과세표준 구간 수 >



< IMD 조세정책 국가경쟁력 순위(63개국) >



기획재정부 세제실

9

법인세 과표구간·세율체계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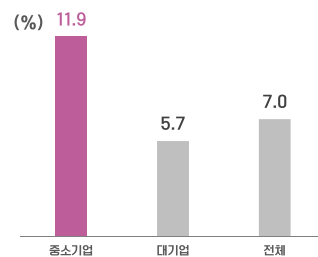
✓ 과표구간 단순화 + 특례세율(10%) 적용

< 법인세제 개편안 >

과표구간	현행	개편안
~2억원	10%	10% (중소·중견)
2~5억원	20%	20%
5~200억원	22%	22%
200~3,000억원	22%	22%
3,000억원 초과	25%	22%

✓ 높은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률

< 납부세액 대비 세부담 경감률 >



➡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자 등 국민경제 전반에 혜택
중장기적으로 세수기반 확충 →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

기획재정부 세제실

10

법인세 개편 관련 주요 제기사항

Q. 민생지출이 시급한데 지금 꼭 해야 하는 건지?

- ✓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경쟁 치열
→ 경쟁력 강화 노력 배가 절실
- ✓ OECD 국가 경쟁적 법인세를 인하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도모



Q. 경제적 효과 의문

- ✓ 그간 주요국 법인세를 인하 경험적 입증

인하 (24개)	벨기에,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이스라엘, 이탈리아, 노르웨이,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영국, 슬로베니아, 헝가리, 룩셈부르크, 체코, 미국, 프랑스, 그리스, 칠레, 콜롬비아
인상 (6개)	한국, 멕시코,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터키, 라트비아

- ✓ 실증연구 다수 존재

OECD	법인세율 35 → 30% 인하시, 투자비용 1.9% 증가
IMF	'18년 미국 법인세 인하 투자증가로 GDP 1.2% 제고
KDI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1%p 인하시 투자를 0.2%p 증가

- ✓ 우리나라도 역대 정부 지속 인하, 30년 이상 2개 구간 유지
- ✓ 기업성장·투자에 효율적·합리적

법인세 개편 관련 주요 제기사항

Q. 대기업·부자 감세 아닌지?

- ✓ 기업 규모별 균형 있게 법인세 경감

세제개편안에 따른 납부세액 대비 세부담 경감률
: 중소기업 11.9% > 대기업 5.7%

		단위 : 조원		
		전체 세액 ('21년, A)	법인세율 조정감세효과(B)	B/A
대기업	3,000억 초과	24.4	△2.5	△10.2%
	3,000억 이하	16.2	+0.2	+1.2%
	소계	40.5	△2.3	△5.7%
중견기업		4.6	△0.1	△2.2%
중소기업		15.1	△1.8	△11.9%
전체		60.2	△4.2	△7.0%

- ✓ 법인세의 최종 부담주체는 기업이 아닌

- ✓ 법인세 인하는 사회 전반에 혜택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제품 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혜택

최근 개인과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증가로
중산층 주주에게 돌아가는 효과 확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

조세부담, 엄격한 기업상속공제 요건 등이 기업에 걸림돌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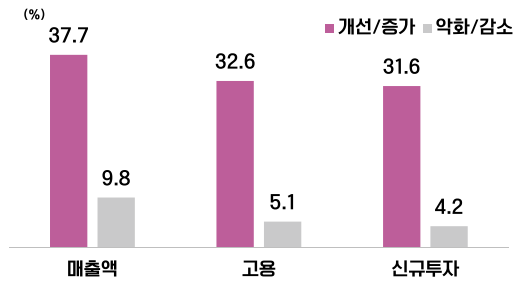
✓ 투자·고용 증대 + 기업성장 차원에서 중요

✓ But 조세부담, 사전요건 충족 등 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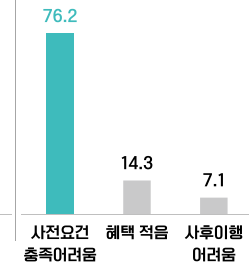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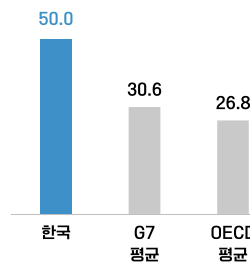
〈 기업승계 경험기업 승계 전후 변화 〉

〈 상속세 최고세율 〉

〈 기업상속공제 미이용 사유 〉



- '21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중기중앙회) -



기획재정부 세제실

13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

기업승계 활성화 → 세대간 기술·자본이전 촉진

선택권 확대

납부유예제도 신설,
기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 허용

매출액 기준 확대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2배 이상 대폭 확대(0.4-→1.0조원)

사후관리 요건 완화

사후관리 기간 축소
(상속 개시 후 7-→5년) 등

생전 승계 활성화

생전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한도
기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

기획재정부 세제실

14

Q. 기업상속공제 확대가 부자감세인가?

1. **영구면제가 아닌 이월과세**
기업상속공제 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14.1.1. 시행)
→ 상속인이 주식 등 양도 시 자본이득 적정 과세
2. **독일은 기업규모 제한 없이 운영 중**
기업 규모 제한 없이 공제한도(9천만 유로<약 1,200억 원>) 범위 내에서 공제
3. **고용·투자 유지·창출 효과**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 단절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안 필요
4. **일본도 단카이 세대 은퇴에 따른 기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기업승계 집중기간('18~'27년)을 정하고 납부유예 한도 폐지 및 비율 상향(80% → 100%)

"기업 물려받는 것보다 부동산 상속이 경제적 이득" 한국경제 (2021-07-25 A25 기사)
국내 1세대 중소기업 창업주 사이에선 "까다로운 기업승계보다 현금 또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금융시장 여건 등 감안, 주식시장 활성화·투자자 부담 완화 등 추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23 → '25년)

*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고려

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 보유금액 종목당
10 → 100억원 상향 조정 등

증권거래세

'23년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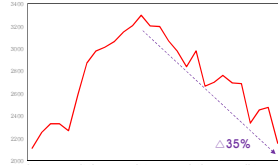
* ('22) 0.23% → ('23) 0.20%
→ ('25) 0.15%

금투세 유예 필요 이유: 1. 거시경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 과세신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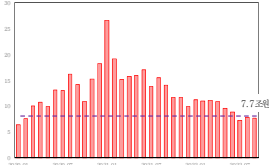
시장회복 지연

- ✓ 고점 대비 주가지수 30% 폭락
코로나19 이전으로 거래대금 감소
- ✓ 시장여건 고려 없이 과세하는 경우
시장 회복이 장기화될 우려

코스피 지수(pt)



코스피 일평균거래대금(조원)



자본유출 가속화 우려

- ✓ 국내 상장주식의 세제상 이점이 사라짐
→ 해외주식으로 이탈 가속화 → 환율 악영향

국내주식		해외주식
현행	금융투자세	
대주주 과 비과세	전면과세 20% (22세 5000만원)	20% (88세 2500만원)
1.5만원	15만원	

투자자 이탈 가능성

- ✓ 과세대상 10배 증가(1.5→15만명)
- ✓ 상장주식 세부담은 +1.5조원 증가
- ✓ 주식투자자 대부분은 금투세 모름
(유예 5만명 청원)
- ✓ 대만의 선례

금투세 유예 필요 이유: 2. 투자자 보호장치 정비 선행, 제도 보완 등 추가 준비기간 요구

투자자 보호장치 정비

- ✓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받는 국내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정비 선행

〈개인투자자 보호 관련 주요 국정과제〉

- ✓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강화
- ✓ 상장폐지 요건 정비
- ✓ 내부자거래 관련 규제 강화
- ✓ 외부감사 등 투명성·공정성 개선

제도 보완 필요

- ✓ 과세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사항 정비 필요

*(예) 금융사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도록 펀드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등

- ✓ 제도 완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시행시 시장 혼란이 우려

주식 양도과세 완화 이유: 시장활성화 및 일반투자자 혜택 차원 접근

✓ 주식시장 활성화는 일반투자자의 혜택

-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
-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일반투자자 혜택

✓ 연말 주식매도 시장왜곡 완화

- 매년 연말 양도세 회피 목적의 개인투자자 주식매도 현상으로 시장왜곡 발생
- 대주주 요건을 3억원 → 10억원으로 상향('21.4월~)한 '20년 연말은 순매수로 전환

당해연도 12월 개인투자자 순매수금액 규모(조원)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코스피	△3.3	△0.7	△0.8	△1.4	△1.4	△3.7	△1.2	△3.8	3.7	△6.4
코스닥	△0.0	△0.0	△0.2	△0.2	△0.1	△1.5	△0.3	△1.0	0.3	△1.2

* 적색음영: 대주주 범위 강화 직전 연도

✓ 주식시장 자금유입으로 기업투자 증가 등 선순환 효과

* 한국 주식 양도세 인하시 기업투자가 증가한다는 실증연구 결과
 ("Capital gains and real corporate investment"(Terry S. Moon)(美 American Economic Review, '22.8)

일자리·투자 등 세제지원 강화

배당금 이중과세조정

- 내국법인이 국내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

이월결손금

-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 결손부담 경감 위해 공제 한도 상향(60→80%)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 제도 실효성 등 고려,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폐지

투자세액공제

-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2%p 상향
-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상향

통합고용 세액공제

- 고용 관련 유사 세제 지원(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을 통합·확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장기근무 유도 위해 특례(19%) 적용기간 제한 폐지

2-2. 민생 안정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부동산세제 정상화

2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 하위 2개 과표구간 상황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안 >

현행		개편안	
과세표준(단위 : 만원)	세율	과세표준(단위 : 만원)	세율
~ 1,200	6%	~ 1,400	6%
1,200 ~ 4,600	15%	1,400 ~ 5,000	15%
4,600 ~ 8,800	24%	5,000 ~ 8,800	24%
8,800 ~ 15,000	35%	(좌 등)	
15,000 ~ 30,000	38%		
30,000 ~ 50,000	40%		
50,000 ~ 100,000	42%		
100,000 ~	45%		

✓ 하위구간 세부담 27% 감소

< 총급여 수준별 과세표준 조정 효과 >

총급여	과세표준	세액(단위 : 만원)			
		현행	개편안	증감	
				증감액	증감율
3,000만원	1,400만원	30	22	△8	△27.0
5,000만원	2,650만원	170	152	△18	△10.6
1억원	7,100만원	1,010	956	△54	△5.3
1.5억원	1.2억원	2,430	2,406	△24	△1.0
3천만원/1억원 세부담 비율		34배	44배		

기획재정부 세제실

22

15년만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배경

▷ '08년 이후 15년간 하위 과표구간 변동없이 유지

✓ ('08년) 1,000만원 → 1,200만원 / 4,000만원 → 4,600만원

▷ 누적 물가상승('08년 대비 '21년, 25.5%) 에 따라 저소득층 실질 세부담 증가

▷ 최근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중산층 지원 필요

➔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하위 2개 과표구간만 조정 + 고소득층 세부담 경감 폭은 축소*

* 총급여 1.2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세부담 경감액 : △54만원 → △24만원)

근로·재난장려금 확대 및 주요 생계비 등 부담 완화

근로·재난 장려금

• 재산요건 완화(2 → 2.4억원 미만) 및 최대 지급액 10% 수준 인상

식대

•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 → 20만원)

주거비

• 월세 세액공제를 상향(최대 12 → 15%)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확대(연 300 → 400만원)

교육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학입학전원료, 수능응시료)

양육비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교통비

• 하반기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상향 조정(40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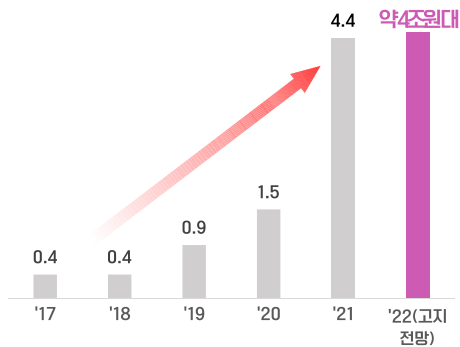
종합부동산세 개요 및 연혁

- (개요) - 종부세 = (공시가격 합계액 - 기본공제*)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 11억원 ** '22년 60%
- (도입 취지) - 2005년부터 도입
- 인별합산 누진 과세 → 물건별 과세인 재산세의 한계를 보완
- (연혁) - '18년까지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단일 누진세율체계 약 15년간 운용
- '19년부터 다주택자 종과세율을 적용하여 이중 누진세율체계 운용
- '21년부터 세율 대폭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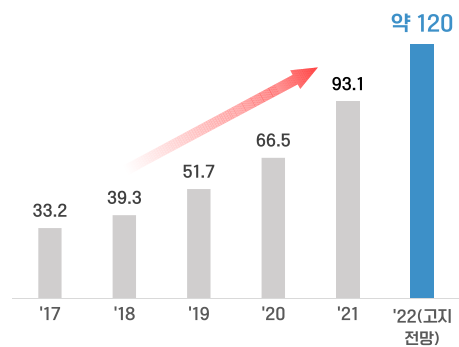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 → 세부담 급증

- ✓ 과세 강화 이전('17~'18년) 대비 종부세액 약 10배 급증
- ✓ 같은 기간 과세인원 약 3.5배 증가

< 연도별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조원) >



< 연도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만명) >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종과 폐지 필요성

▷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요소 완화 (누진세율은 가액기준으로 지속 적용)

- ✓ 다주택자 종과는 다주택자에 두 번의 누진과세 적용
→ 고가주택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라는 당초 취지에 배치



- ✓ 주택가액 낮은 다주택자가 가액이 더 높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
→ 동일 주택가액, 동일 세부담이라는 응능부담 원칙, 조세공평 원칙 저해



공시가격합산 20억원 다주택자
→ 종부세 3,114만원



공시가격 25억원 1주택자
→ 종부세 2,165만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

- ✓ (세율 체계) '주택 수 차등 과세' → '가액기준 과세' 전환 + 세율 조정
- ✓ (세부담 상한) 일반 150%, 다주택 300% → 150%로 단일화
- ✓ (기본공제) 일반 6억원 → 9억원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 주택분 종부세 세율 개편안 >

과세표준	'18년 이전	'19~20년		'21년 이후		개편안
		일반	다주택	일반	다주택	
3억원 이하	0.5	0.5	0.6	0.6	1.2	0.5
3~6억원		0.7	0.9	0.8	1.6	0.7
6~12억원	0.75	1.0	1.3	1.2	2.2	1.0
12~25억원	1.0	1.4	1.8	1.6	3.6	1.3
25~50억원						1.5
50~94억원	1.5	2.0	2.5	2.2	5.0	2.0
94억원 초과	2.0	2.7	3.2	3.0	6.0	2.7

* 법인 : (현행) 일반 3.0%, 다주택 6.0% 단일세율 → (개정안) 2.7% 단일세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

✓ 개편안에 따른 세부담 사례 분석

→ 주택보유 상황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연도별 세부담 변동 산출

< '20년 공시가격(합계) 20억원인 경우 연도별 증부세 부담 >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가정)	
	공시가 (억원)	세액 (만원)	공시가 (억원)	세액 (만원)	공시가 (억원)	세액 (만원)	공시가 (억원)	세액 (만원)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50% 가정)	20	369	22.5	447	26.7	397	26.7	391
인별 1주택자		890		1,616		1,180		1,078
조정 2주택자		1,298		3,773		2,455		1,123

*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21) 19.1 ('22) 17.2

※ '23년 세부담을 '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감

* GDP 대비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 첫 해

기획재정부 세제실

29

2-3.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조세인프라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30

세입기반 확충 및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소득과세체계 확대 구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상용근로·기타소득 연 1~2회
→ 월별 제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저한세율(15%) 대비 실효세율 낮을 시 추가 과세권 부여

* '24년 시행 추진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매입자 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등

* 면세재화 매입자도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 발행가능
(’23.7월 시행 추진)

3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 세수효과

· 세부담 귀착

세수효과

✓ 금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 **△13.1조원(5년간 60.3조원)**

- (연도별) : '23년 △6.4조원, '24년 △7.3조원으로 '24년에 더 큰 영향
- (세목별) : 소득세 △2.5조원, 법인세 △6.8조원으로
소득세·법인세가 전체 세수효과의 71% 차지

✓ 세부담 귀착

(단위: 조원)

	개 인		법 인		기타 ²⁾	합 계
	서민 중산층 ¹⁾	고소득층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3.4	△2.2	△1.2	△6.5	△2.4	△3.3

1) 전체 임금소득자 평균의 200% 이하인 자

2)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세부담 귀착(상세)

	개 편 안	세 수 효 과	
고소득층	•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1.3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0.2조)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0.2조), 업무용 승용차 필요경비 조정(+0.1조)	△1.2조	△5.3조 (40%)
대기업	•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25→22%)(△2.3조)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1.0조) •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종과세 조정 확대(△0.5조) •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2%p)(△0.3조)	△4.1조	
서민·중산층	•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1.0조),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0.2조) • 월세세액공제를 확대(10·12→12·15%)(△0.03조)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2→2.4억원) 및 최대지급액 10% 인상(△1.1조)	△2.2조	△4.6조 (35%)
중소·중견기업	• 법인세 10% 특례 세율 적용 및 하위 과세표준 구간 상향(2→5억원)(△1.9조) •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상향(+1~2%p)(△0.1조)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0.4조)	△2.4조	
기타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1.6조), 증권거래세 인하(△1.9조) • 주택분 종부세 세율 체계 개편(△2.0조)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등(△0.9조)	△3.2조	
전체		△13.1조	

감세철회를 통한 2023년 서민예산 확보 주장 관련

- '23년 세수효과 △6.4조원 중 △5.1조원은 민생지원
- △6.4조원 중 법인세는 △0.5조원, 그 중 대기업은 △0.3조원에 불과

* 대부분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보유세 부담 정상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개편안에서 발생

항 목	'23년 세수효과
근로자 세부담 경감, EITC 확대, 식대비과세 등 소득세	△3.5조원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1.5조원
여행편의를 위한 관세 등 기타	△0.1조원
민생분야(소득세, 증부세 등) 합계	△5.1조원
증시안정을 위한 증권거래세	△0.7조원
법인세 세율인하(대기업 귀착효과 △0.3조원)	△0.5조원
대기업 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0.06조원
환율안정을 위한 외국법인 등 국제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0.08조원
경제활성화(법인세, 증권거래세) 합계	△1.3조원
2023년 세수효과 합계	△6.4조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35

감사합니다.



36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 제 2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국회예산정책처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이정은 추계세제분석실장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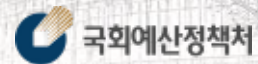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CONTENTS

- I 2023년도 국세수입 전망
- II 2022년 세법개정안 총괄 분석
- III 정부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분석
- IV 향후 과제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I 2023년도 국세수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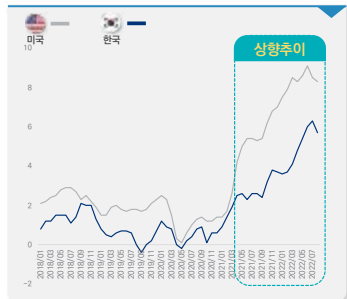
I-1 대내외 경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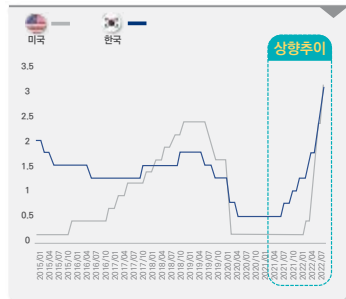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세 둔화 예상

- ▶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성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
- ▶ 물가 · 환율 · 금리의 상승 및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확대로 경제성장 둔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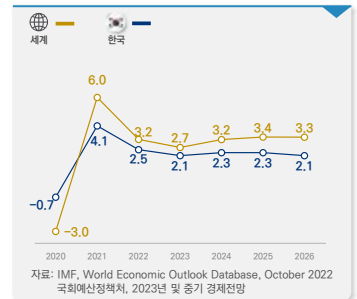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기준금리 추이 (%)



경제성장률 전망 (%)



주: 월별 추이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2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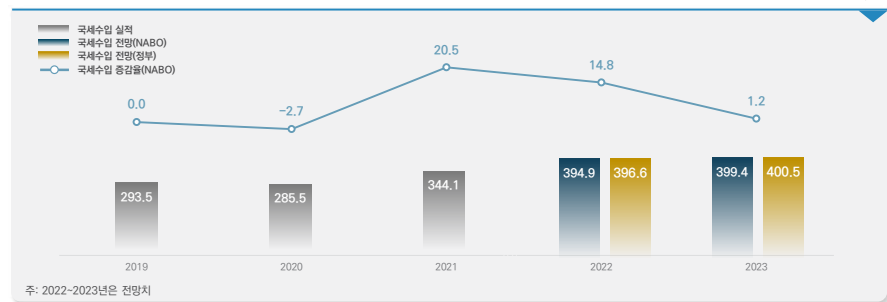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4

I -2 2023년 국세수입 전망(NABO)

NABO는 2023년 국세수입을 399.4조원으로 전망

- ▶ 경기회복세 둔화와 자산시장 부진으로 2022년 대비 4.6조원(1.2%) 증가에 그칠 전망 (정부 대비 △1.0조원)
- 2021~2022년은 법인실적 개선, 자산세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큰 폭(20.5%, 14.8%)으로 증가

국세수입 실적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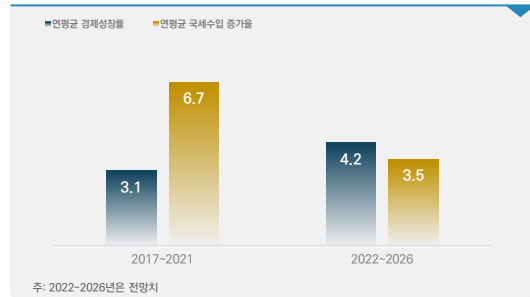


I -3 중기 국세수입 전망(NA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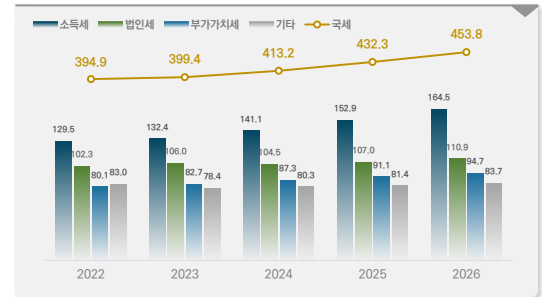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국세수입 증가율 전망

- ▶ 2017~2021년 : 국세수입 증가율(6.7%) > 경제성장률(3.1%)
- ▶ 2022~2026년 : 국세수입 증가율(3.5%) < 경제성장률(4.2%)
- 기업실적 부진, 자산시장 둔화 등 세입여건 약화 및 세수감소형 세제개편 등의 영향

경제성장률 및 국세수입 증가율 비교



중기 국세수입 전망 : NABO



II 2022년 세법개정안 총괄 분석

II-1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특징



정부 세법개정안은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주안점을 둔 세수감소형 세제개편



경제활성화 초점

- 법인세 세율 인하 및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 투자유인 확대를 통한 성장력 제고 취지
- 다양한 투자결정요인,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정책효과 미흡 우려



세수감소형 세제개편

- NABO 기준 △17.2조원(정부 기준 △13.1조원)
- 세입기반 약화 우려
- 최근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와의 정책조합 정합성 검토 필요



세제 단순화 추진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축소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등
- 정책수단의 효율성 제고 기대
- 단순화 과정에서의 부작용 최소화 필요



일부 정책 방향의 변경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및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종과세 폐지 등
- 새정부의 정책목표 및 전략 반영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정책 신뢰도 고려 필요

II-2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현황 및 특징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의원안 : 총 768건

▶ 기업경쟁력 제고, 투자·고용 활성화, 민생안정 등의 취지

기업 및 투자·고용 관련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벤처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확대

민생안정 관련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기타

가상자산 과세체계 변경
자동차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 감면 등 부담 완화
토지세 및 토지배당 신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주: 2022. 11. 2. 기준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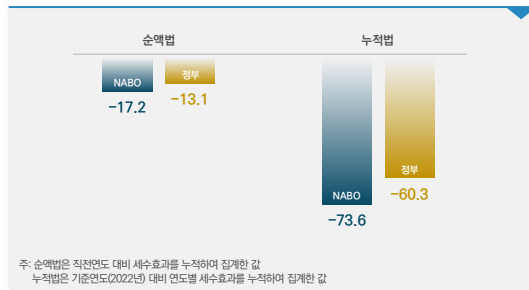
II-3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세수감소는 17.2조원(향후 5년간 누적 기준 73.6조원) 전망

- ▶ 정부는 13.1조원(향후 5년간 누적 기준 60.3조원) 세수감소 전망 (NABO와 4.1조원 차이)
- ▶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법인세 세수감소는 8.5조원으로 가장 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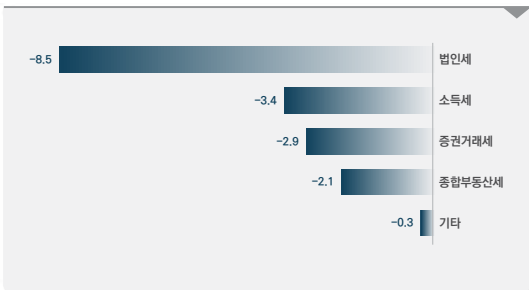
세수효과 비교 : NABO vs 정부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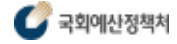
세목별 세수효과 : NABO, 순액법 기준

(조원)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10

II-4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부담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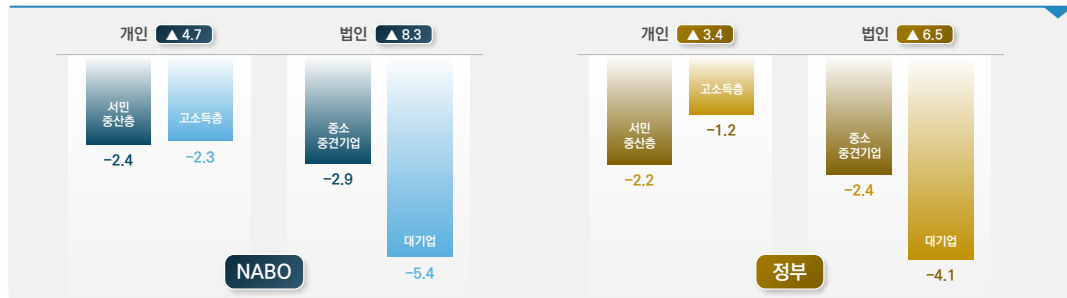


개인 세부담 4.7조원, 법인 세부담 8.3조원 감소 전망

- ▶ **개인**: 서민·중산층 △2.4조원 > 고소득층 △2.3조원 **법인**: 중소·중견기업 △2.9조원 < 대기업 △5.4조원
- ▶ 세부담 감소규모는 정부 대비 고소득층은 1.1조원, 대기업은 1.3조원 클 것으로 전망

세부담귀착 비교 : NABO vs 정부, 순액법 기준

(조원)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11

II-5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조세지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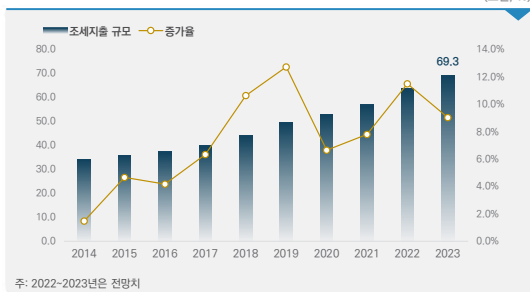


2023년 조세지출 규모는 69.3조원 전망 (전년대비 9.0% 증가)

- ▶ 2022년 조세지출 정비항목은 총 52개 (신설 5, 확대 33, 폐지 11, 축소 3)
- ▶ 조세지출 신설·확대에 따라 향후 5년간('23~'27년) 9.4조원의 세수감소 예상
- ▶ 2023년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4.3%)를 하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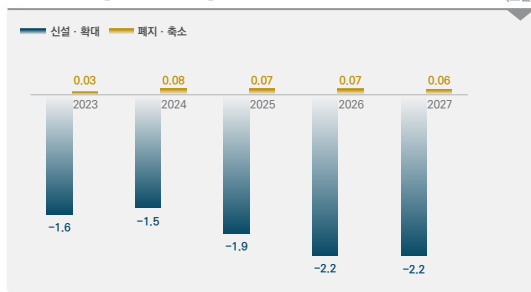
조세지출 규모 추이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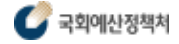
조세지출 정비효과 전망 : NABO

(조원)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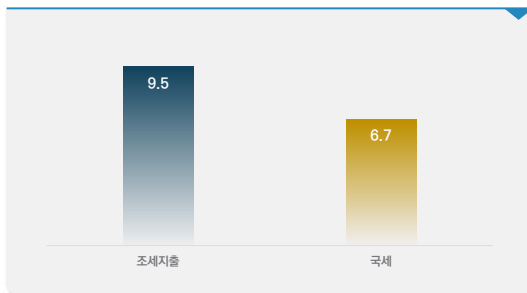
II-5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조세지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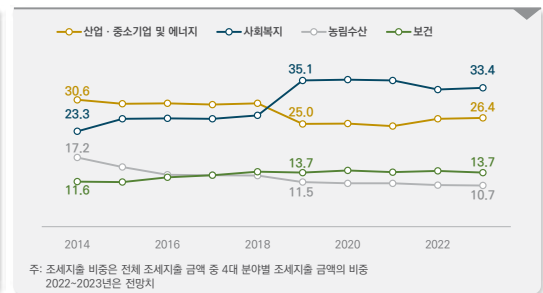
조세지출 규모 증가에 따른 비과세·감면 관리 강화 필요

- ▶ 최근 5년간 조세지출 증가율(9.5%)은 국세수입 증가율(6.7%) 상회
- ▶ 사회복지 분야 조세지출 증가 및 세수감소형 세제개편 등의 영향으로 조세지출 규모의 빠른 증가 예상

2017~2021년 조세지출 및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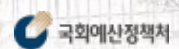


분야별 조세지출 추이 및 전망 : NABO (%)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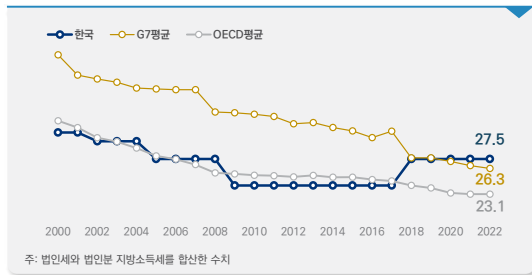
III 정부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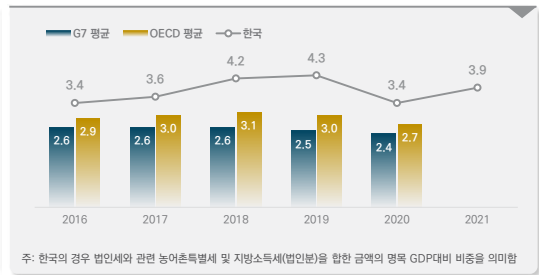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 ▶ 기업의 한계비용 감소로 투자·고용 유인을 확대하여 경제성장 촉진 효과 기대
- ▶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로 조세 효율성 제고 가능
- ▶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정책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 ▶ 법인세 세수의존도가 높은 만큼 단기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우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추이 (%)



명목GDP 대비 법인세 비중 (%)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15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방식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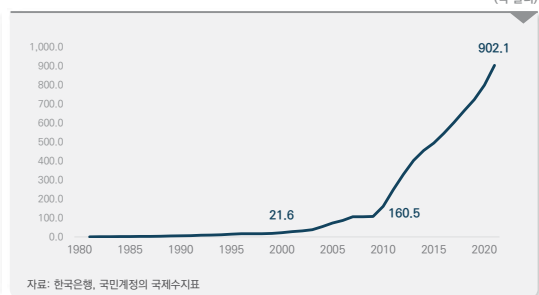
- ▶ (국내) 이중과세 조정 확대를 통한 비효율 개선 가능, 다만 일부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 하락 보완책 마련 필요
- ▶ (국외)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 증가 효과 기대, 다만 높은 익금불산입률(95%)로 국내자회사와 역차별 가능성

익금불산입률 하향 적용 지주회사

상장자회사 지분율 20~50%인 지주회사 :
익금불산입률 하향(80~100%→30~80%)

보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현행	개정안	(감소)
상장자회사	40~50%	100	80	△20
	30~40%	90	80	△10
	20~30%	80	30	△50

해외직접투자기업의 해외유보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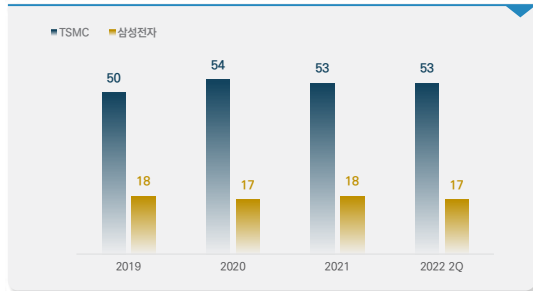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16

Ⅲ-1 법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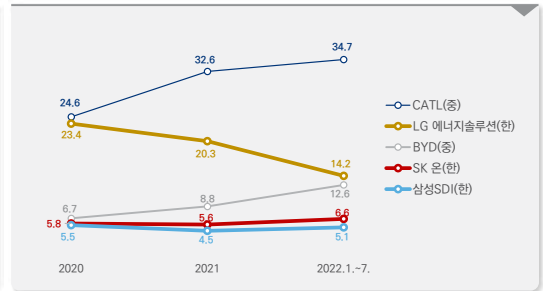
국가전략기술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 ▶ 국제적 기술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전략기술 확보에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 필요
- ▶ 다양한 투자결정요인 고려 시 실질적인 투자 유인효과와 불확실성 존재
- ▶ 국가전략기술 도입 직후(2021.7.) 정책효과 평가 없이 공제율 상향 추진

반도체(파운드리) 시장점유율 (%)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점유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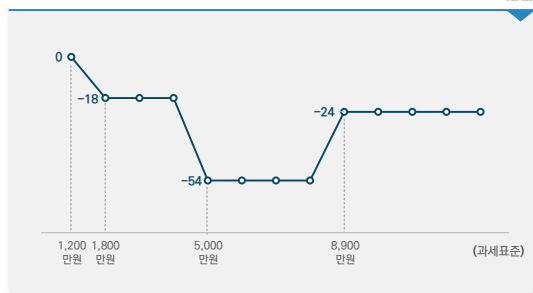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17

Ⅲ-2 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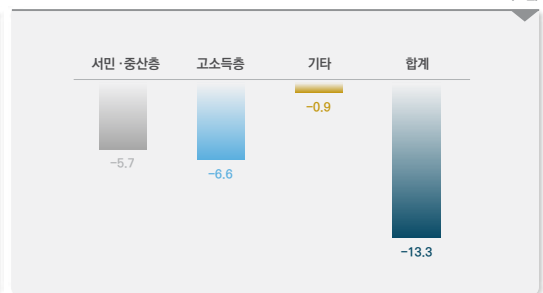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 2008년 이후 고정되었던 과세표준의 상향조정(하위 2개)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보전 효과 기대
- ▶ 서민·중산층 지원 효과*에 비해 세수감소 규모가 커(향후 5년간 △13.3조원) 향후 세입기반 약화 우려
- * 1인당 세수감소 효과는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0~54만원 수준

과세표준에 따른 1인당 세수효과 (만원)



세수효과 : 누적법 기준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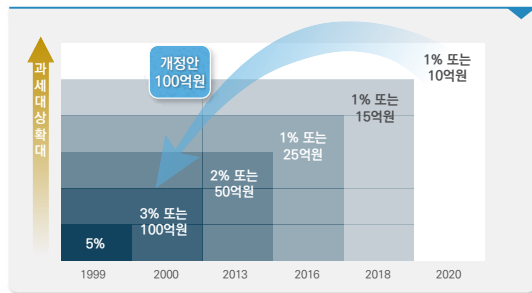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18

III-2 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 과세 완화를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 및 신규자금 유입 유도 기대
- ▶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는 기존 정책흐름과 상이
- ▶ 고액 금융자산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세부담 완화로 과세 형평성 약화 가능성

상장주식(코스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변화 추이



상장주식 개인투자자 비중 현황 : 2020년 기준 (%)

* 개인 종목별 주권상장법인 주식 보유액 기준

	10억원 미만	10~100억원	100억원 이상
인원 비중	99.97	0.02	0.01
보유액 비중	60.4	4.7	34.9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제공(2022.10.)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19

III-3 상속세 및 증여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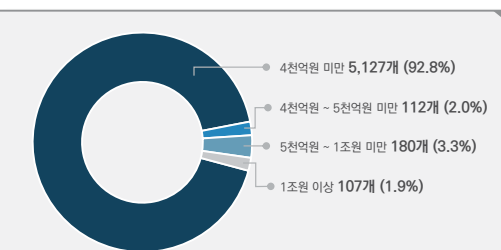
기업승계세제 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사후관리 완화

- ▶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통한 고용 안정 및 투자 확대에 기업성장 기여가능
- ▶ 적용대상 확대(중견기업의 92.8%—98.1%)의 적절성 검토 필요
- ▶ 일반상속자산과의 형평성, 사후관리 완화로 인한 조세회피 가능성 우려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변화 추이



매출규모에 따른 중견기업 현황 : 2020년 결산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중견기업 기본 통계 결과」, 202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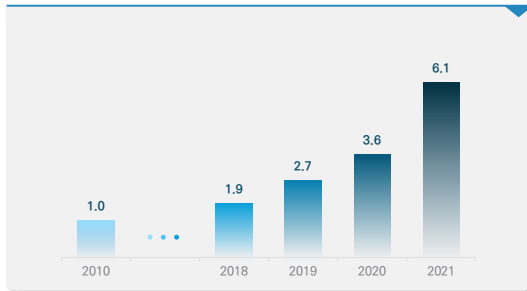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20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세율 인하 등

- ▶ 최근 빠르게 증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효과
- ▶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수준의 적절성 검토 필요
- ▶ 잦은 정책기조 변경에 따른 시장 영향 및 정책 신뢰도 저하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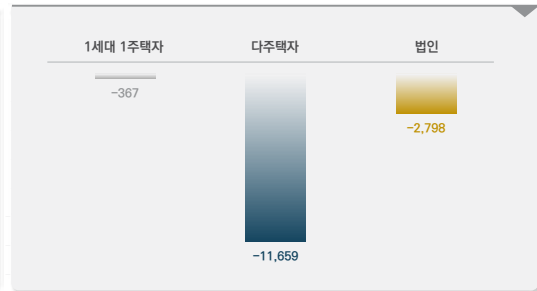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추이

(조원)



개정안에 따른 납세자 유형별 세수효과 : 2023년

(억원)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21

IV 향후 과제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 하에서 세법개정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정책 운용 방향 고민 필요



대내외적 불확실성 하에서 정부 세법개정안의 정책목표 달성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거시경제 및 개별 경제주체가 처한 상황 등에 따라 조세정책 효과 불명확
- 조세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재정 지원 등 전반적인 정책 연계 노력 필요



재정건전성 약화에 대비한 중장기 세입기반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및 성장잠재력 둔화, 증세의 정치적 수용성 감소 시 중장기 재정건전성 저하 우려
- 조세지출 정비 강화, 신규 세원 발굴 등 세입기반 확충 방안 논의 필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국회예산정책처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 토 론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장혜영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 | 토 론 1 |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문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 총평- 2022년 세법개정안 기본방향 문제

-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OECD의 권고(재정부담 확대 대비)'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유동성 증가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이'로 촉발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조세정책으로 보기 어려우며, 단지 '대기업과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를 위한 맞춤형 감세정책'으로 판단됨
- 예컨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부동산세제의 인하 및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은 모두 과거 MB정부에서 실패한 조세정책을 재탕하거나 확대한 것에 불과함. 금번 세제개편안은 결국 대한민국 조세제도가 10여 년 전인 MB정부로 회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
- 이와 같은 소수 대기업과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감세는 결국 국가재정의 원천이 되는 세원을 심각하게 침식하여,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감세정책을 지속해왔던 미국과 영국 등 선진 제국들처럼, 심각한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의 세제개편 결과, 개인과 소비 관련 조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법인과 자본에 대한 조세부담은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됐음. 이번 세법 개정안은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심화시키는 명백한 소수 대기업과 부자감세로, 결국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임

■ 2022년 세법 개정안 문제점

1. 법인세법 개편안 : '소수 대기업의 이윤추구 극대화를 위한 부자감세 세제개편'

- 이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100여 개에 불과한 소수의 대기업(2021년 기준)에 대한 대적인 '부자감세' 조치에 불과함
- MB정부에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낙수효과'로 인해 협력업체의 이익이 상승하고 투자와 임금도 증가하리라 주장했지만, 낙수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박근혜정부에서 '투자상생협력세제'를 도입한 것임
 - MB정부 시기의 정책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바,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상생협력세제는 일몰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치하거나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법인세법 제55조(세율)를 존치하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과세표준 5억원 이하)에 대한 특례세율(10%)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반도체와 배터리 및 바이오 산업군에 속하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과 현행 20% 내외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일반기업(약 10만여개)을 주요 대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100여개에 불과한 소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보다 감세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됨

2. 소득세법 개편안 : ‘고소득층을 위한 세제개편’

- 금번 개편안에서는 근로소득세 최저세율(6%) 적용 대상 과세표준구간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인상하고, 15%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도 1,400만원~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59조 개정)
 - 이밖에 총급여 7,000만원~1.2억원 이하에 대하여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 공제금액은 66만원~50만원으로 하되, 총급여 1.2억원 초과에 대하여는 50만원~20만원으로 그 한도를 축소하였음(소득세법 제59조 개정)
 - 이러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구간과 근로소득세액 공제기준금액 조정에 따르면, 대부분 중산층과 서민인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이 총액 2조 3,000억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대상자인 중저소득 근로자(과세표준 8,800만원이하)가 약 1,800만명(면세점 미만 약 700만명 포함)에 달하기 때문에 1인당 감세액은 약 12만 6천원에 불과하기 때문임¹⁾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근로자보다 더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확인되며, 최저세율 6% 적용 대상자는 증가하겠지만 그 혜택이 미미하고 근로소득세 과세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번 소득세 개편에 따른 중산층과 서민의 근로소득세 부담 경감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021년 신고기준 약 100여개에 불과한 과세표준 3,000억 초과인 대기업에 대하여 연간 약 4조 1,000억원을 감세(법인 1개당 약 400억원)하는 법인세율 인하 조치와 비교하면 근로소득자 1인에 대한 감세액 12만 6천원(월 1만원)은 터무니없이 적음
-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와 전체 부(富)의 58.5%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득 하위 50%는 각각 16%와 5.6%에 불과하여 국민 간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²⁾ 소득하위 50% 전후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소득세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

1) 2021년 국세통계연보(국세청)을 참고하여 계산한 수치와 금액임(이하 동일).

2) 세계불평등보고서(2022)의 대한민국 관련 자료를 참고

3.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 ‘부유층의 자산세습을 위한 세제개편’

- 윤석열정부의 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는 상위 6.3%를 위한 ‘부자감세’세제개편임. 제도 개편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에 새롭게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수는 2020년 기준 313개로 전체 중견기업(총5,007개) 중 6.3%에 해당함
 - 특히,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80.8%는 ‘가업 승계를 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고,
 -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부담이 커서 가업승계 계획이 없다’고 답변한 중견기업은 전체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제도 수혜자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음
- 가업상속공제한도는 1997년 최초 1억원으로 도입되었으나, 2014년 500억원으로 한도액을 인상하였다가, 2022년 올해는 최초 한도액의 1,000배인 1,000억원으로 인상된 상황임
 - 대표적 서민세금인 근로소득세의 경우, 1997년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이었으며, 2008년 1인당 15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150만원을 유지하고 있음
 - 근로소득공제 최저기준금액 역시 1996년의 500만원에서 현재까지(16년째) 유지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가업상속공제한도 인상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임
- 특히,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공공이익 창출의무를 부여하는 사후요건이 대폭 축소되었음. ①업종변경허용(중분류→대분류)으로 지역인재 장기정착을 위한 업종유지 조항은 완전폐지됐으며, 업종변경과 함께 직원해고가 가능해졌음
 - 또한, ②고용유지 조항이 전면 삭제됐으며,(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유지조건 삭제)이러한 업종유지·고용유지 등의 ③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상황임

- 대신, ④자산유지 요건은 완화돼(가업용 자산의 20%이상 처분제한→40%) 기업의 도덕성 해이 방지와 투명성 확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발상지는 독일임. 독일은 지방에 강소기업이 많은 나라로 지방 중소기업들이 각 지방 고용의 일축을 담당하며, 중소기업 업종에 따라 지역인재들이 정착하고, 지방에서 생활권을 갖는 방식으로 국가가 성장해왔음
 - 그런데 독일이 경제위기로 대기업군들이 흔들리고, 그 여파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손실을 대거 보게 되자 당장 실업위기가 발생했고, 독일 의회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업종유지를 목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제한적으로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국내 들여오면서, 해당 제도는 기업주의 세금을 깎아주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졌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개정안 역시 그 방향성이 동일한 상황임
 - 가업상속공제의 본 취지가 '고용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개정안은 고용유지가 사실상 휴지조각됐다고 봐야함
- 가업상속 또는 가업승계는 사실상 극소수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방치하면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양극화를 세제상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4. 종합부동산세법 : '다주택자의 지대추구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

- 윤석열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세제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종부세 과세기준을 보유주택 수에서 보유주택 가액으로 전환(다주택자 종과세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기본공제금액도 공시가격 기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함
 - 그뿐 아니라 현행 최고 30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150%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2~3채의 저가주택 보유자가 고가주택 한 채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가액의 계산시 합산 배제하는 경우, 종부세의 과세표준 자체가 대폭 낮아지므로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것임
- 이미 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이례적으로 40%나 하향조정하여 이로 인해 세부담은 절반 이하로 현저히 낮아지게 됨
- 종부세는 투기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적절한 세금을 징수하여 조세공평을 제고하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제정하여야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최근 다소 안정화 되던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으로서 특히 지방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음
- 또한 기재부는 종부세 감세로 인해 내년 세수가 2조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바 있음. 종부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쓰이고 있지만 이처럼 갑작스러운 세수 감소는 지자체의 살림을 어렵게 만들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임

5. 금융투자소비세법 : ‘초고액자산가의 비과세 혜택 확대 개편안’

- 금투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학계와 업계의 폭넓은 지지와 공감대 아래에서 추진되었고, 여·야 합의로 입법화(‘20년) 되었음. 충분한 유예기간(‘23.1.1 시행)이 이미 부여된 상태로 예정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금투세 유예 대신 제시한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 축소는 초고액자산가(가족합산 종목당 보유가액 10억원→본인기준 종목당 100억원)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여 주는 것에 불과함

-
- 증권거래세 인하 또한 원래는 금투세 도입시 매도금액의 0.15%로 하향될 예정이나, 정부안은 0.20%로 소폭 인하만 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개미투자자에 대한 증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정부안대로 간다면 개인투자자의 거래세부담은 원안보다 약 2조 4천억 원이 증가하게 됨. 오히려 금투세를 부담하지 않는 개미투자자들이 1인당 약 17만원을 부담하는 셈임
-
- 또한 주요 5개 증권사의 실현 손익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수익고객 71.2% 중 5천만 원 초과인 고객은 0.8%, 1억 원 초과 경우 0.6%로 총 1.4%에 불과함. 유동성 과잉시기였던 2020년 경우도 60.3%의 수익 투자자 중 5천만 원 초과자는 2.3%에 불과했음
 -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국내주식은 매년 차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거액자산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대폭 인하하게 되어 있어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하고 생각함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 | 토 론 2 | —

류성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문

| 류성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1.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종합) 고물가, 고금리, 글로벌 경기둔화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세제개편임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과세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의 일자리·투자 확충을 적극 지원**하여 민간을 역동성을 살리는데 역점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확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폐지 등

** 고용지원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등

-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역점*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한도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주거비·교육비·교통비 등 생계비 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등

- 특히,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률이 더 크도록 설계한 세제개편임

■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조정으로 전체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되,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률이 더욱 크게 설계*

* 총급여 1.2억원 초과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Delta 54 \rightarrow \Delta 24$ 만원)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을 최소화

● 과표구간 조정 외 추가로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저소득가구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혜택이 크도록 함**

* 66만 가구에 1.1조원을 추가로 지급

** 세부담 변화(조원) : 개인 전체 $\Delta 3.4$ (서민중산층 $\Delta 2.2$, 고소득층 $\Delta 1.2$)

■ (법인세)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견·중소기업 규모별로 균형 있게 법인세 경감 혜택 부여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법인세 과표구간·세율체계를 2단계로 개선하면서,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10% 특례세율 과표구간을 확대(2억원 $\rightarrow$ 5억원)

$\Rightarrow$ 중소기업(12.8%)이 대기업(10.2%)보다 납부세액 대비 세부담 경감률이 더 크게 나타남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한 연장,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 확대(+1~2%p)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지속 강화

■ (기타) 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주식양도세 과세 완화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증진을 위해 의미있는 제도개편이 포함됨

●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은 과도하게 시장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접근 필요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사후요건 완화 등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는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통한 투자·일자리 확대·유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완화는 주식시장 활성화 및 일반투자자 혜택 차원에서 접근 필요

- 이번 세제개편으로 민간의 소비·투자여력이 확대되어 성장-세수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된다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과 함께 지속가능한 재정여건도 조성 가능

2.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 (개정내용)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이전 정부에서 4단계로 늘어난 법인세 과표구간을 2단계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22%로 인하

* OECD 주요국 대부분이 단일세율 또는 2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OECD 국가 법인세 과표구간 수: (1개) 24개국 (2개) 11개국 (3개 이상) 3개국

|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변화 |

과표구간	'00~'02	'03~'05	'06~'08	'09	'10	'11~'12	'13~'18	'19~'22	개편안	
~1억원	16	15	13	11	11	10	10	10	10	
1~2억원	28	27	25							
2~5억원										
5~200억원										
200~3,000억원										
3,000억원 초과							22	25		

-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를 개선하면서,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10% 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2억원→5억원, 세수 △1.9조원)
- 기업 규모별로 균형 있게 법인세 경감 혜택이 부여되며, 중소기업(12.8%)이 대기업(10.2%)보다 납부세액 대비 세부담 경감률이 더 크게 나타남

| 법인 규모별 납부세액 및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경감률 |

(단위: 조 원)

	전체 세액('21년, A)	금년 세법개정 세수효과(B)주)	경감률(B/A)
대기업	40.5	△4.1	10.2%
중견기업	4.6	△0.4	9.7%
중소기업	15.1	△2.0	12.8%
전체	60.2	△6.5	10.8%

주) '21년 법인세 신고액 기준 개정안 세율적용 시 연간 세수효과

■ (세계적 추세) OECD 주요국들의 법인세율 인하*가 경험적으로 입증

* OECD 평균 최고세율 추이(% , 지방세 제외):

(’17) 22.4 → (’18) 22.1 → (’19) 21.9 → (’20) 21.3 → (’21) 21.2

- OECD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투자 확대 도모하는 상황

* OECD 국가 중 ‘08년 이후 법인세율 (인하) 24개국, (인상) 5개국, (유지) 8개국

- 높은 세부담 등으로 우리 기업들 자금의 해외 유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투자는 거의 답보 상태

* 제조업기업 투자(’16→’21년) : (해외<역불>)87→182 (국내<조원>)88→100

- 우리나라도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30년 이상 과세표준 2개 구간으로 유지 → 투자확대 도모

■ (경제적 효과) KDI, 조세연 등 실증연구*에 따르면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며, 미국 등 외국사례**도 투자 증가 시현

* (KDI, ’16)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1%p 인하시, 투자율은 0.2%p 증가

(조세연, ’18) 법인세율 3%p 인상시 투자△0.7%, 고용△0.2%, GDP△0.3% 감소 유발

(KDI, ’22) 금번 3%p의 최고세율 인하시 투자·고용의 증가 효과로 단기 0.6%, 중장기

3.39%의 경제성장효과와 그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 기대

** (OECD Stat, ’22.4, %) 법인세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미국(’18 인하)3.0→3.7 / 프랑스(’16 인하)0.5→3.7

■ (법인세 귀착)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은 사회 전반에 혜택

-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협력 업체」에 혜택 부여

- 최근 개인과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어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 혜택이 중산층 주주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과거보다 확대

* 주식거래 활동계좌(6개월내 10만원이상 예탁자산과 거래, 만개): ('10)1,758→('21)5,551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가 증가('00년) 2.6%→('21년) 44.5%)되어 주식투자 운용수익도 증가

-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서민·중산층이 크게 혜택

* KDI('22.10.4. 발표) 금번 3%p의 최고세율 인하시 투자·고용의 증가 효과로 단기 0.6%, 중장기 3.39%의 경제성장효과와 그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 기대

■ (법인세율 수준)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실효세율이 높은 편

- 조세재정연구원('22년)이 자체 분석·비교한 법인세 실효세율에서 우리나라는 '19년 21.4%로 미국(14.8%)·일본(18.7%)·영국(19.8%)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 특히 '18년 최고세율 인상(22→25%),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효세율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17년 7.0%p → '21년 8.4%p)임도 고려할 필요

* 실효세율: ('17) 대 20.0%, 중소 13.0% → ('21) 대 21.9%, 중소 13.5%

- OECD 주요국은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실효세율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지난 정부에서 인상한 부분은 이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

3. 소득세 과세구간 조정 등 소득세제 개편

■ (과세구간 조정)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하위 2개 과표구간만 조정하고, 근로소득세액 공제 조정을 통해 고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을 최소화

⇒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률이 더욱 크게 설계되어 있음

- 모든 과표구간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고소득자가 큰 혜택을 보는 점을 고려 → 하위 2개 구간*만 상향 조정

* 1,200만원→1,400만원(16.7% ↑), 4,600만원 → 5,000만원(8.7% ↑)

- 1.2억 초과 고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조정(△30만원)하여 세부담 경감폭 축소(△54만원→△24만원)

- 소득세는 누진세율체제로 인해 과표구간 조정 시, 저소득자가 절대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더 크게 경감 받을 수는 없음*
- ⇒ 세부담 경감혜택은 절대적 경감액이 아닌 상대적 경감률이 중요하며, 저소득구간이 더 큰 경감 혜택

[참고] 저소득자 및 고소득자 경감률 및 경감액

◎ <개별사례> [총급여 3,000만원] 증감액 △8만원, 증감률 △27.0%

[총급여 1.5억원] 증감액 △24만원, 증감률 △1.0%

◎ <과표구간별> [과표 1,200~4,600만원*(총급여 7,400만원)] → 평균 △8.2% 경감

* 전체 납부세액의 23%를 차지하나, 전체 세부담경감액의 48% 차지

[과표 8,800만원*(총급여 1.2억원) 초과구간] → 평균 △0.6% 경감

* 전체 납부세액의 47%를 차지하나, 전체 세부담경감액의 7% 차지

* 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등) × 누진세율(6~45%)

→ 소득금액이 적을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지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산출세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세부담 경감액도 감소

- 저소득구간은 납부하는 세금 자체가 크지 않아 경감세액 자체는 크지 않으나, 경감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큰 혜택

- 총급여 3천만원 대비 1억원 급여자의 세부담 배율이 34→44배로 확대되어 저소득구간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 총급여 3천만원 대비 1억원 세부담 배율(배) : (개정 전) 33.7 → (개정 후) 43.5

| 총급여 수준별 과표조정 효과 |

총급여	과세표준	세 액(단위: 만원)			
		현행(a)	개정안(b)	증감(b-a)	
					증감률(%)
3천만원	1,400만원	30	22	△8	△27.0
5천만원	2,650만원	170	152	△18	△10.6
7천8백만원	5,000만원	530	476	△54	△10.2
1억원	7,100만원	1,010	956	△54	△5.3
1.5억원	1억2천만원	2,430	2,406	△24	△1.0

주) 급여별 평균적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

■ (과세표준 조정 효과) 약 1,100만명의 근로자·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감소 (세수감: △2.3조원)

- 약 900만명 이상 근로자의 세부담이 감소하며, 특히 과표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의 약 700만명 근로자가 세부담 경감률이 가장 높음

[참고] 과표구간별 근로소득자 세부담 변화

- ① [과표 1,200~4,600만원*(총급여 7,400만원)] → 약 700만명, 평균 △8.2% 경감
* 전체 납부세액의 23%를 차지하나, 전체 세부담경감액의 48% 차지
- ② [과표 4,600~8,800만원*(총급여 1.2억원)] → 약 170만명, 평균 △6.1% 경감
* 전체 납부세액의 30%를 차지하나, 전체 세부담경감액의 45% 차지
- ③ [과표 8,800만원* 초과구간] → 약 50만명, 평균 △0.6% 경감
* 전체 납부세액의 47%를 차지하나, 전체 세부담경감액의 7% 차지

■ (추가적인 조정) 과세구간 조정 외에도 식대 비과세, 생계비 공제 등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에 위한 추가적인 조정 포함

- 과표 1,200만원 이하로 과표구간 조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2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과표 조정과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총급여 8천만원 근로자의 경우 최대 △83만원 경감(과표조정 54만원 + 식대 29만원)

- 또한 주거비·교육비·교통비 등 생계비 및 퇴직·연금 등 여타 공제 확대* 혜택도 추가로 적용 가능

* (주거비) 월세세액공제율 상향(최대12→15%),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교육비)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15% 세액공제
(교통비·문화비) 하반기 대중교통 공제율 확대(40→80%),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퇴직·연금) 퇴직소득세 부담완화 및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상향

4.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 (개정내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①가액기준으로 전환하면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고 ②기본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함

-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여 세율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세 부담 상한을 150%로 단일화
- '18~'22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63.4%) 등을 감안하여 기본공제 금액을 일반 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으로 상향조정

■ (개편 필요성) 그간 부동산 시장관리 목적으로 활용되어 납세자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과세 불형평 등 부작용이 초래된 종합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임

- (과도한 세부담) 공시가격 현실화¹⁾,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²⁾, 급격한 세율 인상³⁾으로 과세대상 급증⁴⁾ 및 과도한 세부담⁵⁾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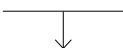
1)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17) 4.4 ('18) 5.0 ('19) 5.2 ('20) 6.0 ('21) 19.1 ('22) 17.2

2)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18) 80 ('19) 85 ('20) 90 ('21) 95 ('22) 당초 100 →개정 60

3) 최고세율('18→'21,%) : (일반) 2.0→3.0 <+1.5배> (다주택자) 2.0→6.0 <+3배>

4) 주택분 과세인원(만명) : ('17) 33.2 ('18) 39.3 ('19) 51.7 ('20) 66.5 ('21) 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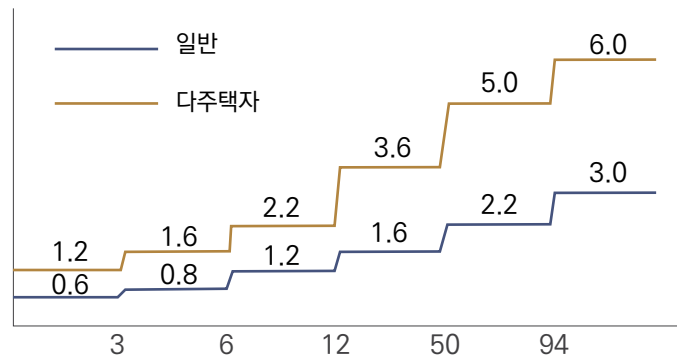
5) 주택분 결정세액(조원) : ('17) 0.4 ('18) 0.4 ('19) 0.9 ('20) 1.5 ('21) 4.4



최근 5년간 주택분 결정세액 11배로 증가

- (세부담 불형평) 전세계 유례없는 다주택자 증과 제도로 인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를 훼손

| 2022년 현행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 ① 인별 합산 누진과세 및 높은 누진세율 외에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증과는 이중적 누진과세임

* 종부세 단일 누진세율 체계는 참여정부를 포함하여 약 15년간 운영되어왔으나, '19년 갑자기 전세게 유례없는 다주택자 증가 도입

- ② 고가 1주택자가 저가 다주택자보다 세부담이 작아지는 등 부자가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상황도 가능 → 응능부담 원칙, 조세공평 원칙 저해

* (저가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산 20억원 → 종합부동산세 3,114만원
(고가 1주택자) 공시가격 25억원 → 종합부동산세 2,165만원

- ③ “뽕뽕한 1채 선호 현상”을 심화시키는 등 주택수요를 왜곡하고, 임차인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등 부작용 우려*

* 보유세의 주택가격 효과 및 전월세 전가 효과 연구

- 보유세 증가는 전세보증금에 29.2~30.1%, 월세보증금에 46.7~47.3% 전가(송헌재, 2022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 보유세 1% 증가 시 월세 0.06% 증가 → 종부세 332만원 증가 시 월세는 연 20만원 증가(파이터치연구원, 2022)

- 국내여론*과 국제기구** 등에서도 종부세의 개편 필요성을 인정

* 국회의장실 의뢰 여론조사(9.5.~9.7. 한국갤럽) : 종부세 개편 (필요) 63.8%, (불필요) 27.4%

** OECD 한국경제보고서(2022) :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납세자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 발생 지적 →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 권고

■ (개정안 평가) 다주택자 종과제도 폐지는 세율을 지난 정부 1차 과세강화 수준('19~'20년)으로 조정하고 단일세율 체계로 복원하여 종부세의 보유세 기능을 정상화하는 차원임

- 개편안은 세부담이 OECD 평균*에 도달한 '20년 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임

* GDP 대비 보유세 비중(% , '20년) : (한국) 1.04 (OECD 평균) 1.06

- 투기적 수요는 다주택자의 주택가액을 합산하여 적정 단일 누진세율로 종과하는 제도와 기본공제금액 차등 적용으로 대응할 수 있음

-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 금리인상 추세 및 이미 시행 중인 시장안정 조치**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의 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임

* APT가격변동률(% , 10.3주→10.4주) : (서울)△0.27→△0.28 (전국)△0.28→△0.28

**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 배제(1년 한시), 다주택자 취득세 종과(최대 12%)

5.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 (개정내용)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사후관리 기간 단축(7년→5년) 및 요건 완화

- * ①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 ② (공제한도 상향) 최대 500억원 → 최대 1,000억원
- ③ (사후관리 완화)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 완화

■ (필요성) 가업상속공제는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통한 투자·일자리 확대·유지를 위한 것
⇒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발생하는 기업단절 방지를 위해 제도 확대 필요

- (투자·일자리 확대·유지)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보다 중산·서민층을 위한 투자·일자리 확대·유지를 위한 것임

-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이 단절되어 일자리 감소, 사업 노하우 멸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막대
- 일자리·투자 감소는 결국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에 더 큰 피해
- 그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건을 지속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건이 엄격하여 원활한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

- * ① 중소기업 경영자의 98.0%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조세부담을 지적, 88.8%가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21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 ② 중소기업 경영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41.3%에 달함
- ③ 국가별 이용실적 : (한국) 총 76.2만개 중소기업 중 110건<’21년> (독일) 28,482건<’17년> (일본) 2,918건<’20년>

⇒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단절 현상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폭 확대 필요

-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 (한국) 50%, (OECD 평균) 15% <일본(55%)에 이어 세계 2위>
- **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한국) 0.5% (OECD 평균) 0.1% <프랑스(0.7%), 벨기에(0.7%)에 이어 세계 3위>

■ (해외 사례)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통한 투자·일자리 창출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님

- 일본의 경우 단카이 세대* 은퇴에 따른 후계자 부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18년부터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 * ‘47~’49년에 출생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70~80년대 일본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낸 세대)
 - ** ‘18~27년을 ‘가업승계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납부유예 한도 폐지 및 비율 상향 (80%→100%)
- 독일의 경우에도 기업규모 제한 없이* 공제한도 운영 중
 - * 기업 규모 제한 없이 공제한도(9천만 유로<약 1,200억 원>) 범위 내에서 공제
- 서구 선진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저율로 과세
 - *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 폐지(스웨덴(’05), 노르웨이(’14) 등) 또는 미도입

■ (양도세 이월과세 도입) 가업상속공제는 영구면제가 아닌 이월과세

-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14.1.1. 시행)

* 상속인이 양도 시,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아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세 과세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 양도 시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과세

■ (과거 정부 사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음

- 문재인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후관리기간 단축(10년→7년)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기간 확대(15년→20년)

* (업종 유지) 소분류 → 중분류 내 변경 허용

(고용 유지)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요건 완화(120%→100%)

- 노무현 정부도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1억원→30억원)하였음('07.12.31.)

6.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 (개정내용)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을 완화(지분율 요건 삭제, 종목당 10억원→100억원)

■ (필요성) 주식 양도과세 완화는 주식시장 활성화 및 일반투자자 혜택 차원에서 접근 필요

-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가능성,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주식시장 위축

*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조원): ('20.12)18.2 ('21.12)9.9 ('22.1)11.3 (6)8.9 (7)7.2 (8)7.8 (9)7.7

- 그간 대주주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주식 양도세 회피 목적의 연말 주식매도 현상 등 시장왜곡 문제 완화

* 코스피 기준: ('00)3% 또는 100억원 → ('13)2% 또는 50억원 → ('16)1% 또는 25억원 → ('18)1% 또는 15억원 → ('20)1% 또는 10억원

Ⅰ 당해연도 12월 개인투자자 순매수금액 규모 Ⅰ

(단위: 조 원)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코스피	△3.3	△0.7	△0.8	△1.4	△1.4	△3.7	△1.2	△3.8	3.7	△6.4
코스닥	△0.0	△0.0	△0.2	△0.2	△0.1	△1.5	△0.3	△1.0	0.3	△1.2

* 음영: 대주주 범위 강화 직전 연도

-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 주식 양도세 완화를 통해 시중유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을 유도할 필요

■ (기대효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기업투자가 증가*하는 등 선순환 효과 기대

* 한국 주식 양도세 세율 인하시 기업투자 증가 실증연구(美 경제학회, '22.8) "Capital gains taxes and real corporate investment"(Terry S. Moon)

- 해외사례의 경우에도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자본이득 과세를 완화한 바 있음

* (미) '03년 장기자본이득세율 5% 인하 등 (영) '16년 주거용 부동산 외 주요자산 양도세율 8%p 인하 (프) '18년 종합소득에서 단일세율 과세체계로 전환

■ (과세대상) 과세기준 완화 시 과세대상 인원은 80% 감소하나, 과세대상 시가총액은 89% 수준 유지 → 적정수준 과세 가능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 | 토 론 3 | —

장혜영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22 세제개편안 토론회>

토론문

| 장혜영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강화하고 기후위기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대기업과 자산가만 웃을 것

- ◎ 감세하기 가장 나쁜 때 감행한 74조 감세
- ◎ 대기업과 자산가 위한 종합 감세 선물 세트
- ◎ 기후위기 인식 없는 세제개편안
- ◎ 감세와 긴축이 강제하는 공약불이행
- ◎ 양당정치의 한계

■ 감세하기 가장 나쁜 때 감행한 74조 감세

- 2023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도전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위기, 기후위기, 금융불안정과 가계부채, 에너지위기, 저출생 고령화, 불평등과 자산격차, 돌봄위기, 산업체제 전환과 교육문제, 지역소멸, 신냉전과 안보위기 등.
- 모두 시급히 당면한 문제이면서도, 정부와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임. 예를 들어 기후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전환은 시장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부가 제도와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해야 함. 일자리를 잃을 화석연료산업 종사자들에게 일자리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 책무임.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비로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가 공히 공유하고 있는 인식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취약차주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다면 시스템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 장애인들이 온전한 이동과 교육

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 편성이 필수적임. 무엇보다도 경제위기의 먹구름이 드리운 국면에서 복합적인 위기를 예방하고 수습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은 강조될 수밖에 없음.

-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하필 이 시기에 5년간 74조원에 이르는 감세안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함.
(예정치의 누적법 기준. 순액법으로는 17.2조/기재부 추산은 누적법 60.3조 순액법 13.1조)

| [표]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정부 추계) |

(단위: 억원)

누 적 법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합 계	△64,096	△138,406	△137,181	△132,008	△131,392	△603,083
소득세	△35,099	△41,899	△32,909	△25,698	△25,387	△160,992
법인세	△6,185	△69,938	△66,930	△68,453	△68,148	△279,654
증권거래세	△6,896	△7,523	△18,396	△19,385	△19,385	△71,585
종합부동산세	△12,501	△16,678	△16,679	△16,679	△16,679	△79,216
기 타	△3,415	△2,368	△2,267	△1,793	△1,793	△11,636
순 액 법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합 계	△64,096	△74,310	1,225	5,173	616	△131,392
소득세	△35,099	△6,800	8,990	7,211	311	△25,387
법인세	△6,185	△63,753	3,008	△1,523	305	△68,148
증권거래세	△6,896	△627	△10,873	△989	0	△19,385
종합부동산세	△12,501	△4,177	△1	0	0	△16,679
기 타	△3,415	1,047	101	474	0	△1,793

주: 누적법은 2022년(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누적하여 집계한 값이며, 순액법은 직전 연도 대비 세수변화를 누적하여 집계한 값

자료: 기획재정부

| [표]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

(단위: 억원)

누적법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합계	△69,440	△159,341	△167,385	△167,791	△172,204	△736,161
소득세	△35,357	△50,901	△39,131	△33,092	△33,714	△192,193
법인세	△4,911	△72,533	△77,590	△82,540	△85,383	△322,958
증권거래세	△8,731	△10,217	△25,762	△27,949	△28,832	△101,491
종합부동산세	△15,454	△21,302	△21,302	△21,302	△21,302	△100,663
기타	△4,988	△4,388	△3,599	△2,908	△2,972	△18,855
순액법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합계	△69,440	△89,901	△8,044	△407	△4,412	△172,204
소득세	△35,357	△15,544	11,770	6,039	△622	△33,714
법인세	△4,911	△67,623	△5,057	△4,950	△2,843	△85,383
증권거래세	△8,731	△1,486	△15,545	△2,187	△883	△28,832
종합부동산세	△15,454	△5,849	0	0	0	△21,302
기타	△4,988	600	788	692	△65	△2,972

주: 누적법은 2022년(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누적하여 집계한 값이며,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세수 변화를 누적하여 집계한 값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여기에 재정준칙 내세우면서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으므로 국가채무는 논외임. 수학을 이길 수는 없음. 따라서 ‘재정 트릴레마’ 하에서 논리적으로는 상기한 과제를 정부가 앞으로 5년간 포기하거나 혹은 불충분하게 이행하거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기존의 국가책임을 방기할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미국과 EU는 COVID-19 위기와 최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촉발된 공급망 위기 하에서 재정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결정하거나 적극 논의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들 수 있음. 7730억 달러를 10년 동안 투입하여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취약계층 지원 등을 하게 되는데, 재원은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과 자사주 매입 과세 등의 증세로 조달함. 또한 EU는 현재의 에너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5조원의 황재세를 화석연료 기업과 에너지기업으로부터 징수하기로 함. 이미 영국과 EU 6개국은 황재세를 시행 중이며, 영국은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함.

-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함. 그러나 경제위기를 앞둔 국면에서 감세로 경기부양을 시도하는 나라는 드물며, 영국의 경우 이를 감행했다가 파운드화 폭락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총리가 물러나기까지 함. 기재부는 이것이 감세문제가 아니라 재정건전성 문제라고 주장하나, 감세로 취약해진 재정기반 위에서 레고랜드 사태나 한전채 남발로 인한 채권위기가 불거지기 쉽다는 점에서 본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음. 정부의 지급보증 능력에 의구심이 커지기 때문임.
- 감세 후 재정확보를 위한 뒤늦은 증세는 동의를 구하기 어려움. 이번 감세는 대한민국의 위기대처 능력을 극심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경제위기 충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자해적 정책.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추경호 부총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냉혹한 국제금융 시장이 평가하게 되는 영역임.

■ 대기업과 자산가 위한 종합 감세 선물 세트...경제효과는 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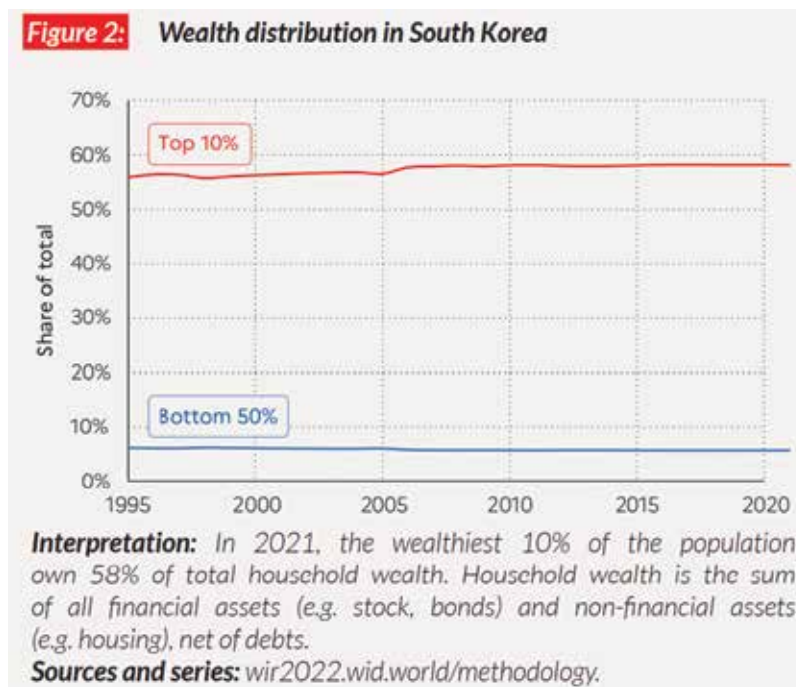
-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대기업, 자산가, 고소득자에 대한 일방적인 감면 혜택임. 이러한 감면이 투자와 고용, 경기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낙수효과’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음.
- 기획재정부의 세부담 귀착 자료에서도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세수효과가 5.3조, 서민·중산층/중소·중견기업 세수효과가 4.6조로 나타나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음이 드러남.
-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1.6조와 주택분 종부세 감면분 2조도 고소득층 세수효과로 잡아야 함. 이를 모두 포함하면 고소득층/대기업 세수효과는 8.6조가 되어 서민·중산층/중소·중견기업의 두 배 가까이 됨.

	개 편 안	세 수 효 과	
고소득층	-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1.3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0.2조)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0.2조), 업무용 승용차 필요경비 조정(+0.1조)	△1.2조	△5.3조 (40%)
대기업	-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25→22%)(△2.3조)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1.0조) -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확대(△0.5조) -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2%p)(△0.3조)	△4.1조	
서민·중산층	-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1.0조),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0.2조) - 월세세액공제를 확대(10·12→12·15%)(△0.03조)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2→2.4억원) 및 최대지급액 10% 인상(△1.1조)	△2.2조	△4.6조 (35%)
중소·중견기업	- 법인세 10% 특례 세율 적용 및 하위 과세표준 구간 상향(2→5억원)(△1.9조) -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상향(+1~2%p)(△0.1조)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0.4조)	△2.4조	
기타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1.6조), 증권거래세 인하(△1.9조) - 주택분 증부세 세율 체계 개편(△2.0조)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등(△0.9조)	△3.2조	
전체		△13.1조	

- 이하 자산과세부터 여러 세목별로 불평등 심화 요인과 경제효과 등을 짚어보고자 함.

1. 증부세

- 대한민국의 자산불평등 심각하고 고착되는 양상.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 South Korea 편에서 가져옴)

-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자산의 59%를 보유하고, 하위 50%가 6%를 가져가는 사회임. 개선되지 않고 조금씩 벌어지는 양상임.
- 핵심 이유는 부동산임.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 2021년 기준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64.4%로 OECD 최고 수준. 신한은행의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1>에 따르면 상위 20%는 2018년 8.8억에서 9.9억으로 상승. 하위 20%는 703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감소.
-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다주택자 종부세를 무력화시켜 부동산 자산격차의 조정을 크게 약화시킴. 종부세는 상위 10%가 세액의 78%를 부담하는 세금으로 감면시 혜택이 이들에게 집중(국세통계연보 2022). 특히 주택분 종부세의 82%를 납부하는 다주택자(2주택자 이상)의 세금을 1주택자 수준 세율로 대폭 감면하는 다주택자 증과제도 폐지와 공제금액 3억원 상한의 세액감소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보임. 3주택자 이상에게는 사실상 50% 이상 감면이며, 올해 적용된 공정가액시장비율의 하향 조정(100%→ 60%)과 시너지를 일으킴.
- 또한 기재부 추산으로도 세법개정안이 적용되었다는 가정하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종부세를 1.7조원을 덜 걷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방교부세의 감액으로 지역균형발전에도 지자체 재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5년간 8조원 감면이 추정됨.
- 현 세제개편안의 전반의 문제가 종부세에도 적용됨.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기준으로 변경한다거나 하는 ‘제도의 합리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모든 실질 내용은 ‘부자감세’로 함함. 제도 합리화 목적이라면 세수중립을 위해 세율과 과표를 조정했어야 하나, 최고 세율구간 또는 증과세 조항의 삭제로만 귀결되어 대폭 감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 세제개편안의 큰 특징임.
- ‘글로벌 스탠더드’의 측면에서 보면, OECD, 세계은행, IMF 모두 불평등 완화와 포용성장을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포함 재산과세 강화를 정책적으로 권고. (OECD. Tax policies for inclusive growth in a changing world/ OECD-World Bank. A policy framework to help guide the G20 in its development of policy options to foster more inclusive growth/ IMF. Tax policy for inclusive growth after the pandemic)

- 또한 OECD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은 국부에서 부동산 가치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면서도 실효세율은 평균의 절반에 그침(2019년 OECD 15개국 평균 0.30, 대한민국 0.17). 기획재정부가 주요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GDP대비 보유세 기준으로 봐도 OECD평균 수준에 불과하고, 부동산 자산의 높은 비중 고려하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음. 참고로 지난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보유세는 GDP대비 세수총액보다는 실효세율을 의미하는 부동산 가격 대비 세부담 비교가 보다 유의미 할 수 있음”이라며 GDP대비 보유세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반박한 바 있다고 밝혀 됨.

(2021.2.1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부동산 세금 국제 비교 기사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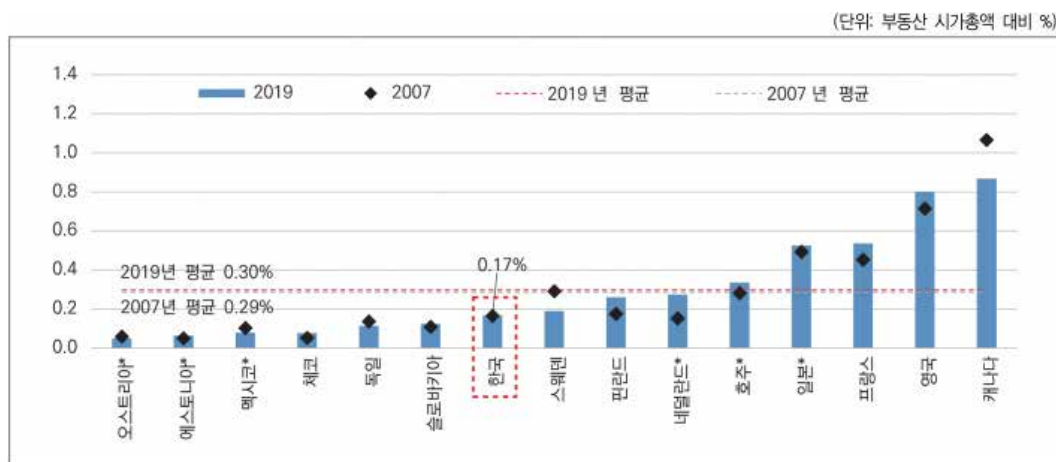
3 보유세는 GDP대비 세수총액보다는 실효세율을 의미하는 부동산 가격 대비 세부담 비교가 보다 유의미 할 수 있음

-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임

* OECD 주요국가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 (% , '18년)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평균
0.16	0.34	0.87	0.55	0.12	0.52	0.90	0.77	0.53

- 즉 기재부가 명분으로 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준으로 하면 ‘보유세 인상’을 선택해야 함. 프랑스나 일본 수준으로 부과한다면 실효세율을 3배 올려야 하는 수준. 급격한 세 부담이 문제라고 여긴다면 장기적으로 보유세 목표를 어느 수준에 맞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시해야 하는 것임.



주: 2019년 기준 15개국, * 표시는 2018년 자료.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 비교(2019). 대외정책연구원<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
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2022

2.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완화/가상자산 과세

현행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양도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증권거래세	0.23%	0.15%
↓			
개정안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고액주주 양도세(+과세대상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증권거래세	0.23%	0.2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간단하게 짚자면,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전체 주식투자자의 상위 1%도 되지 않으며, 대주주 양도세의 과세대상은 상위 0.1%도 되지 않아 고액자산가 감세안임. 다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에 비해 형평에 지나치게 맞지 않은 상황에서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로 누진세율을 적용함) 과세를 유예하고 기존 대주주 과세까지도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합리적 과세행정으로 보기 어려움.
- 금융투자 활성화가 명분이나, 과세대상 자체도 많지 않고 과세로 인해 고액투자자들이 한국증시를 떠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음.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로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조세저항을 줄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음. 오히려 과세의 실질성이 부족한 점이 문제라고 생각됨(공제액수가 5천만원으로 지나치게 높고 분리과세의 명분도 부족). 근로소득-금융투자소득간의 형평, 금융투자소득 간에서의 자산과세 형평을 맞추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시장의 왜곡을 줄이고 사회의 자원배분에 국가가 제대로 신호를 주는 것임.
- 보수정부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신조를 자주 이야기하지만, 세율만 낮추는 것을 원할 뿐 세원을 넓히는 것은 매우 소극적으로 보임. 특히 자산가들에게 영향을 주는 자산소득과 세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든 막거나 유예하려고 함. 기획재정부가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안을 마련했고, 가상자산의 경우 전 정부 기재부에서는 충분히 과세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까지 들었는데, 이제 와서 관련 제도정비 해야 해서 못 한다는 핑계는 지나치게 궁색함.

3. 법인세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국정과제

새경정

① (세율)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② (과표구간)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 → 2~3단계로 단순화

▪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 (현재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 완화

과세표준(단위: 억원)	현 행	개 정 안
~ 2	10%	10% (중소·중견기업)
2 ~ 5	20%	
5 ~ 200	22%	22%
200 ~ 3,000	25%	
3,000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지난해 최고세율 25%를 적용받은 과표 3천억 초과 법인은 단 103개에 불과. 전체 법인 91만개 중 0.01% 수준임. 나라살림연구소가 기준연도 기준 5년간 세수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8조원 감면 효과(기재부의 전년대비 기준으로는 6.8조원 감면 추정). 예정 처 분석은 32조 감면 효과. 이것이 대부분 큰 이익을 낸 대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가 게 됨.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 결과 정부 순액법 기준 중소기업 2.3조, 대기업 4.1조/예정 처 누적법 기준 중소기업 10.2조, 대기업 20.7조)
- 그러므로 법인세 감면의 효과는 대기업의 대주주, 외국인투자자와 이익에 따라 성과급을 크게 나눠가질 수 있는 임원 및 상위노동자에게 돌아가게 될 개연성이 큼. KDI 남창우 연구위원의 2016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영진은 미국에 비해 사익추구가 9배나 높아 법인세 인하효과가 크게 제약됨. 기업의 잉여금 증가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최근의 인플레이션이 기업이익 상승에 따라 주도된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음(EPI Josh Bivens 등)

- 종합소득 구간별 배당소득 비중을 보면 2020년 기준 연 1억원까지 5%도 되지 않아 극히 미미하고, 5억원 초과 경우 배당소득이 34.5%를 차지해 1천만원 이하 구간에 비해 16,400배 높음. 즉 법인이익상승에 따른 배당이익은 초고소득자들이 대부분 가져가게 될 것임.

종합소득 구간	2020년 소득유형별 비중				
	이자	배당	연금	근로	사업
1천만원 이하	0.0086	0.0021	1.4	16.5	79.7
1천만~2천만원	0.05	0.05	1.5	31.2	57.6
2천만~4천만원	0.9	1.3	1.3	38.1	48.4
4천만~6천만원	1.1	2.0	0.6	39.3	46.7
6천만~8천만원	1.1	2.5	0.3	44.4	41.8
8천만원~1억원	1.1	3.2	0.2	46.4	39.6
1억~2억원	1.4	6.2	0.15	43.2	39.7
2억~3억원	1.6	9.2	0.09	36.5	44.3
3억~5억원	1.8	12.1	0.06	31.2	47.4
5억원 초과	2.3	34.5	0.02	25.3	33.4

김학수 KDI 포커스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중 발췌.

- 법인세 감면의 투자 효과에 대해서도 매우 의문스러움. 기재부는 유리한 연구결과만을 소개하며 투자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정반대의 결론인 권위 있는 연구들도 부지기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함. 대표적인 메타연구로 유럽경제리뷰의 최근 연구를 들 수 있는데(Do corporate tax cuts boost economic growth?), 441개 사례를 검증한 결과 법인세 인하의 경제성장 효과는 평균적으로 0였음. 그렇다면 세수감소는 확실한데,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임.
- 그러나 세제개편안에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가 지난 정부에서 개편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규제성 조세라며 일몰시켜 최소한의 투자촉진을 위한 장치마저 포기하고 있음.
- 기재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으로도 평가해 보겠음. 기재부는 한국의 법인세수가 OECD평균보다 높고, 다수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것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영업잉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OECD평균 13.0%, 대한민국 16.6%) 산업 구조의 특징 문제지

부담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임. 대기업 경제력 집중, 법인의 세제혜택에 따른 법인 선택 등 한국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명목세율 역시 OECD국가들이 25-30%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7.5%라는 명목세율은 자본유출을 우려할 수준은 전혀 아님. 최근 미국, 영국, 네덜란드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논의되고 있고, EU 6개국이 횡재세를 도입하는 등 법인세 인하를 세계적 흐름으로 보기도 어려움.

4.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략한 가업상속공제제도

- ④ (사후관리 완화)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①사후관리 기간을 단축(7년 → 5년)하고, ②업종·③고용·④자산유지 요건 완화

구 분	현 행	개 정 안
① 사후관리기간	· 7년	· 5년
② 업종 변경 범위	· 중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	· 대분류 내 변경 허용
③ 고용 유지 의무	· ①&② 유지 ①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②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 ② 유지 ① <삭 제> ② (5년 통산) 100% → 90%
④ 자산 유지 의무	·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 처분 제한	· 20%(5년 내 10%) → 4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가업상속을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라지만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화시킨다고 정부도 인정하고 있음. 즉 가업상속이라는 명분은 포기하고 자식에게 회사를 수월하게 물려줄 수 있게끔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 매출액 기준과 사후관리도 대폭 완화해서 업종변경을 해도(대분류 내 허용) 구조조정을 해도(고용유지 의무 대폭 완화) 세금감면에는 무리가 없도록 조정함. 중견기업의 기술노하우를 승계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략시키는 것임.

5. 소득세

-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올려서 세금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생각에 동의하기 어려움. 증세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고, 조세부담률을 높여 OECD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복지재정(GDP대비 비중으로는 절반 수준)을 마련하고 여러 위기에 대비하는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연스러운 소득세 증세가 재정을 마련하는 데 요긴할 수 있음. 과표를 끌어올려 이 효과를 포기할 이유는 없는 것임.
- 이런 제도적 변화가 정착된다면 다른 세제에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자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고 불평등 해소와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은 요원해짐.
- 지금은 연봉 1.2억 이상 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해서 보완하긴 했지만, 누진 세제에 과표조정이라는 것은 항상 고소득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데 유념할 필요가 있음. 이번 세제개편안도 중·고소득자라고 할 수 있는 연소득 8천만원 정도가 가장 큰 이익을 봄.

총급여	과세표준	세 액(단위: 만원)			
		현행(a)	개정안(b)	증감(b-a)	증감율(%)
3천만원	1,400만원	30	22	△8	△27.0
5천만원	2,650만원	170	152	△18	△10.6
7천8백만원	5,000만원	530	476	△54	△5.9
1.5억원	1억2천만원	2,430	2,406	△24	△1.0
3억원	2억7천만원	7,740	7,716	△24	△0.3

(기획재정부 문답자료)

- 기획재정부는 감면액의 절대액을 비교하기보다는 줄곧 소득대비 감면 액수를 근거삼아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주장함(연봉이 3천만원인 사람은 세금의 27% 감면, 연봉 1억은 5%를 감면). 그러나 이는 비과세 비중이 높고 공제가 많으며 저연봉자들의 세율이 낮기 때문에 착시현상이 있는 것임. 고소득자의 감면 절대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 조세감면이라는 방식은 결코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고 격차를 더 벌리는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남.

- 보수정치가 부자증세를 반대하면서 전가의 보도로 사용했던 논리가 근로소득자의 비과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인데, 세제개편안은 효과적인 고소득자 감세를 위해서라면 과표를 올려 비과세 비중을 늘려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임.
- 이는 저소득층에게 ‘푼돈’이라도 일말의 혜택을 안겨줌으로써 추후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얻는 것을 용납할 수 있도록 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임. 이런 타협이 반복된다면 누진세제가 형해화될 우려 존재. 소득세 감면을 명분으로 복지를 축소하거나 확대를 억제할 수 있음. 자원부족으로 기존복지의 구조조정을 자연스럽게 강요하게 됨. 이에 따른 양극화 심화 우려.

6. 비과세·감면의 대폭 확대

- 대한민국 세제는 비대한 비과세 및 감면의 규모가 늘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광범위한 공제제도가 존재함. 이 때문에 세율체계가 왜곡되고 누진세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극히 제약됨. 법인세의 경우 과표 최고구간 실효세율은 그 전 구간의 실효세율보다 더 낮게 나오고 있음(예정처 2022 조세수첩. 2020년 기준 과표 5천억원 초과 경우 실효세율 19.4%/1천-5천억 구간 실효세율 20.8%).
- 공제제도의 역진성은 연역적으로도 충분히 추론 가능하며, 이미 많은 실증연구가 있음. 한국의 세율 갭(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은 OECD국가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홍우형·강성훈, 2018)
- 따라서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불필요한 감면은 일몰시켜야 하며 신규 감면제도도 엄격하게 옥석을 가려서 시행하는 기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신설 조세지출은 5년간 9조 4천억원에 이르는 반면, 폐지나 축소하는 항목은 3천억원에 그쳐 9조 1천억원에 이르는 최대 수준의 감면 규모임.

- 또한 조세지출 심층평가 결과 17건 중 15건이 단순 일몰연장되어 부적절한 감면 제도의 차단기능이 여전히 미흡한데도 이에 대한 제도 개편이 없다는 예정처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 결국 세입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평가함.

[표] 조세지출 정비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신설·확대	△16,270	△15,407	△18,832	△21,834	△21,882	△94,225
폐지·축소	295	766	719	678	648	3,106
합 계	△15,975	△14,641	△18,113	△21,157	△21,233	△91,119

자료: 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등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후위기 인식 없는 세제 개편안

1. 유류세 인하에 대한 반성적 평가 필요

- 먼저 지속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정책의 반성적 평가와 재고가 필요. 유류세 인하로 기재부는 지난 11월부터 올 12월까지 8.8조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했음. 그러나 인하 혜택이 소비자들보다는 정유사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이 많음. 실제로 정유4사는 상반기에만 12조원의 이익을 냈으며 이들의 매출은 30-50%가 국내매출임. 실증적으로도 국제유가 변동과 환율을 고려해도 세금인하분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있음(석유시장감시단 등 자료). 정부는 이러한 지적에도 분석과 조사를 극구 회피하고 있음.
- 문제는 대한민국이 화석연료산업에 지나친 혜택을 주고 있는 것. IMF는 2020년 한국의 화석연료 보조금 규모를 81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정유사의 경우에도 탄소배출권을 100% 무상할당 받고 있으며, 전기요금도 산업용전기 혜택으로 평균전력 구입단가에 비해 2823억원 적게 낸 것으로 나타남(한전 제출자료를 장혜영 의원실에서 분석). 지난 5년간 조특법상의 각종 명목으로 2200억원의 법인세 공제를 해 주었으며(국세청 제출자료를 장혜영 의원실에서 분석), 이번 세제개편안의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삭제로 상반기 이익만으로 보면 2500억원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

- 유류세 인하효과는 불충분하거나 불확실한데 정부는 막대한 세수를 포기하고 정유사는 사상 최대 이익 가져감.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석유소비량은 오히려 늘었고 원유수입액은 사상 최고. 그만큼 무역적자도 확대됐고 탄소배출량도 늘었음. (2022년 1~7월 총 석유소비량은 전년 대비 1.9%증가(534,637,000배럴 → 544,632,000배럴). 원유수입액의 경우 2022. 7. 사상 최초로 100억달러 초과, 22년 8월 무역적자 사상 최대인 94.7억달러. 이는 원유수입량의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전년 동월 대비 45억 달러 증가))
- 이 때문에 다수의 OECD국가들은 유류세 인하를 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시행. 석유공사와 산업부가 운영하는 오픈넷 자료를 분석해 보니 대한민국의 유류세 감소율이 27.1%로 비교가능한 OECD 24개국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유류세 자체도 낮았는데 그것을 더 깎아준 셈임. 11개 국가는 위기 전보다 부담세액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국가명	통화	2021년 2분기 유류세액			2021년 2분기 환율	2022년 9월 3주 유류세액			9월 3주 평균 환율	유류세 감면액		
		고급 휘발유	보통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고급 휘발유	보통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고급 휘발유	보통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한국	원	945	887	651	1.00	688	626	504	1.00	27.1%	29.4%	22.6%
독일	유로	1217	-	924	1351	944	-	915	1388	24.5%	-	3.7%
폴란드	즈워티	800	-	737	298.2	606	-	587	294.4	23.3%	-	19.4%
이탈리아	유로	1373	-	1188	1351	1094	-	967	1388	22.4%	-	20.8%
포르투갈	유로	1308	-	1046	1351	1082	-	925	1388	19.5%	-	14.0%
네덜란드	유로	1526	-	1048	1351	1392	-	1074	1388	11.2%	-	0.3%
스웨덴	크로나	1300	-	1057	133.2	1131	-	978	130.1	10.9%	-	5.3%
아일랜드	유로	1237	-	1070	1351	1149	-	1095	1388	9.6%	-	0.4%
벨기에	유로	1151	-	1153	1351	1089	-	1105	1388	8.0%	-	6.7%
체코	코루나	971	-	800	52.7	1028	-	919	56.6	1.5%	-	-6.8%
캐나다	캐나다 달러	452	429	381	913	522	491	477	1054	0.1%	0.9%	-8.4%
프랑스	유로	1278	-	1137	1351	1328	-	1246	1388	-1.1%	-	-6.6%
영국	파운드	1239	-	1249	1568	1283	-	1326	1599	-1.4%	-	-4.0%
헝가리	포린트	822	-	784	4.03	725	-	824	3.45	-3.0%	-	-22.7%
슬로바키아	유로	1040	-	806	1351	1142	-	985	1388	-6.8%	-	-19.1%
그리스	유로	1384	-	917	1351	1527	-	1097	1388	-7.4%	-	-16.4%
핀란드	유로	1402	-	1075	1351	1553	-	1281	1388	-7.8%	-	-16.0%

덴마크	크로네	1292	-	958	181.7	1447	-	1151	186.6	-9.0%	-	-17.0%
룩셈부르크	유로	952	-	777	1351	1069	-	943	1388	-9.3%	-	-18.1%
스페인	유로	955	-	796	1351	1075	-	982	1388	-9.5%	-	-20.2%
오스트리아	유로	942	-	815	1351	1080	-	1016	1388	-11.7%	-	-21.3%
일본	엔	703	693	452	1120	685	675	446	965.7	-12.9%	-13.0%	-14.3%
뉴질랜드	뉴질랜드 달러	-	884	190	801.7	-	742	313	835.3	-	19.5%	-58.2%

* 산업자원통상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 자료를 장혜영 의원실에서 정리. 원화기준 자료를 각 시점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매매기준율 평균환율을 통해 해당국 통화 세액으로 보정 후 세액감소액의 비율을 계산. 주요 국가에서 생산, 유통되는 휘발유는 국가별 품질 규격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엄격하게 같은 품질의 유류제품 비교는 불가

- OECD도 <2022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간다면 서 한국정부에게 인하를 줄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중심으로 재정을 집행할 것을 권고. IMF도 같은 내용의 권고를 한 바 있음.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나치게 과도한 유류세 인하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 것임. 국제기구의 권고대로 유류세 인하를 축소·폐지하고 국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 IMF Notes, <Fiscal Policy for Mitigating the Social Impact of High Energy and Food Prices>, 2022)

government increased the temporary fuel tax cut on gasoline, diesel and liquefied petroleum gas to 37% and extended it until the end of 2022. Even though many OECD countries have implemented similar emergency measures, such generalised energy subsidies are costly, and benefit disproportionately higher-income households (OECD, 2022b). If extended over the long term, they lead to overconsumption and run counter to climate targets. The fuel tax cut should be phased out in due course. According to a weighted

2. 기후재앙의 시대에 탄소세는 언제?

-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하지 않는 부작용도 심각한 문제임. 세계개편안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이 없음.
- 기후재난이 일상화되어 폭우로 강남이 잠기고, 태풍으로 포스코가 철강 생산을 중단한 현실. 반지하에 사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부터 목숨을 잃고 있음. 파리협약에서 제시한 1.5도 목표에서 0.4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 탄소중립 목표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인류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국가의 자원배분과 제도개선 시 최우선 고려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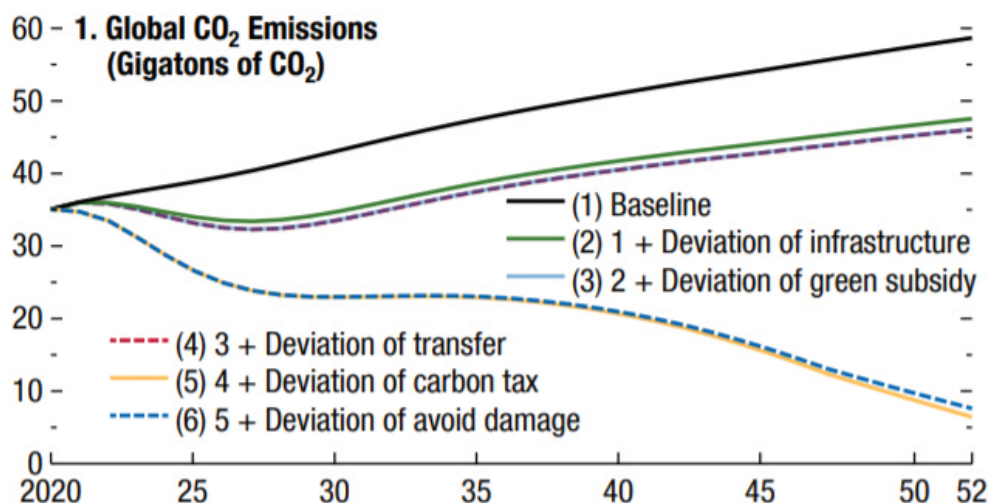
- 그렇기에 탄소배출에 세금을 부과하여 시장의 가격시그널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탄소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탄소세의 도입이 매우 긴급하고 시급함. 2019년 1월, 27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3,589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이 <탄소배당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성명>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발표해 탄소세와 탄소배당을 강력히 지지. “탄소세는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가장 비용-효율적(cost-effective)인 제도이며, 시장실패를 교정하는데 있어 강력한 시장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한 바 있음.

Economists' Statement on Carbon Dividends

Bipartisan agreement on how to combat climate change.

Jan. 16, 2019 6:55 pm ET

-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비교해 탄소세는 탄소배출에 비례해서 세금이 책정되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포괄하지 못하는 화석연료까지 포함할 수 있어 효과적임. IMF는 탄소감축을 위해 여러 정책조합을 제시하면서 탄소세의 효과를 매우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 Long and Difficult Ascent.」,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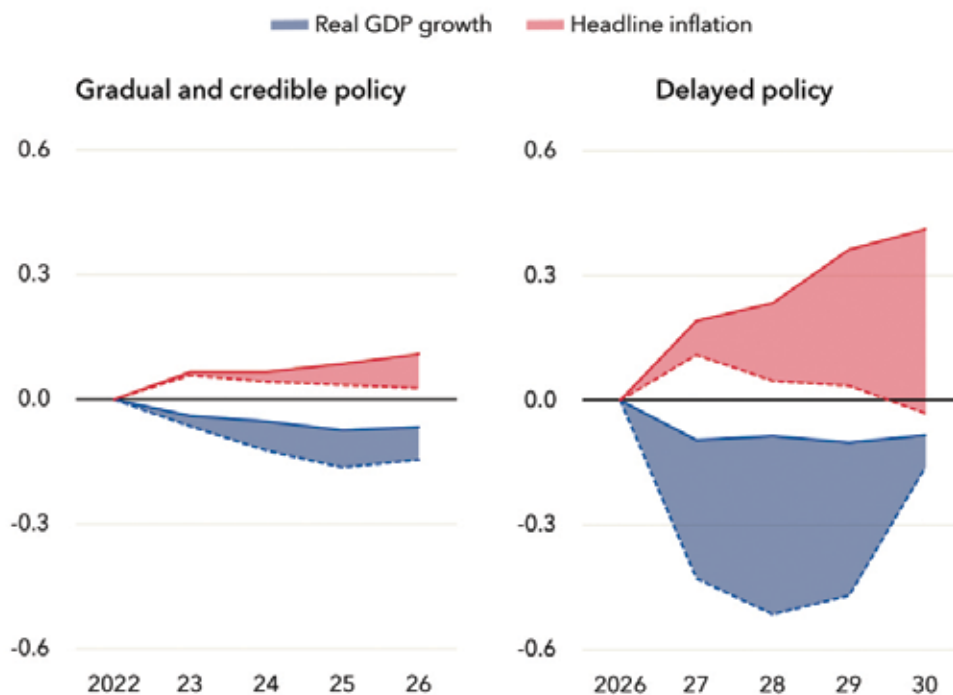
- 또한 EU가 2026년 공식 시행을 선언한 탄소국경조정(CBAM)과 미국의 탄소국경세 움직임에 대응하여 국내에서도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고배출 산업구조를 저탄소 구조로 조정하고 기술혁신과 사회기반시설을 발전시킬 유인과 규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 필요성.

-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탄소세제 도입을 위한 용역사업을 시행해서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반발과 가격경쟁력 저하, 물가상승을 우려해 도입에
는 미온적임.
- 그러나 IMF가 최근 제시했듯 탄소세를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치러야 할 대가는 더 커지게 됨. 시간이 흐를수록 인플레이션은 증가, 실질 GDP는 크게 하락하게 될 것으로 추정. 정부가 보호하고자 했던 산업계도 결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됨. 내년도 예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총합이 10조원인데(정부는 12조라고 발표하나, 감축과 관계없는 사업을 제거하면 9.9조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유류세 감면액이 9조원에 이르는 나라가 탄소중립이 가능할지 심히 의심됨.

Time to act

Delaying the transition to a low-emission economy significantly increases the costs to GDP.

(percentage points)



Source: Global Macroeconomic Model for the Energy Transition; and IMF staff estimates.
Note: The chart shows the range of values for growth and inflation for different monetary policy objectives in the United States; stabilizing an expanded core inflation index that includes GHG taxes (dotted line) is more costly in terms of growth.

IMF

(IMF, <Further Delaying Climate Policies Will Hurt Economic Growth> 2022)

-
- 정의당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전부 개정하여 이를 탄소세로 개편하고, 세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물가상승 부담에 따른 저소득층 등 시민 지원에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또한 각종 화석연료에 대한 감면을 재검토하고(농림어업 석유류의 간접세와 수소제조 천연가스의 개소세 감면 등),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는 형태의 보조금 제도로 이행할 필요 있다고 봄.
 -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관점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전환 지연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증폭시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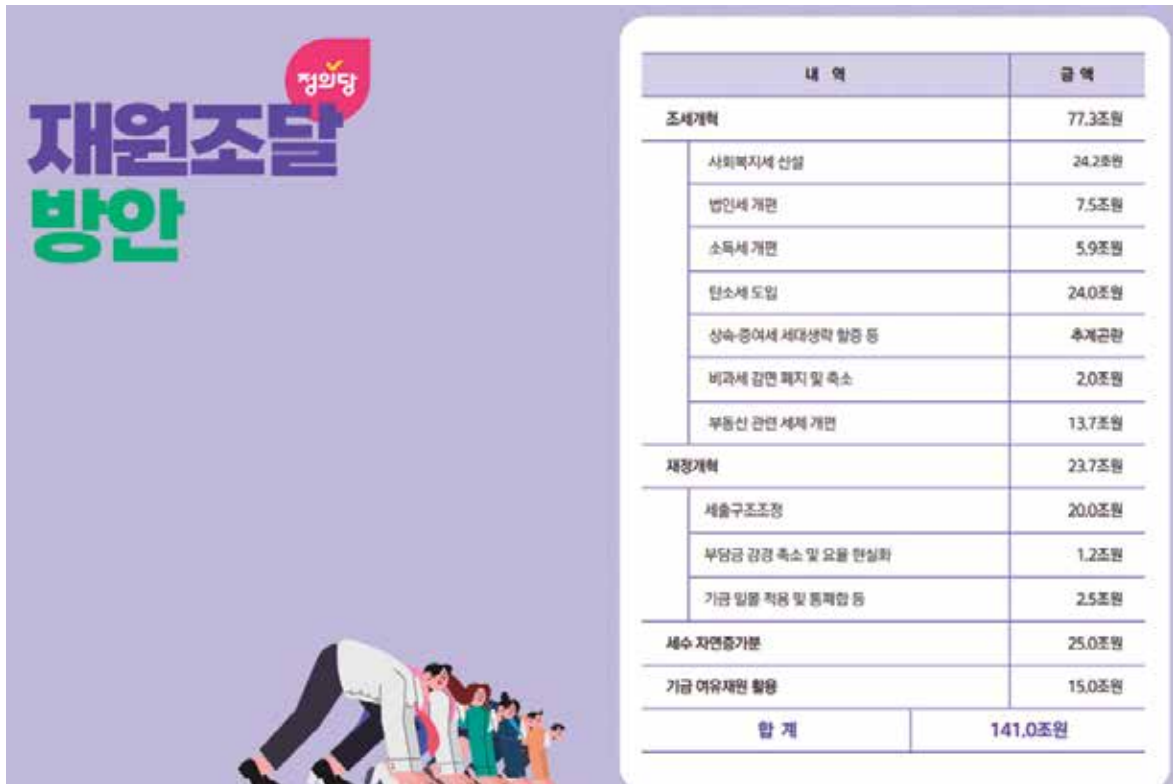
■ 감세와 긴축이 강제하는 공약불이행

-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비롯한 온갖 시대적 과제를 도외시킨 채 감세와 긴축을 추구하다 보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들조차 지킬 수 없게 됨.
-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매니페스토 본부에 이하를 주요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국정과제 공약 예산으로는 266조원, 지역공약 예산은 추산하지 못하였음. 주요 공약 예산은 2023년 예산에 대체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공약에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반영되었음.
- 또한 여기에는 없지만 대형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등 철도 지하화, 공항건설, 광역순환도로 건설, 내륙선 등의 철도 건설,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등 수조~수십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들은 모두 공약이 취소되거나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음.

| 매니페스토본부에 제출된 윤석열 후보의 주요 공약 |

주요 공약명	5년간 소요재원	2023 예산안 반영	설명
- 코로나 대책	50.0조원	O	이미 추경을 통해 집행. 그러나 이는 전 정부에서 발생한 초과세수를 통해 해결한 것
- 기초연금 인상	35.4조원	X	오히려 여당은 기초연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음
- 병사 월급 인상	25.5조원	X (0.5조 추가편성)	온전한 병사월급 200만원이면 최소 5조원이 추가 편성되어야 하나, 공약이 크게 후퇴
- 주택난 완화 및 주거복지	12.1조원	△ (5.3조 삭감)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전 정부에 비해 더 많은 물량공급으로 볼 수 없음
- 농업직불금 확대	9.2조원	X (0.3조 추가편성)	농업직불금 2배를 공약했으므로 한 해 2.5조 추가 편성이 필요.
- 생계급여 확대	7.7조원	△ (0.7조 추가편성)	한 해 1.5조원 이상 증액해야 하나 불충분함
- 부모 급여	7.2조원	△ (1.6조 편성)	원래 월 100만원 공약이었으나 70만원으로 축소하고 추후 확대
- 수도권 GTX	5.0조원	△ (0.7조 편성)	일정 부분 반영했으나 5조원 예산으로 CDEF 노선까지 가능한지는 의문
- 국민안심지원제도	4.0조원	X (긴급복지 0.01조 증액)	긴급복지의 안심지원제도 확대개편 이행 안함

- 대선 당시에도 재원마련에 대한 의구심은 매우 깊었음. 윤석열 당시 후보는 세수의 자연증가로 116조, 지출구조조정으로 150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행을 위해 실제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400조에 달하는데, 60조원 감세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절대로 마련할 수 없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토론회에서 지적한 바 있음.
- 당시 공약집에 전체 공약의 재원마련 계획을 넣은 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 중 심상정 후보가 유일했음. 복지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하면 증세를 하거나 국가채무를 감내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정치임. 감세하고 재정건전성을 고수한다면 실현가능하지 않은 수백조원 규모의 공약은 제시하면 안 됨.



(20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거공약집)

- 감세 공약 이행이 우선시되면서 각종 복지공약이 후퇴하고 삭제되는 현실에서 현 정부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음. 선거운동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해 당선취소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재원 계획상 불가능한 공약을 무더기로 제시하는 풍조에 대해서는 정치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양당정치의 한계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부가세	개소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부세	주세	농특세	합계
2022	수입	127.8	104.1	15.9	79.3	10.1	7.5	0.9	6.2	15.3	8.7	5.3	7.4	3.7	6.7	396.6
	비율(A)	32.2%	26.2%	4.0%	20.0%	2.5%	1.9%	0.2%	1.6%	3.9%	2.2%	1.3%	1.9%	0.9%	1.7%	100.0%
2023	수입	131.9	105	17.1	83.2	10.2	5	0.8	4.8	11.1	10.7	4.7	5.7	3.2	7	400.5
	비율(B)	32.9%	26.2%	4.3%	20.8%	2.5%	1.2%	0.2%	1.2%	2.8%	2.7%	1.2%	1.4%	0.8%	1.7%	100.0%
B-A		0.7%	0.0%	0.3%	0.8%	0.0%	-0.6%	0.0%	-0.4%	-1.1%	0.5%	-0.2%	-0.4%	-0.1%	0.1%	

(단위: 조원, 기획재정부 추경예산 및 2023년 제출예산안 자료를 장혜영의원실에서 재구성)

- 문재인정부의 2022년 세입예산과 윤석열정부의 2023년 세입예산을 살펴봤을 때, 세금을 두고 양당 간 매우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큰 스케일에서 바라봤을 때 세입구조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 힘들.
- 각 세목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의 소폭의 변화가 있을 뿐임. 종부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비중이 소폭 감소하고 소득세와 부가세의 비중이 약간 늘어났을 뿐.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정치가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하던 대로’ 과거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낡은 조세정치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함.
- 돌이켜 보면, 문재인정부 후반부(2020년)의 대규모 법인세 공제 확대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면은 대기업 감세의 경제 부양 효과라는 동일한 철학적 기반 하에 있음. 부동산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민주당 행정부에서 종부세를 도입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 종부세를 깎아주는 합의를 해서 종부세의 기능을 제한시킴.
-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도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일몰시키지 않았고, 탄소세 도입도 끝까지 부정적이었음. 유류세도 양당이 합심해서 정부가 5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고 이를 민생정치로 포장해 홍보한 바 있음.
- 소득세 과표조정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에서 법안이 나와 있어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영역임. 가업상속공제 조건 완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미 제기했던 내용임.
- 즉 두 정부는 거시적으로 보면 조세정치 영역에서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고, ‘매운 맛’과 ‘순한 맛’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임. 대놓고 부자감세를 하느냐 소심하게 하느냐의 차이인 것임. 양당 모두 앞서 열거했던 수많은 과제들, 특히 불평등과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개혁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현상을 방치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OECD평균을 한참 하회하는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비과세와 감면을 줄이고 탄소세제를 도입하고 자본과세와 보유세제를 정비·강화했어야 하나 모두 미흡했음.

-
- 정치와 예산과 세제가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는 현실임. 당면 과제로 현 세제개편안의 세부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임. 그러나 그 이상으로 재정과 예산의 근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정치와 이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정치개혁이 절실한 때라는 점을 지적하며 토론을 마칩.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 | 토 론 4 | —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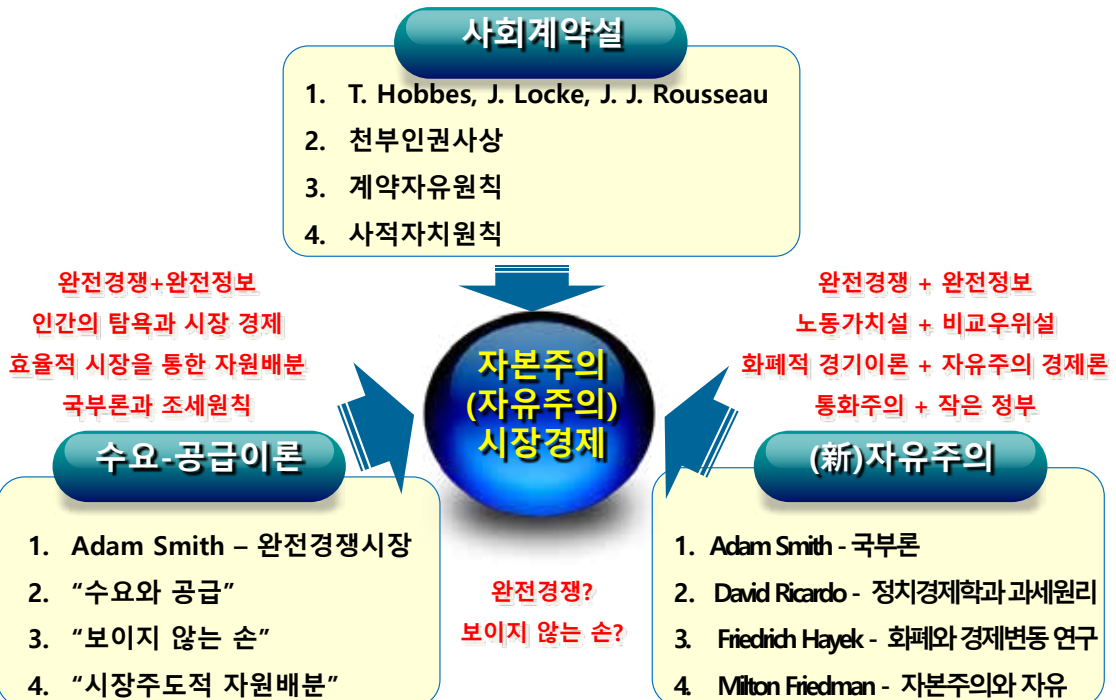
2022년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대안 -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중장기 세제개혁방안 -

2022. 11. 07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

I.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1] - (新)자유주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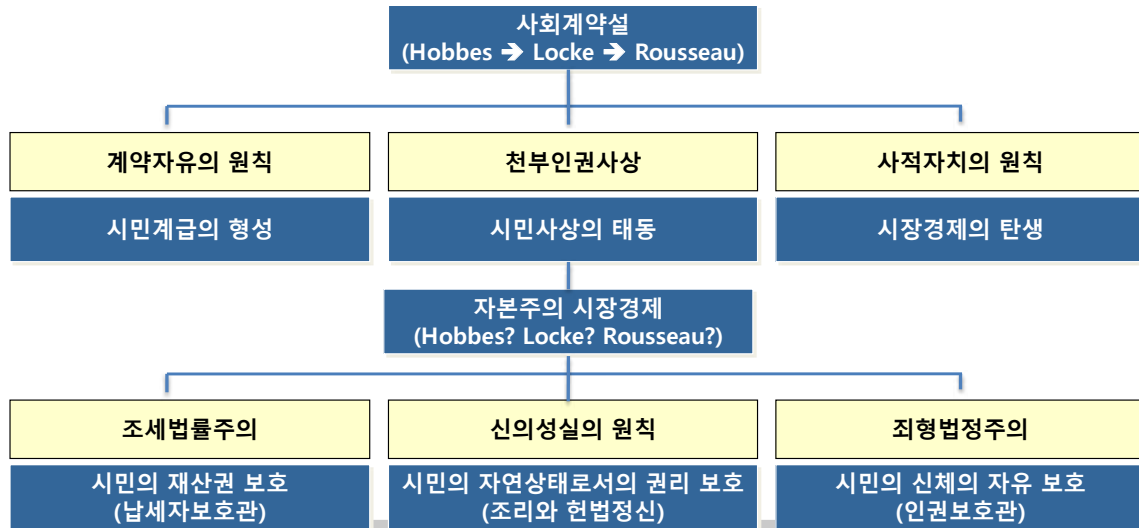
□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 - “사회계약설 + 수요-공급이론 + (新)자유주의”에 기초한 대등관계



I.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2] – 사회계약설 관점

□ 절대권력의 시민계급으로 이동과정에서 시민계급은 신체와 재산의 자유를 쟁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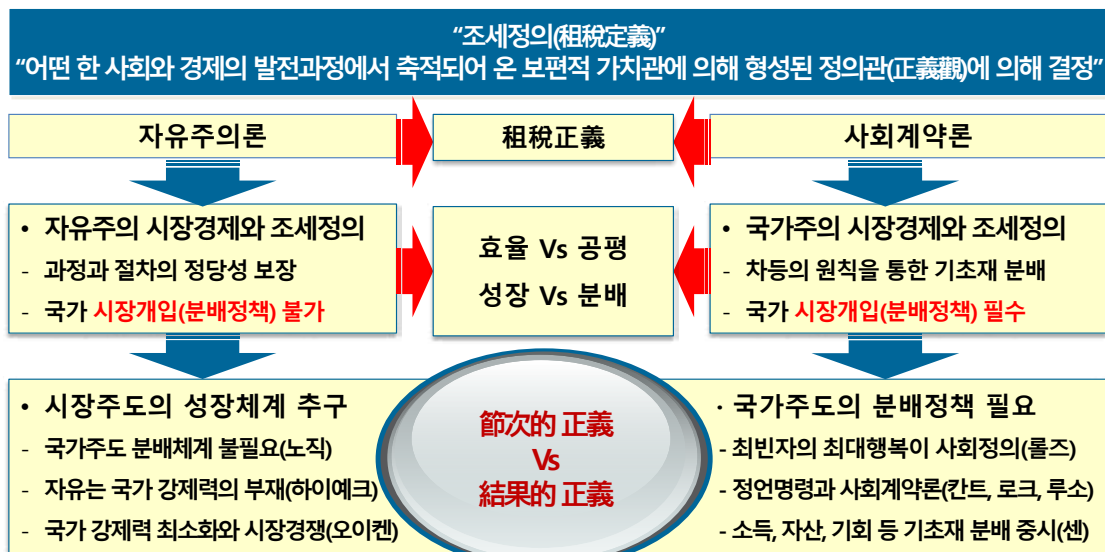
➔ “臣民國家, 國民國家, 市民國家”: 사회계약설에 근거한 우리나라 국가체제?!



**시민계급이 국가권력의 주체가 되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의 자원이 배분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일각한 시장경제국가!!**

I.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3] – 양자의 비교와 정의로운 조세

□ 조세(租稅)는 “시장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가?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분배와 복지의 수단인가?



대한민국에서의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참고-1]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 政治的 自由 Vs 經濟的 自由

1987년 대한민국 제9차 개헌 헌법 전문(前文)

“(전략)…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후략)… . [1987년 10월 29일 9차 개헌 헌법 전문(前文)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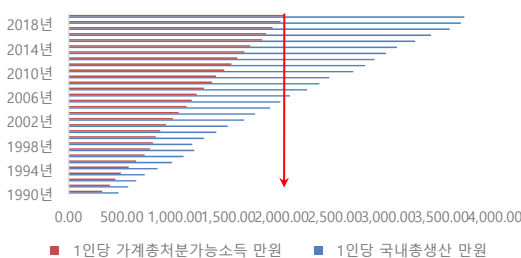
공평과세와 기회균등 민주주의 및 미국의 이상

“거대한 부의 축적은 사회가 생산한 것을 개인이 소유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러므로 개인이 부를 국가에 환원시키는 것은 공평한 것이다. 상속인들이 그들의 선조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상속권은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얻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한 것이 될 수 없다. 재산상속권을 제한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기회균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국민의 이상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Andrew Carnegie(1889), “The Gospel of Wealth”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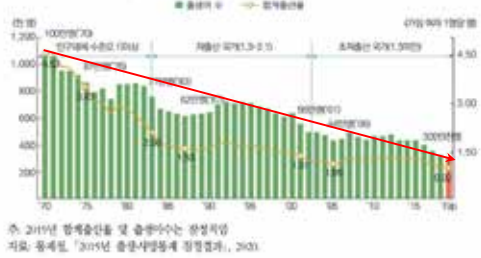
II. 우리나라 경제사회 현황 분석[1] - 소득분배와 인구구조 및 자산구조(2020년)

□ 1990년 이후 우리나라는 소득분배율과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GDP 및 자산 구조가 부동산 관련 투자 또는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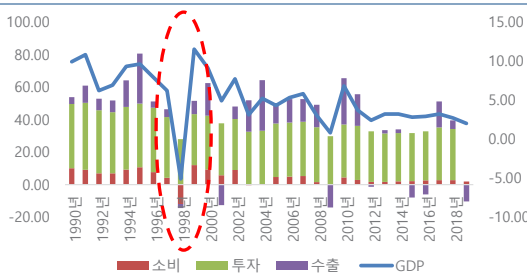
[1] 1인당 국민총생산과 가계총처분가능소득[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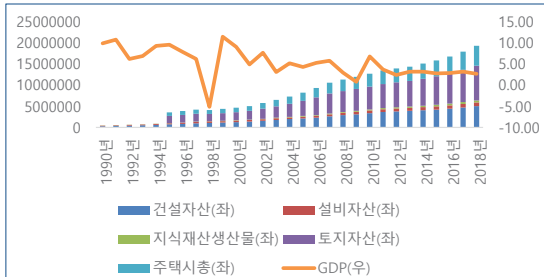
[2]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통계청]



[3] 우리나라 GDP와 소비, 투자, 수출 동향[한국은행]



[4] 우리나라 주요 자산과 GDP 변동 추이[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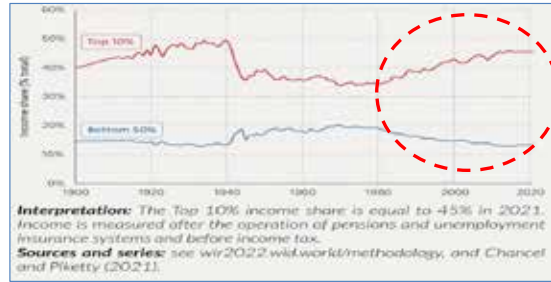
II. 우리나라 경제사회 현황 분석[2] – 소득불공평의 심화

□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와 전체 부(富)의 58.5%이지만 소득 하위 50%는 각각 16%와 5.6%에 불과하여 국민간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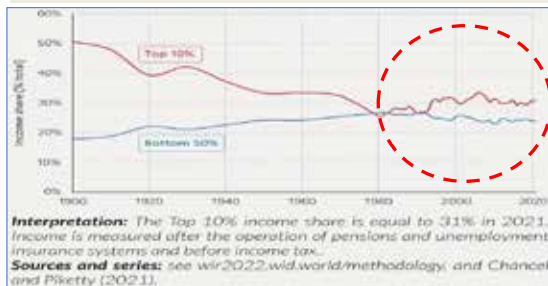
[1] 독일의 소득불평등[세계 불평등 보고서(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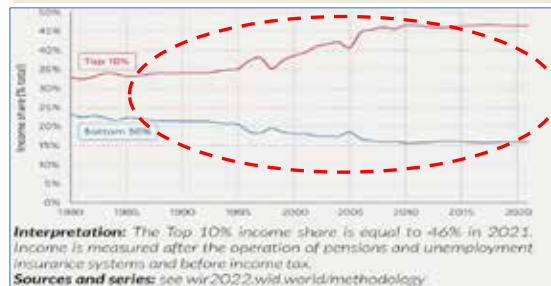
[2] 미국의 소득불평등[세계 불평등 보고서(2022)]



[3] 스웨덴의 소득불평등[세계 불평등 보고서(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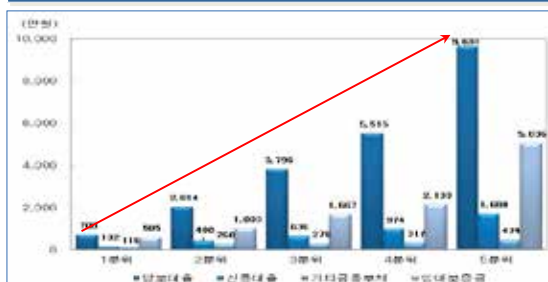
[4]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세계 불평등 보고서(2022)]



II. 우리나라 경제사회 현황 분석[3] – 자산배분의 양극화

□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IMF금융위기 이후, 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경제환경이 빠르게 구축되면서 자산배분의 양극화 심화!!

[1] 소득 5분위별 부채 유형 및 규모(KB금융, 2019)



[2] 입주 형태별 자산보유 구조(KB금융, 2019)



[3] 연령별 자산유형 구성비(KB금융, 2019)



[4] 연령별 가구당 자산 보유액(KB금융, 2019)



[참고-2] 법인세율 국제비교 :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은가...?

-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던 최고세율 25%를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10%의 특례세율 적용(법인세법 제55조)
- 금번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2021년 기준 100여개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액은 약 4조 1000억 원에 달하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감세규모는 대기업 감세액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함

OECD 회원국의 명목세율과 유효세율 및 GDP 순위/OECD(2021년)

국가	코스타리카	칠레	멕시코	일본	프랑스	콜롬비아	독일	뉴질랜드	호주	국가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벨기에	그리스	체코	덴마크	핀란드	이스라엘	스위스
명목세율	30%	27%	30%	29.7%	32%	32%	29.9%	28%	26%	명목세율	22%	21%	25%	24%	19%	22%	20%	23%	21.1%
유효세율	38%	35.6%	28.7%	28%	27.5%	26.9%	26.9%	26.1%	26%	유효세율	19.2%	19.2%	19.1%	19.1%	18.9%	18.9%	18.9%	18.8%	18.4%
GDP 순위	32위	24위	10위	미보고	4위	22위	2위	27위	8위	GDP 순위	20위	30위	16위	28위	25위	21위	23위	19위	12위

국가	대한민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미국	국가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폴란드	영국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명목세율	27.5%	25%	25%	24.9%	26.2%	25%	27.8%	21.4%	25.8%	명목세율	20%	31.5%	19%	19%	19%	20%	20%	15%	12.5%
유효세율	23.8%	23.2%	23%	21.9%	21.4%	20%	20.7%	19.5%	19.4%	유효세율	18.1%	18%	15.8%	15.5%	15.4%	14.6%	13.2%	13.1%	11.4%
GDP 순위	7위	11위	12위	31위	6위	9위	5위	9위	1위	GDP 순위	37위	26위	34위	14위	3위	35위	36위	33위	18위

Ⅲ. 우리나라 세수 구조 검토[1] - 명목 GDP 대비 세수 비중 국제 비교

- 명목 "GDP 기준으로 소득세가 가장 높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낮은 수준"이지만, "조세수입 기준으로는 소득세가 가장 높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유사한 수준"임

[1] 명목 GDP 대비 법인세 세수[국회예산정책처(2022)]

	2016	2017	2018	2019	2020
캐나다	38	39	41	42	42
한국	34	36	42	43	38
일본	36	37	41	38	31
프랑스	20	23	21	22	23
영국	26	26	26	23	23
이탈리아	21	21	19	20	21
독일	20	20	21	20	17
미국	20	15	13	13	13
OECD 평균	29	30	31	30	27

[2] 명목 GDP 대비 소득세 세수[국회예산정책처(2022)]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캐나다	121	119	118	120	122	125
이탈리아	112	108	108	107	110	115
독일	99	100	103	105	106	104
미국	106	104	104	101	103	105
프랑스	85	85	86	94	93	96
영국	88	89	90	90	90	95
일본	57	56	58	60	59	60
한국	41	43	45	49	48	53
OECD 평균	79	78	79	79	80	83

[3] 명목 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국회예산정책처(2022)]

	2016	2017	2018	2019	2020
헝가리	9.1	9.3	9.5	9.5	9.5
네덜란드	9.3	9.3	9.5	9.3	9.7
핀란드	9.1	9.0	9.2	9.2	9.3
스페인	9.2	9.2	9.2	9.1	9.2
노르웨이	8.7	8.6	8.4	8.6	9.1
프랑스	6.9	7.0	7.1	7.2	7.0
독일	6.9	6.9	7.0	7.0	6.6
영국	7.0	6.9	7.0	7.0	6.6
이탈리아	6.0	6.2	6.2	6.2	6.0
일본	6.0	6.0	6.0	6.1	6.1
한국	3.9	4.1	4.1	4.3	4.5
스위스	3.2	3.3	3.1	3.1	2.9
OECD 평균	6.8	6.9	6.9	6.9	6.9

[4] 총조세수입 대비 세목별 세수[국회예산정책처(2022)]

구분	한국						OECD 평균
	'15	'16	'17	'18	'19	'20	
1000 소득세	303	312	321	341	332	309	336
- 1100 개인소득세	172	176	179	184	175	188	241
- 1200 법인소득세	131	136	142	157	157	121	88
4000 재산과세	124	116	117	116	114	142	56
- 4100 부동산 관련 재산세	32	30	31	31	34	37	32
5000 소비과세	280	281	277	263	258	244	320
- 5111 부가가치세	153	158	160	153	157	151	201
6000 기타	24	26	25	23	25	21	06

Ⅲ. 우리나라 세수 구조 검토[2] - 세목별 최고세율과 조세부담율 국제비교

□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은 G7 평균과 유사하나, 부가가치세 명목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9.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1] 주요국 소득세 최고세율[국회예산정책처(2021)]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본	50.8	55.9	55.9	55.9	55.9	55.9	55.9
프랑스	54.5	54.5	54.5	54.5	55.4	55.4	55.4
캐나다	49.5	49.5	53.5	53.5	53.5	53.5	53.5
독일	47.5	47.5	47.5	47.5	47.5	47.5	47.5
한국	41.8	41.8	41.8	44.0	46.2	46.2	46.2
영국	45.0	45.0	45.0	45.0	45.0	45.0	45.0
미국	46.3	46.3	46.3	46.3	43.7	43.7	43.7
이탈리아	47.8	46.8	48.8	47.2	47.2	47.2	47.2
G7 평균	48.8	49.6	50.2	50.0	49.7	49.7	49.7
OECD 평균	41.8	41.9	42.3	42.1	42.2	42.5	42.6

[2] 주요국 법인세 최고세율[국회예산정책처(202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독일	29.6	29.6	29.7	29.8	29.8	29.9	29.9	29.9	29.9	29.9
일본	39.5	37.0	37.0	32.1	30.0	30.0	29.7	29.7	29.7	29.7
프랑스	36.1	38.0	38.0	38.0	34.4	34.4	34.4	34.4	32.0	28.4
이탈리아	31.3	31.3	31.3	31.3	31.3	27.8	27.8	27.8	27.8	27.8
한국	24.2	24.2	24.2	24.2	24.2	24.2	27.5	27.5	27.5	27.5
캐나다	26.1	26.2	26.2	26.7	26.7	26.7	26.8	26.6	26.2	26.2
미국	39.1	39.0	39.1	39.0	38.9	38.9	25.8	25.9	25.8	25.8
영국	24.0	23.0	21.0	20.0	20.0	19.0	19.0	19.0	19.0	19.0
G7 평균	32.2	32.0	31.8	31.0	30.2	31.0	27.6	27.6	27.2	26.7
OECD 평균	25.2	25.3	25.2	25.1	24.8	24.6	24.0	23.7	23.1	22.9

[3] 주요국 부가가치세 최고세율[국회예산정책처(2021)]

	도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헝가리	1988	27.0	27.0	27.0	27.0	27.0	27.0	27.0
덴마크	1967	25.0	25.0	25.0	25.0	25.0	25.0	25.0
노르웨이	197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프랑스	1968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영국	1973	20.0	20.0	20.0	20.0	20.0	20.0	20.0
독일	1968	19.0	19.0	19.0	19.0	19.0	19.0	19.0 ¹⁾
한국	197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일본	1989	5.0	8.0	8.0	8.0	8.0	10.0	10.0
캐나다	1991	5.0	5.0	5.0	5.0	5.0	5.0	5.0
OECD 평균		19.1	19.2	19.2	19.3	19.3	19.3	19.3

[4] 주요국 조세부담율[국회예산정책처(2021)]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헝가리	OECD 평균
2009	17.4	15.3	23.3	16.7	25.2	22.2	44.9	23.1
2010	17.2	15.6	23.4	17.3	26.0	21.3	44.7	23.2
2011	17.6	16.1	23.7	18.4	27.1	21.9	44.7	23.5
2012	17.8	16.5	24.1	18.6	27.9	22.5	45.4	23.9
2013	17.0	17.1	24.3	19.4	28.6	22.9	45.8	24.1
2014	17.1	18.3	24.6	19.8	28.5	22.8	46.5	24.3
2015	17.4	18.6	24.7	20.0	28.5	23.1	46.0	24.4
2016	18.3	18.3	25.3	19.7	28.7	23.3	45.6	24.9
2017	18.8	18.8	25.1	20.6	29.3	23.3	45.7	24.8
2018	20.0	-	24.9	18.2	30.0	23.8	44.8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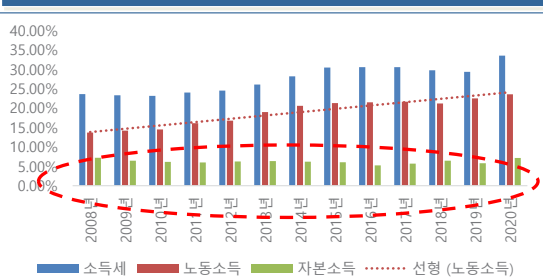
Ⅲ. 우리나라 세수 구조 검토[3] - 법인세 실효세율과 소득유형별 세수 비중

□ 소득과세제도는 “법인과 지대소득자의 조세부담이 개인과 근로소득자보다 매우 낮다는 문제”가 있는바, “소득과세 불공평은 자산분배 불평등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

기업규모별 실효세율[국회예산정책처(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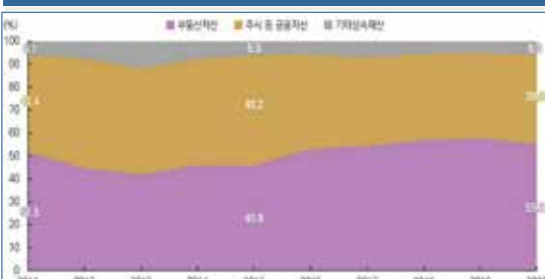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세수 비중[유호림(2021)]



가구당 소득분위 대비 평균보유주택[통계청(2021)]



최고 증여재산의 변동 추이[국회예산정책처(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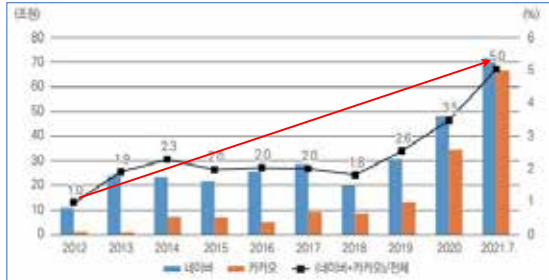
[참고-3] 4차 산업혁명과 경제구조의 대전환 : 데이터, 플랫폼, 로봇, 탈탄소...

□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기반한 플랫폼 산업과 로봇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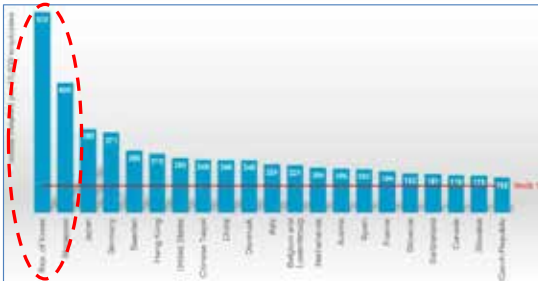
[1] 데이터산업 현황[데이터산업 현황조사(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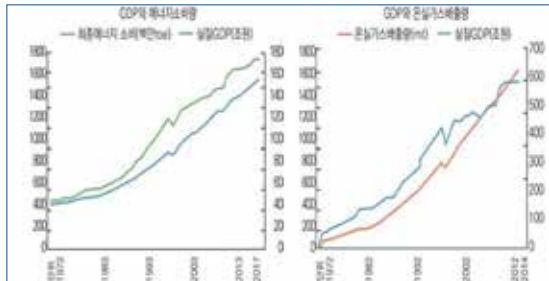
[2] 빅테크기업의 시가총액 비중[한국거래소(2021)]



[3] 글로벌 로봇 침투율[World Robotics(2021)]



[4]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국회예산정책처(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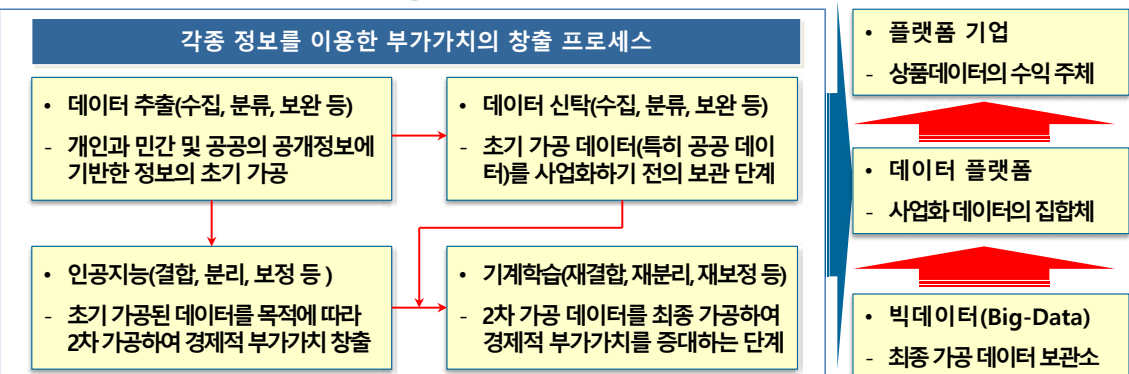


IV. 대전환 시대의 한국 경제[1] - 데이터 경제의 도래

□ “데이터 경제”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우선 플랫폼(T) 기업 등이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가공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득을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

“데이터 경제”는 어떠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는 “인”이 다른 “인”의 생애를 통하여 생산한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수집, 저장, 처리(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후 각 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新 블루체인!”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Personal data) 정보이용에 동의한 모든 유형의 개인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정보(Private data) 정보이용에 동의하였거나 공개된 민간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정보(Public data) 법령에 의해 공개되었거나 공개가능한 공공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소비자(생산자) 플랫폼 기업 등이 공급한 데이터상품의 최종 소비 |
|---|--|--|--|



IV. 대전환 시대의 한국 경제[2] - 로봇 경제의 도래

□ EU는 “로봇시민법”을 통하여 로봇을 “제3의 人格體(電子人間)”로 정의하고 있는바, 로봇은 “독자적 학습능력 또는 인공지능”을 보유한 “자율형 로봇”과 “지능형 로봇”을 의미함

EU(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017년1월 “로봇시민법(European Civil Law Rules on Robotics)”를 결의하여 로봇에 대하여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음

EU(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로봇의 범위를 지능을 갖춘 제3의 인격체로 보아 법적 지위(전자인격)의 부여를 권유

[1] 생산형 로봇(단순한 노동능력을 보유한 기계장치)

- 단순히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대량 가공 및 생산 능력 보유

[2] 제어형 로봇(단순한 제어능력을 보유한 기계장치)

- 간단한 연산작업을 통해 가공 및 생산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보유

[3] 자율형 로봇(독자적 학습능력을 보유한 로봇)

- 데이터에 기반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통해 예측하고 자율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능력 보유

[4] 지능형 로봇(독자적 인지능력을 보유한 로봇)

- 다층 인공신경망에 기초한 심층학습(Deep Learning)을 통해 독자적 인지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보유

우리나라에서는 로봇의 범위를 기계장치와 소프트웨어로까지 확장하여 정의하였으나 법적 지위에 대한 고려는 없음

우리나라에서는 박영선 의원 등이 2017년 7월 발의한 “로봇기본법(의안번호2008068)”에서 로봇을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로 정의하였음

IV. 대전환 시대의 한국 경제[3] - 탈탄소 경제의 도래

□ “탄소세”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의 배출을 경감하기 위해 재화에 포함된 “탄소 함유량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목적세이자 국경세조정 대상이 되는 거래세”임

□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탄소누출 감축 및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탄소 함유 수입재화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제한 조치”에 속함

EU는 “유럽 그린 딜”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예고 후(2019.12) “Fit for 55”를 통해 CBAM 발표(2021.07)

• EU 탄소국경조정 시행안의 주요 내용(1)

- 2050년 탄소누출방지 및 기후 중립 목표달성
- 2023년~2025년 전환 기간 종료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

• EU 탄소국경조정 시행안의 주요 내용(2)

- 전환 기간 중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에 과세
- 2026년부터 과세대상 품목이 확대될 예정

• EU 탄소국경조정 시행안의 주요 내용(3)

-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과세기준
- 수입업자가 CBAM 적용 재화 수입시 탄소배출권 구매

• EU 탄소국경조정 시행안의 주요 내용(4)

- 원산지 국가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한 경우 감면 가능
- EU와 탄소 가격이 유사하거나 최빈국의 경우 면제 가능

미국은 무역대표부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예고 후(2021.03) 탄소 집약 수입품에 탄소국경세 부과 법안 발표(2021.07)

이에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기본법(2022.03.25 시행)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인지에산제도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35% 이상을 감축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하는 중장기 목표와 비전을 규정

[참고-4] 현행 조세제도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가...?

□ 기본적으로 1975년과 1977년에 도입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제사회에 부합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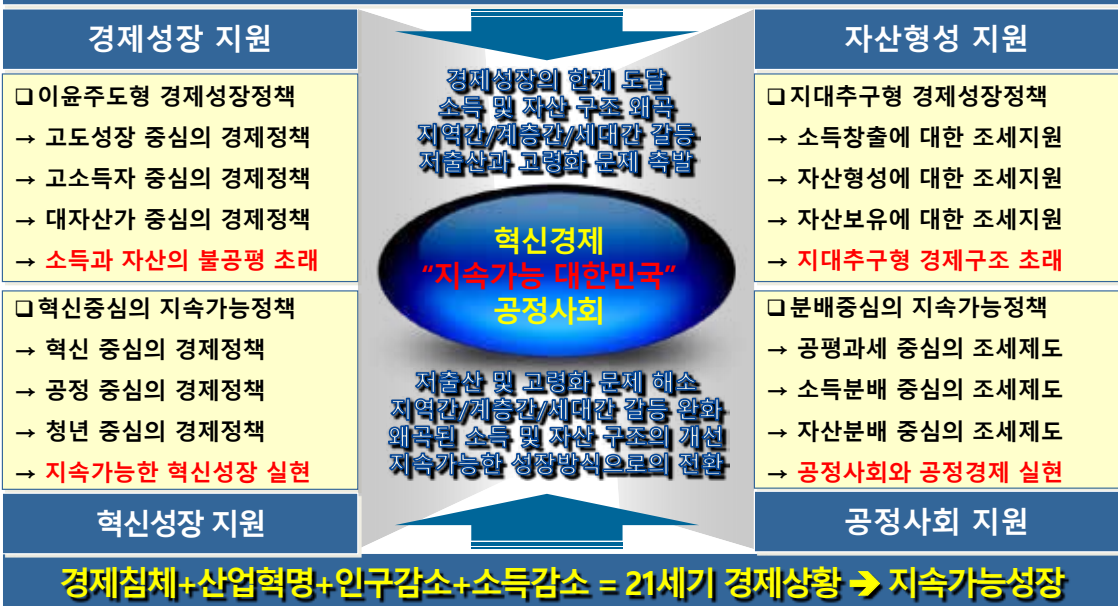
OECD 분류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체계				
구분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
국세	• 소득세 • 법인세 • 농어촌특별세 (소득세·법인세 감면분)	•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분, 증권거래금액,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분)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주세 • 관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분·레저세분, 관세 감면분)	• 과년도 수입
지방세	• 지방소득세 • 주민세(종업원분)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주민세(사업소분) • 자동차세(소유분) • 지방교육세 (취득세분·등록면허세분·주민세사업소분·재산세분·자동차세 소유분)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담배소비세 • 자동차세(주행분) • 지방교육세 (레저세분·담배소비세분·자동차세 주행분)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 주민세(개인분) • 지방교육세 (주민세 개인분)

주: 부가세(Surtax)는 본세를 기준으로 분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V. 대전환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1] - 조세정책의 대전환

□ 성장중심정책으로 “인구증가+소득증가+자산형성이 이루어지던 1980년대와 4차 산업혁명 및 인구감소+소득격차+자산격차가 진행되는 21세기”는 사회환경이 상이함!

경제성장+산업발전+인구증가+소득증가 = 20세기 경제상황 → 이윤주도성장



V. 대전환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2] - 세제 대전환의 전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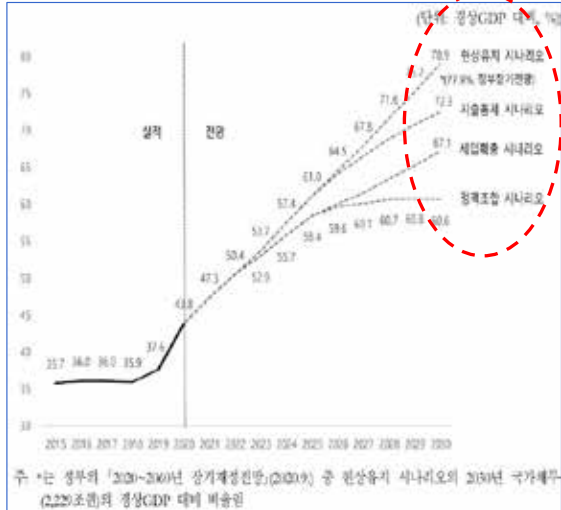
- 혁신성장과 공정사회를 위한 세제개편은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의 재정적 기반 위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중장기 재정전망에 근거한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특히 세제개혁 과정에서는 부득이 각 경제주체간 조세부담의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재정전망 시나리오도 참고해야 함**

[1]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중기재정전망[국회예산정책처(2021)]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536.8	532.1	569.6	593.3	619.0	644.3	667.4	692.7	718.3	744.3	3.9
· GDP 대비 비율	(25.4)	(26.1)	(25.3)	(26.0)	(26.2)	(26.4)	(26.4)	(26.5)	(26.5)	(26.7)	
국세수입	323.0	300.9	347.4	362.0	377.5	394.3	407.8	423.4	439.2	453.3	3.9
· 연평균 대비 증가율		(5.3)	(1.9)	(4.2)	(4.3)	(4.5)	(3.4)	(3.8)	(3.7)	(3.6)	
· GDP 대비 비율	203.3	211.1	222.2	231.5	241.6	250.0	259.6	269.3	279.3	289.4	4.0
· 연평균 대비 증가율		(3.8)	(5.3)	(4.2)	(4.3)	(3.5)	(3.8)	(3.8)	(3.7)	(3.6)	
총지출	609.9	614.0	636.7	668.5	698.4	730.2	760.6	790.3	823.3	857.1	3.9
· GDP 대비 비율	(29.0)	(28.9)	(28.5)	(29.3)	(29.6)	(29.9)	(30.3)	(30.3)	(30.3)	(30.7)	
· 연평균 대비 증가율	284.1	310.7	313.8	332.3	360.0	370.0	388.1	403.2	425.1	445.8	3.1
· 연평균 대비 증가율		(2.4)	(1.0)	(5.9)	(3.3)	(3.7)	(4.5)	(4.4)	(4.9)	(4.9)	
· GDP 대비 비율	325.8	303.3	323.0	336.2	348.4	360.2	372.4	385.1	398.2	411.3	2.6
· 연평균 대비 증가율		(-6.9)	(6.3)	(3.6)	(3.4)	(3.4)	(3.4)	(3.4)	(3.4)	(3.3)	
통합재정수지	-83.3	-61.9	-67.1	-75.0	-79.3	-85.9	-93.2	-97.6	-104.8	-112.6	
· GDP 대비 비율	(-4.3)	(-2.9)	(-3.0)	(-3.3)	(-3.4)	(-3.3)	(-3.7)	(-3.7)	(-3.9)	(-4.0)	
· 연평균 대비 증가율	35.7	38.0	44.6	44.0	44.1	43.9	44.0	46.6	46.1	45.8	
· GDP 대비 비율	(3.7)	(3.8)	(2.6)	(1.9)	(3.0)	(3.8)	(3.7)	(3.8)	(3.7)	(3.6)	
· 연평균 대비 증가율	119.2	-99.9	-111.7	-119.0	-123.4	-129.8	-137.2	-144.2	-150.9	-156.4	
· GDP 대비 비율	(5.9)	(-4.7)	(-3.1)	(-5.2)	(-5.2)	(-5.3)	(-5.4)	(-5.5)	(-5.6)	(-5.7)	
국가채무	965.9	1,022.6	1,085.3	1,148.1	1,211.1	1,275.4	1,341.2	1,407.4	1,475.0	1,543.8	
· GDP 대비 비율	(47.3)	(36.4)	(33.7)	(37.4)	(38.0)	(36.5)	(37.6)	(37.4)	(37.2)	(36.3)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미조정), 2021년 추정치(2차)와 1차
2.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2]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비율 전망[국회예산정책처(2021)]



V. 대전환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3] - 4차산업혁명시대의 신(新)세원 검토

- 4차 산업혁명에는 “기술과 자본의 결합에 의한 지대추구와 자본축적 및 노동의 시장소외와 경제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재정(기본소득재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시대적 요구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기본소득 관련 재정조달을 위한 세원으로 (1) 데이터세(플랫폼세), (2) 로봇세, (3) 탄소세, (4) 국토보유세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음

[1] 데이터세(플랫폼세)

□ 데이터세(플랫폼세)의 장점

- : 기본소득 과세원리에 부합하며 납세순응도도 비교적 높음
- : 사실상 무한한 세원으로 확보 가능하며 과세체계도 간명

□ 데이터세(플랫폼세)의 단점

- : 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제약 및 정보유출 가능성 상존
- : 과세대상 데이터 분류의 제약 및 빅데이터 출현 우려 증대

[3] 탄소세

□ 탄소세의 장점

- : 시대적(환경적) 요구에 부합하므로 납세 순응도가 높음
- : 지속성장을 위한 세제이며 국제적 정당성도 높음

□ 탄소세의 단점

- :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한 높은 징세비용 및 기업부담 증가
- :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문제 및 세원의 잠식 가능성 상존

[2] 로봇세

□ 로봇세의 장점

- : 미래 사회의 보편적 세원으로서 안정적 세수 보장 가능
- : 노동소외 문제의 해소를 위한 세제로서 사회적 합의 용이

□ 로봇세의 단점

- : 2021년 현재 로봇 산업의 발전기후로 세원확보 어려움
- : 로봇세 과세로 오히려 로봇산업 발전이 저해될 우려 확대

[4] 국토보유세(지대세)

□ 지대세(국토보유세)의 장점

- : 세원의 보편성과 안정성 담보 및 수직적 공평에 부합
- : 시행의 편의성과 신속성 보장 및 징세비용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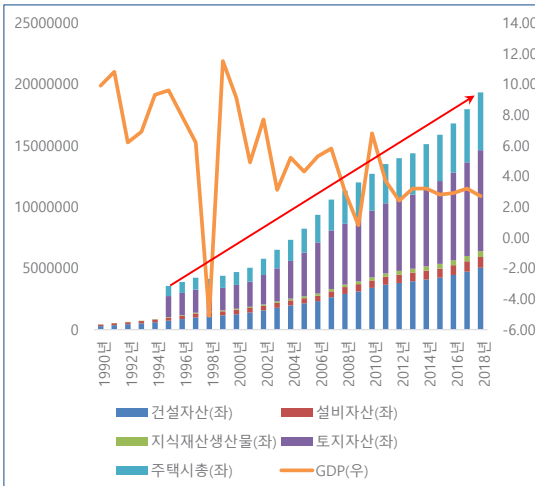
□ 지대세(국토보유세)의 단점

- : 세원의 중복(중복과세) 및 조세부담의 전가
- :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해 중부세처럼 조세저항 발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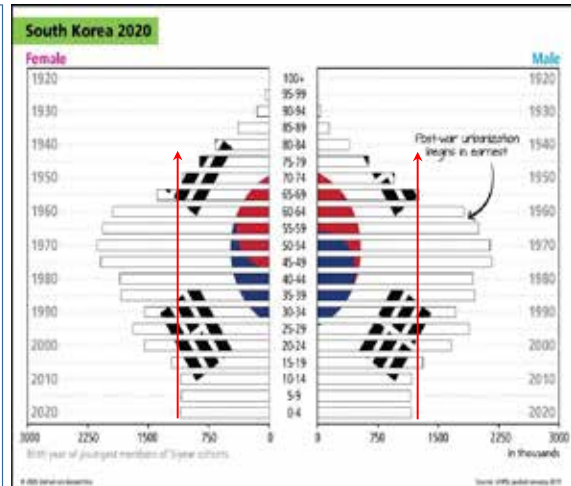
[참고-5]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나라 자산구조와 인구구조에 대한 단상...

- “총자산의 77%가 토지와 건물(주택)에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자산구조와 경제구조”는 1980년대 고성장 시대의 유산으로서, 이러한 자산구조와 경제구조로는 “4차 산업혁명과 불확실성으로 표현되는 대전환 시대의 지속성장과 혁신경제”를 담보할 수 없음
- 특히, 21세기 이후 “고령화와 저출산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청년층과 영유아층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바, 이는 “대한민국 미래 사회의 성장동력이 잠식”되고 있음을 의미

89체제 이후 우리나라 자산구조[한국은행, 2020]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Peter Zeihan, 2020]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2022.11.07]

End Of Document !!

liuhulin@naver.com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 | 토 론 5 | —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와 과제



김우철
서울시립대

2022. 11

Table of Contents

I. 세제개편안 특징

II. 감세기조의 적절성

III. 세제개편안 평가

1. 국정과제 충실한 반영
2. 정책적 차별화
3. 개혁적 측면의 평가

IV. 한계와 과제

I. 세제개편안 특징

I.1 2022년 세제개편안(2022.7.21) 특징

새 정부 조세정책 처음 정식 발표: 외형적으로 3가지 특징

1. (범위) 개편 대상의 범위가 예년에 비해 훨씬 커졌다는 특징을 보임
 - 정책목적별로 구분된 14개 분야에 걸쳐 총 177개 개정 사항(세분류 200개 이상)
2. (방향) 감세 기조 명확, 세수감소 규모도 예상보다는 컸음(이유 중요!)
 - 순계 기준 매년 13.1조원
3. (내용) 기업과세와 보유세가 주요 내용 구성, 다음으로 소득세 개정 사항도 중요
 - 상속증여세에서도 중요 개정 사항 존재

⇒ 비판: “대기업과 자산보유자 중심으로 13조원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조치”

- 1) 재정건전화에 역행하는 문제?
- 2) 단순히 부자의 세금을 깎아 주는 정책?

⇒ Facts는 무엇? 세제개편안의 배경과 목적, 성격, 한계와 추가과제는?

I.2 세제개편안 구성과 범위

정책목적 변화

1. 불평등 완화 → 저성장 극복
2. 기업경쟁력 제고와 부동산세제 정상화가 주요 목적

A. 경제활력 제고

1. 기업경쟁력 제고: 10개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12개
3.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 8개
4. 금융시장 활성화: 7개

B. 민생안정

5.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12개
6.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7개
7. 지역 균형발전: 1개
8. 부동산세제 정상화: 7개

C. 조세인프라 확충

9.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과 기반 마련: 11개
10. 조세회피 관리 강화: 10개
11.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5개

D.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2. 납세자 권익 보호: 10개
13. 납세편의 제고: 7개

E. 기타

14. 기타 개정사항: 소득세·법인세(25개), 양도소득세·상증세(13개), 국제조세(7개), 관세(11개), 개별소비세 등(5개), 국세 제반 분야(9개)

I.3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주요내용

1.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간소화
2. 해외배당소득면제
3. 종합주동산세 세율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조정
4.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식대 비과세
5. 기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6. 기업환류과세 폐지

1. 경제 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투자·상업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분할납부 대상 확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

- 기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 특례 실효성 제고, 납부유예 제도 도입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금융시장 활성화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및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 증권거래세 인하

2. 민생 안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금액 인상
- 일제세액공제를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지역 균형발전 강화

-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 세액감면 확대 등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부동산세제 정상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II. 감세기조의 적절성

II.1 (Issue) 감세 규모와 적절성 문제

Question: 이번 세제개편안의 감세 기조 적절한가?

지난정부 동안 건전재정 차원에서 증장기적으로 세입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감세로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

감세규모

- 정부는 **총 감세규모를 13.1조원**으로 추계
- (연도별) '23년 -6.4조원, '24년 -7.3조원
- (세목별) 소득세 -2.5조원, 법인세 -6.8조원

구분	합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합계	△13.1	△6.4	△7.3	0.0	0.5	-
소득세	△2.5	△3.5	△0.5	0.8	0.7	-
법인세	△6.8	△0.6	△6.4	0.3	△0.1	-
증권거래세	△1.9	△0.7	△0.1	△1.1	△0.1	-
종합부동산세	△1.7	△1.3	△0.4	-	-	-
기타	△0.2	△0.3	0.1	0.0	0.0	-

<표> 세수효과: 전년대비
(단위 조원)

감세규모

- 소득세·법인세가 전체 세수효과의 71%를 차지
- 법인세 특성 상 '24년에 더 세수가 많이 감소
-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세수감소를 약 4조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효과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 높음

II.2 최근 세수 급증 추세

Question: 이번 세제개편안의 감세 기초 적절한가?

- 세제개편안의 감세규모는 일반의 예상을 넘는 것은 사실
-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경제회복과 자산시장 활성화로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세수입이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크게 급증한 상황임**

- 2020년 285.5조원 → 2021년 344.5조원
→ 2022년 397조원으로
- 2년 만에 111.5조원 증가
- 과거 국세수입이 100조원 증가하기까지
약 10년 정도 걸렸던 것과 크게 대비



- 다만 이러한 증가세는 예외적인 것으로 내년에는 경기둔화와 더불어 기조효과로 인해 국세수입이 400.5조에 머무르고, 2023년 이후에는 경상성장률에 준하는 연평균 4.9%의 세수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II.3 조세부담률 급등과 자연적 세입확충

Question: 이번 세제개편안의 감세 기초 적절한가?

-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조세부담률은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여, 2022년 23.3%** 도달!
 - 팬데믹 초기 경기침체에도 하락하지 않고, 미미하게 상승한 바 있음('19년 19.9% → '20년 20%)
 - '20년 이후 2년간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활성화 등으로 급속한 상승세를 보임
('20년 20% → '21년 22.1% → '22년 23.3%)
 - '23년 경기둔화, 기조효과 및 감세 등으로 조세부담률이 일시적으로 22.6%로 하락하나, 이후 서서히 상승하여 '26년에 22.9%까지 상승
- 팬데믹 이전에 비해 사실상 **GDP 대비 3%p 수준의 세입확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 **법인세 크기의 새로운 세목이 추가로 만들어진 것과 같은 효과!**

< 국세수입 및 조세부담률(전망)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국세수입	285.5	344.5	397.0	400.5	418.8	439.2	459.9	조원
조세부담률	20.0	22.1	23.3	22.6	22.7	22.8	22.9	%

II.4 감세기조의 적절성

Question: 이번 세제개편안의 감세 기조 적절한가?

- GDP 대비 23% 초반 조세부담률은 **독일과 유사하고 OECD 평균수준과 불과 1% 정도 차이**
 - 조세부담률의 단기 급등 원인은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명확히 밝혀질 필요
 - 그러나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하는 조세부담률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에, 속도를 통제하여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됨

OECD 주요국 조세부담률('20년,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OECD 평균*
19.2	18.5	30.6	23.1	25.9	24.3*

* OECD 평균 : 호주, 일본은 '19년 기준 조세부담률

- 감세기조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배경에서 일정 정도 필요한 것이었고 또한 예고된 것이었으나,
 - i) 세수급등을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보는 견해가 다수였고,
 - ii) 세수급등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면서,

이번 개편안의 감세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초래할 것이란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세입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현상에 가까움

II.4 감세기조의 적절성

Question: 이번 세제개편안의 감세 기조 적절한가?

- 또한 법인세 감세 조치는 단순히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시혜적 목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세부담을 합리화하여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 이를 통해 법인세 미래세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를 증대하고,
- 기업과 국민경제 성장에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III. 세제개편안 평가

III.0 세제개편안 의의와 평가 포인트

의의

- 새 정부 첫 번째 세제개편 작업
- 정부의 기본적 조세정책 방향, 나아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일차적인 가늠자 역할
- 조세정책에서의 차별화가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
- 또한 조세개혁의 추후 진행 방향 예측해보는 기회

핵심적인 평가 Point: **국정과제 이행, 정책적 차별화, 개혁적 세제개편**

- Point 1: 새 정부 출범 시 발표된 국정과제를 정책을 통해 적절히 구현
- Point 2: 그동안 큰 갈등과 논란을 빚었던 세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
- Point 3: 새 정부 첫 번째 조세정책 발표에 걸 맞는 개혁적인 세제개편이 이루어졌나?
향후 정책과제?

III.1 Point 1. 국정과제 충실한 반영

예상대로 조세 관련 국정과제 중심의 세제개편 이루어짐

-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정책들이 예상대로 대부분 세제개편안에 담겼음
- 대표적으로, 종부세 세율 및 기본공제 조정,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해외배당소득면제, 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국정과제 정책들이 개편안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었음

소극적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선 적극적 개정 일부 있으나, 대체로 개편의 폭은 제한적임

- 종부세와 관련하여 다주택자 종과세가 지니는 불합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러 차례 개정의사를 확실히 밝히지 못했으나, 세법개편안에 전격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적임
- 세율 개편도 이번 세법개정에서 다루어질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정부는 세율조정 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이번 개편안에 세율조정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세율체계에 대한 개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토지와 주택에 세부담 조정,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보유세와 취득세 간 균형 등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여전히 추후 과제로 남겨 짐

III.2 Point 2. 정책적 차별화

정책적 차별화가 이번 세법개편안의 내용상 두드러진 특징이자 성과

- 과거 입법과정이나 제도시행 후 논란과 갈등을 초래한 세제들을 폐기하거나 원상 복귀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적 차별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평가

A. 원상회복

-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삭제: 문정부 첫해부터 벌어진 대통령실과 기재부 간 갈등의 단초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C. 문제완화

- 주택 종부세 세율·세부담상한 조정
- 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B. 방향전환

- 대기업 관련 세액공제 축소를 환원한 데서 더 나아가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대기업 집중지원
-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 특례 실효성 제고, 납부유예 제도 도입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및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D. 새로운 선택

-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E. 연장선 상 조치

- (고용)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부분적으로 연장에 해당

III.3 Point 3. 개혁적 세제개편 측면의 평가

새 정부 첫번째 조세정책에서 충분히 개혁적인 세제개편을 달성하였는가?

- 이에 답하려면, 이번 세제개편을 어떻게 성격을 규정할 것인지(Characterization)가 중요

명칭 변화에 유의할 필요

- 2011년부터 매년 '세법개정안'이란 이름으로 발표되던 것에 올해에는 '세제개편안'이란 명칭을 의도적으로 부여
- 2010년까지의 증전 명칭이 11년 만에 다시 이용된 것임
-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증전의 세법개정 범주를 넘어, Tax Reform 차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가?

2022년 세제개편안

2022. 7. 21.

기획재정부

III.3 Point 3. 개혁적 세제개편 측면의 평가

Question: 이번 세제개편안 개혁적 성격? Tax Revision vs Tax Reform

“연례적인 단순한 법개정 아닌 굵직한 제도개편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세제개편안으로 불림”
이러한 정부 주장 사실? 세제개편의 개혁적 성격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면 무엇?

1. 세목 신설 또는 폐지?

증세(감세) 목적 강력한 형태의 수단

→ 새로 도입되거나 폐지된 세금은 없었음

2. 기간세제 변화?

증세 또는 감세 목적 큰 틀의 과세체계 개편, 큰 폭의 세율 및 과표 체계 변화

→ 대폭적인 과세체계 개편 또한 없었음

주장) 법인세 세율체계 2~3단계로 간소화!

→ 표면적으로는 Tax Reform처럼 보이나 내용상 최고세율 하향조정에 해당

III.3 Point 3. 개혁적 세제개편 측면의 평가

Question: 이번 세제개편안 개혁적 성격? Tax Revision vs Tax Reform

3. 과세원칙의 변화?

과세원칙과 관련한 제도 변화, 제도적 차원의 과세방식 전환

→ 원천지 과세 원칙을 새로이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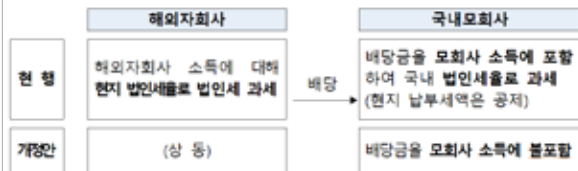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신 해외배당소득 면제 도입, 국제조세원칙의 전환

기존의 world-wide taxation → territorial taxation로 전환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법인법)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여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 유도

• (이중과세 조정 방식) 외국납부세액공제 → 익금불산입



해외유보재원의 국내 송금촉진 유도 등을 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중과세 조정 확대

• 현행 세액공제방식은 이중과세 조정 불완전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과세면제방식에 비해 국내송금시 추가 세금 부담 문제, 해외유보자원 국내송금 제약

• 우리 기업 해외직접투자 수익 지속 증가
해외유보금액도 '1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 '21년말 기준 약 100조원 이상, 국내 송금여력 상당

• OECD 38개국 중 해외배당소득 과세면제방식 도입 국가는 32개국(미국, 일본, 영국 등)

• 미국('18), 일본('09)도 해외자회사 배당소득면제 도입 이후 본국 송금 증가
미국 해외자회사 배당: ('17) 1,842억불 → ('18) 8,534억불

III.3 Point 3. 개혁적 세제개편 측면의 평가

Question: 이번 세제개편안 개혁적 성격? Tax Revision vs Tax Reform

4. 단편적인 세율 또는 과표 조정?

세율·과표 체계에서 큰 폭 개편 아닌 통상적인 범위 내의 세율 또는 과표 조정을 의미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더 중요하게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인하·공제확대·다주택증과폐지

개별적으로는 일반적인 세법개정 사항에 포함되는 수준

즉, 개별 세목의 세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조치에 해당

세법개정 수준에 더 가까움

*다만, 중부세의 경우, Tax Reform 수준에는 미달하나, 조정 대상의 범위가 넓은 편이어서 세제개편이란 표현이 어느 정도 적용될 여지 있음

III.3 Point 3. 개혁적 세제개편 측면의 평가

Question: 이번 세제개편안 개혁적 성격? Tax Revision vs Tax Reform

5. 조세정책 기조·방향 전환?

조세정책의 기조나 세제운영 기본방향 재설정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과세 강화 또는 완화(targeting issue)
단편적이지 아니라 정책전반에서 조세부담의 합리화를 진행

→ 두 가지의 명확한 기조 존재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기조 & 기업과세 합리화 기조

III.3 Point 3. 개혁적 세제개편 측면의 평가

Question: 이번 세제개편안 개혁적 성격? Tax Revision vs Tax Reform

종합적인 판단

이번 정부안에서 세제 큰 틀은 불변, 그러나 새로운 과세원칙이 도입되거나 전반적인 정책기조와 방향의 전환이 확인되고, 대기업과 자산보유자 중심으로 세부담이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연성 세제개편(Weak Tax Reform)에 가깝다**고 평가됨

- 이번 종부세 완화 정책의 경우, 전반적인(overall) 세제합리화, 세제정상화로 기조 전환이 확인
- 다만, 완화 기조가 부동산세 전반으로 확대되지 못했고, 완화정도도 지난 정부가 강화한 수준을 되돌리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 이는 MB정부 시기의 종부세 정상화와는 크게 대비됨

IV. 한계와 과제

IV. 한계와 과제

부동산 세제

세율체계 단순화

(누진세율체계 완화) 현재 6단계 누진체계에서 4단계 내외로 완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의 누진체계가 3단계인 것에 비해 과도한 인세 성격

(역차별 해소) 별장* 재산세 세율(4%)과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6%)의 비합리적 관계** 정상화

* 고을 재산세로 인해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인해 별장이 세금을 보다 적게 내는 역차별 발생 가능

세율 수준 추가 인하

최고세율 3%는 프랑스 부유세 최고세율 1.5%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추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

토지 대비 주택의 세부담이 높은 것은 보유세 효율성 원칙에 위배됨

IV. 한계와 과제

부동산 세제

종부세·재산세 통합 필요성

보유세 과세 이론에 부합하는 편익과세 원칙 확립을 위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것이 진정한 보유세제 정상화의 일차적 과제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보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20%p, 30%p) 적용을 폐지하여 매물잠김 문제나 임대주택 공급 장애를 완화할 필요

취득세 인하와 누진체계 개선

취득세 최고세율(3% 또는 12%) 인하

단순누진체계의 문제 보완, 누진단계를 줄이고 초과누진세로 전환

IV. 한계와 과제

상속증여세제

근본적인 개편 방식

상속세 폐지, 대체과세 도입(일반적 대안: 양도소득과세 전환)

부분적인 개편 방식

현 상속세 틀 유지하되, 세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인하

가업승계공제 대기업 적용: 추가적인 고용증가 조건 요구 가능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기타

1가구 1주택(주거용 주택)에 대한 상속세 공제 논의 필요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필요

자산가치 상승에도 20년 된 과세표준 구간 유지하고 있어 상향조정 필요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회 의 록

● 이예재

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 행사 진행을 맡은 국회방송 아나운서 이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오늘 토론회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회식에 이어 발제 및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토론회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 방송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님의 개회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일동 박수)

● 조의섭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조희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 축하의 말씀을 준비해 주신 박대출 기획재정부위원장님, 토론자

로 참석해 주신 기획재정부위원회 신동훈 간사님, 류성걸 간사님, 장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를 맡아 주신 전주성 이화여대 명예교수님과 발전을 해주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님,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분석실장님, 토론을 열어주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님, 그리고 오늘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금리 인상, 성장 둔화 등으로 대미의 경쟁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세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2022년 세법개정안에는 다수의 쟁점 사업이 내포되어 있어서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한층 더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책의 효과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과세형평성 및 재정건전성 등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 및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 모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이예재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격려 말씀

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일동 박수)

● 김진표

예, 2022년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 또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조의섭 예산정책처장님과 또 예산정책 쪽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대내외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와 금리, 환율이 모두 급격히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위기 요인이 겹쳐서 복합 위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또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 수요는 더욱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면서 개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정책이 해야 할 그런 임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세는 정부의 재원 조달 수단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득재분배 기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세 정책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사회·경제적인 모든 목적을 함께 고려하는 그런 균형 잡힌 조세정책의 마련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얼마 전 영국의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사태에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재정·금융정책 등 거시정책 기초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경제정책들 간에 분야별로 잘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이제 오늘부터 착수하게 됐습니다. 각 정책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서 그야말로 효과적인 방안인지 그리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세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국회와 정부, 학계가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조세정책 운용 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뜻깊은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이예재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위원장을 모셔서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일동 박수)

● 박대출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기획재정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입니다. 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진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류성걸 간사님과 신동근 간사님, 그리고 장혜영 위원님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를 맡아주시는 우리 전주성 교수님,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님 그리고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님 그리고 유호림 교수님, 김우철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십여 년간의 양적 완화를 멈추면서 시작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패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글로벌 경기 하강 전망 속에서 당장 여러 지표들이 우리 민생 경제에 불길한 경보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IMF 이래 처음으로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오랜 누적적자 규모는 356억 달러에 달하고, 14년간의 연간 적자도 우려됩니다. 자금시장 경색 역시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고환율, 고유가로 인해서 에너지 수입 부담이 폭등하는 반면에 전년 대비 17% 감소한 반도체 수출을 비롯해서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 효자 품목들이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일제히 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 국회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면서 그동안 방만해진 국가재정 건

전화에 고삐를 조여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는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우리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자 마련됐습니다. 부디 여야 의원님들과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합리... 양기대 의원님 제가 참석한 거 몰라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야 의원님들과 전문가 여러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세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기탄 없이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오늘 논의된 방안을 포함해서 미래 세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조세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이예재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동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일동 박수)

● **이예재**

류성걸 의원님 오셨습니다.

(일동 박수)

장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일동 박수)

양기대 의원님 오셨습니다.

(일동 박수)

네, 그밖에도 많은 귀빈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님, 기획재정위원장님, 국회예산정책처장님,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 기념 촬영 중)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께서는 무대에 마련된 단상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토론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토

론회 자료집에 첨부된 질문 용지에 작성해서 안내 데스크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는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전주성**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전주성 교수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토론회는 예년과 달리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 교체를 통해 새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에 포함된 세제 개편안입니다. 새 정부 향후 5년의 재정 운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의 정책 환경이 예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 고물가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인 어려운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화 작은 정부 시대에서 벗어나 각자도생 큰 정부의 시대로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나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지출, 환경지출 등, 구조적 정부지출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마 예년과는 다른 아주 치열하고

흥미로운 토론이 예상됩니다. 우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부 개편안을 주도하신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일동 박수)

국회 차원에서 개편안 분석을 해주실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님이십니다.

(일동 박수)

토론을 맡아주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일동 박수)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일동 박수)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일동 박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일동 박수)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일동 박수)

오늘 토론회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주요 특징과 내용, 그리고 예산정책처의 세법개정안 분석, 두 가지 주제발표를 먼저 듣고 토론자 다섯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는 각 15분, 토론자는 10분씩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아쉽죠. 자료집에 여러분들의 발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주어진 시간은 핵심 쟁점에 할애해 주시고 반드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2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고광효 세제실장님의 발제를 들겠습니다.

● 고광효

안녕하십니까, 세제실장 고광효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세제개편안 주요 쟁점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 박대출 기재위원장님, 신동근·류성걸 간사님 그리고 조의섭 예산정책처장님 이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제에 앞서서 정부가 낸 것은 22년 세제개편안인데 오늘 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가 돼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부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정책도 경제정책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해의 조세정책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올해는 5%를 초과하는 물가에 성장률 둔화가 내년까지 당분간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채무는 코로나 이후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정책을 통해 우선적으로 저성장을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며 재정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 정부 조세정책의 기본 목표를 ‘역동적 혁신 성장을 통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점 추진 과제로서 첫 번째,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둘째, 민생안정을 위해 세부담의 적정화·정상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추진 기반으로서 조세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도 아울러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던 4~5가지 개편 이슈들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왜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체계를 개선하려고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절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와 세수를 간단히 보시면 역대 정부에서 과표구간을 2개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세율을 인하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율 구간이 박근혜 정부 때 3개가 되더니, 문재인 정부 때 25% 구간이 생기면서 4단계 세율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연도별 법인 세수를 보시면 2011년부터 40조 때 중반을 유지하다가 2016년, 17년에 드디어 50조 때 법인의 실적이 증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5% 구간을 만든 18년부터는 갑자기 70조 대로 늘어나다가 최근 3년을 보시면 다시 50조 대로 줄었다가 100조 때까지 급증을 하였습니다.

OECD 평균과 비교를 해 보면 2016년까지는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18년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한 후 우리는 점점 OECD 평균보다 멀어져서 세율이 높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8년 법인세 인상 이후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현상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이고 해외 투자는 급증합니다.

둘째, 외국인 국내 투자의 반으로, 국내 투자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도 높고, 과표구간 수도 많다 보니 국가경쟁력도 법인세율 인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세율 체계 개편은 이렇게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표 3천억 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100대 기업에게 핀셋 증세했던 18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낮은 경쟁력 있는 법인 세제로 돌아가야 중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이 확충되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인세제 주된 골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과표구간을 4개에서 2개로 줄여서 25% 최고 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폐지해서 22% 구간과 통합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는 특별세율 구간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률은 대기업보다 높습니다. 이번 법인세 개편에 대해 그동안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힘

든 시기에 중산·서민층을 더 어렵게 하고 앞으로 복지 지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꼭 해야 하는 거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산·서민층의 복지 지출도 당연히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늘어나는 법인 세수를 단기적인 지출에 다 사용하기보다 기업이 그 돈을 투자하게 만들어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오게 해야 장기적인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OECD 국가들은 모두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를 봐주시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19%에서 21%로 인상을 했고요. 아이슬랜드는 15%에서 20%, 또 터키 같은 경우는 20에서 23%, 라트비아는 15%에서 20%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이런 나라들의 세율을 인상한 것은 그동안 법인세율이 지나치게 낮아서 올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국제적으로 법인 세율이 21에서 22%에 수렴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인하 국가 22개 국가는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몇 년에 걸쳐서 법인세율을 낮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국내의 수많은 실증 연구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간 주요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인하를 해 왔고, 그동안 30년 동안 과표구간을 2개 구간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결국 낮고 단순한 세제가 기업 성장과 투자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란 결론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세율을 낮추고 법인세제를 단순하게 운영해서 투자가 늘고 해서 지금처럼 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선진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체계입니다. 이들 국가 중 지금 우리 법인세율 체계처럼 누진세율적인 국가들이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들 한 단계, 많아야 두 단계 세율 체계입니다.

법인세 개편이 대기업 부자 감세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 규모별로 균형 있게 법인세를 경감했고, 또한 법인세 인하는 사회 전반의 주주, 소비자, 종업원, 협력 업체에 돌아가고, 요즘은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가 늘어서 중산층 주주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인상과 누진 구조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달성하려는 것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소득 재분배는 소득세를 통해서 달성하면 됩니다. 저는 한 국가의 조세 제

도는 역사적인 경제 상황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꿀 수는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율도 마찬가지입니다. 18년 당시에는 세수가 부족해서 법인세율을 인상했다면, 이제 법인세수가 100조가 넘게 충분히 들어오니까 그때 핀셋 증세한 세금을 요즘 경제가 어려울 때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당 기업들에게 돌려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제 개편 문제는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우리가 이런 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자 감세하려고 법안을 낸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서 감세이면 지난 30년 동안 역대 정부에서 계속 부자 감세한 것이 됩니다. 작년에 도입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도 우리나라 초대기업 몇 개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이번 세제개편도, 법인 세제개편도 그런 취지에서 저희의 진정한 진위를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엄격한 가업승계공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자 합니다. 가업승계는 투자, 고용 증대와 기업 성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기 중앙회에서 작년

에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가업승계를 하면 매출액, 고용, 신규 투자가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높은 상속세율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평생 일궈온 기업이 자식에게 승계가 안 된다면 그때부터는 투자해서 기업을 키울 요인이 더 이상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서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을 허용하고, 매출액 기준도 모든 중견기업을 포괄하는 수준인 1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하면서 생전 승계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서 우리 세법은 이미 장치를 두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2014년부터 영구 면제가 아니라 이월과세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나중에 주식을 팔 때 피상속인 상속 시점에서 취득가액이 스텝업 되는 것이 아니라 선친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나중에 양도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기업 규모 제한 없이 약 1,200억 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일본도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단카이 세대에 게 가업승계 집중기간을 정해서 폭넓게 지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할 때 5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해서 국가가 중소·중견기업을 거의 국유화하다시피 해서 부의 불균등을 수정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에게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계속 투자·성장하게 만들 것인지 하는 것은 사회적인 선택 사항입니다.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이 단절되면 결국 근로자의 실업 등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유니콘 기업 만들려고 창업 기업에게 온갖 세제 지원하느니 기존에 있는 기업이 상속세로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수 측면에서도 상속세를 더 걷으면 당장 단기적으로 세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기업이 계속 존속해서 내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는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증권거래세율을 0.3%p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금투세 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당초 금투세를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30% 이상 폭락한 상태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경우 시장 회복이 더욱더 지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주식의 세제상 이점이 사라지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고, 투

자가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88년의 대만의 선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반 주식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도 보완 등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시행할 경우 어느 정도는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완화하려고 합니다.

이 점을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100억으로 올리는 것은 일반 중산·서민층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고 연말에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대량 주식 매도 현상이 완화돼서 결국 일반 투자자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주식 시장의 신규 자금 유입으로 기업 투자 증가 등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투자·고용 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세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 안정 분야입니다. 소득세 하위 두 개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표구간별 세 부담이 적게는 1%에서 27%까지 감소합니다. 이것은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서 그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실질 세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EITC 확대와 주요 생계비 등 부담 완화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입니다. 먼저 종부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개요와 연혁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전국에 갖고 있는, 특정 개인이 갖고 있는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계해서 기본 공제, 다주택자인 경우는 6억, 1주택자인 경우는 11억을 공제를 하고 거기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올해는 지금 60%로 낮아졌습니다마는 60%를 곱하고 세율을 곱합니다. 종부세는 2005년에 도입이 됐고, 처음에는 인별합산 누진과세로 도입이 됐는데 재산세, 물건별 과세인 재산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고 18년까지는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단일 누진세율체제로 약 15년간 운용을 해 왔다가 19년부터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이중 누진세율체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1년부터는 중과세율을 대폭 인상을 했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주택분 종부세가 강화된 19년 이후와 이전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동안 종부세는 약 10배, 과세인원은 33만에서 올해는 12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22년 올해 고지 전망 4조 원은 지난번 세법개정으로 일부 완화된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세 부담을 완화하지 않았다면 약 9조 원에 육박했을 것입니다.

단기간에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고 과세 대상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원래 종부세 도입 전에는 시·군에 있는 물건별로 재산세를 조율로 과세하는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형평 차원에서 재산세에 부가적으로 전국에 있는 특정인의 주택을 다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기 위해 종부세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자체가 다주택자를 상정하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에 대해서 또 하나의 중과세율 체계를 만드는 것은 누진세율을 징벌적으로 두 번 적용을 하는 것이니까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에 반합니다. 종부세의 단일누진세율체계는 참여 정부를 포함해서 2019년 전까지 15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부자가 오히려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제도가 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동일 주택 가격에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응능부담 원칙과 조세공평 원칙에 배치됩니다.

● **전주성**

고광호 실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 **고광호**

빠르게 하겠습니다.

● **전주성**

2~3분 정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광호**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 체계를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서울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고 전 정부에서 처음으로 서울을 강화했던 2019년 서울 체계로 돌아가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골자입니다.

이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종부세가 법인세보다 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과세 체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오르고 단기적으로 다른 정책 수단이 없는 경우 종부세를 인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리가 인상돼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이 종부세 정상화 논의를 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담 귀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금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효과는 연평균 약

13.1조 원이고, 5년간 통산해서 약 60조 원쯤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세금이 경감되는지 세부담 귀착을 보시면, 개인은 3.4조 원, 법인은 6.5조 원, 기타 분야에 3.3조 원 귀착된다고 분석됩니다. 세부담 귀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13조 중에 40%가 고소득층·대기업, 35%는 중산·서민층, 중소·중견기업에게 돌아갑니다. 내년만 따지면 올해 대비 세부담이 6.4조 원 줄어드는데 그중에서 민생 분야는 5.2조 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는 1.3조 원이고요. 대기업에 돌아가는 것은 약 3,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6.4조 원을 민생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숫자가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쟁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세제개편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법인세제 개편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 세제실에서 법인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집대성한 25편짜리 조그만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법인세의 개편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예정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지적을 심도 있게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드리고 단순하고 효율적이면서 공

정한 세제를 만드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주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세법 개정안 분석을 이정은 추계세제분석실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 이정은

네, 방금 소개받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입니다. 먼저 사회를 맡아주신 전주성 교수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실 신동근 의원님, 그다음에 류성걸 의원님, 장혜영 의원님, 그리고 유호림 교수님과 김우철 교수님, 그리고 고광효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2023년도 국세수입 전망’ 그리고 ‘2022년 세법개정안 총괄 분석’과 ‘주요내용 분석’ 순입니다. 먼저 2023년도 국세수입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여건은 다 아시다시피 대내외 불확실성의 증가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세입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실질 2.1%, 명목 4.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전망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399.4조 원으로서 올해 대비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20.5%, 14.8%였던 작년과 올해 국세수입 증가율을 비해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된 것으로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자산시장 부진이 세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정책처는 향후 5년간 국세수입 증가율이 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실적 부진과 자산시장 부진 등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또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의 영향도 일정 부분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주안점을 둔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법인세율 인하 및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개정 사항을 비중 있게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정책처 기준 11.2조 원, 정부 기준 13.1조 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는, 비교적 세수감소 규모가 큰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 중의 하나는 과거에 복잡했던 세제를 일부 단순화해서 조세효율성을 높이려 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로 제출되는 세법개정안인 만큼 기존의 조세 정책과는 기초와 방향이 다른 금융투자소

득세 도입 유예라든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재정위원회에 11월 2일 기준으로 계류되어있는 의원발의안은 모두 768건입니다. 이 중에는 정부 제출안과 유사하거나 또 취지가 같은 내용도 상당수 있고 또 정부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다소 포함돼 있는 등 다양한 의원발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이번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정부와 다양한 의원발의안이 조화롭게 좀 정리돼서 단일한 합동 의사결정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정부개정안의 세수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5년간 순액법 기준으로 17.2조 원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누적법 기준으로는 73.6조 원입니다. 정부는, 아까 우리 세제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3.1조 원의 순액법 기준 세수감소와 또 누적법 기준으로는 60.3조 원을 전망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정책처와는 순액법 기준으로 4.1조 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목별로는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등 법인세의 세수감소가 8.5조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담 귀착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개인 4.7조 원, 법인 8.3조 원의 세부담이 경감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개인 중에는 서민·중산층 2.4조 원, 고소득층 2.3조 원, 또 법인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세부담 감소규모에 대한 전망은 정부와 비교해서 고소득층은 1.1조 원, 대기업은 1.3조 원 더 큰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전제로 한 조세지출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조세지출 규모는 69.3조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년 대비 9.0% 증가한 수준으로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조세지출 정비항목은 총 52개로, 신설 5개, 확대 33개, 폐지 11개, 축소 3개입니다. 이러한 조세지출 신설·확대에 따라서 향후 5년간 9.4조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또 폐지 및 축소로 3천억이 세수가 증감할 걸로 보아서 순감 규모는 9.1조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지출 정비에 따라 내년도 국세 감면율은 13.9%를 나타내 국가재정법상 법정한도 14.3%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조세지출 증가율이 국세수입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 분야의 조세지출이 증가하고 또 이번에 세수감소형 세제개편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조세지출 규모가 빠른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세지출 규모 증가에 따른 비과세·감면 관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주요내용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는 앞서 우리 세제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업의 한계비용을 감소시켜 고용 유인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세법개정안의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또한 조세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다만, 투자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그리고 최근 경제의, 대내외적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정책 효과가 과연 정부가 의도한 대로 온전히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가 법인세의 세수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조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방식의 변경은 이중과세 조정 확대를 통해 비효율을 개선하고 또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부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이 이번 세법개정으로 하락하는 결과가 있고 또한 해외 자회사의 높은 익금불산입률이 국내 자회사와의 관계에서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은 보완의 필요성이 있

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전략기술 등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향상도 국제적 기술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전략기술 확보에 있어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적용을 하고 또 경제적 불확실성이 적용됨에 따라서 이런 실질적인 투자 요인효과가 있을지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 조세특례가 2021년 7월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 없이 조세특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역시 2008년 이후 고정되었던 과세표준을 일부 상향조정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의 감소를 일부 보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1인당 세수감소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서민·중산층 지원 효과는 그렇게 별로 크지 않은 반면에 이러한 재정의 투입에 비해 세수감소 규모가 향후 5년간 13.3조 원에 달하는 등 세입 기반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대주주 요건 완화도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또 금융 시장의 변동성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세 완화를 통해 금융 시장을 활성화

하고 또 신규 자금의 유도를 기대한다는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번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 및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방향과 다른 방향의 정책 기조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소지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고액금융자산 보유자들에 대한 세부담 완화로 과세 형평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업승계제도 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완화에 대해서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통해서 고용 안정 및 투자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오른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가업상속 제도가 11년 이전에는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다가 11년부터 중견기업이 포함되었다는 점, 그리고 현재도 중견기업의 92.8%가 현행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런 적용 대상 확대가 굳이 필요하고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다른 일반상속자산에 비해서 가업상속자산에 대해서 특례를 두는 것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또 개정안의 사후관리 완화로 인해서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도 우려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및 세율 인하 등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세제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급격히 상승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오른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가 다주택자에 집중되는 면에서는 이렇게 다주택자의 세부담 혜택이 집중되는 주택법 개정안이 적절한 것인지 또 다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경이 시장 또는 정책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긴축이나 확장정책 어느 쪽도 그렇게 명확한 스탠스를 갖기 어려운 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의 강화와 또 감세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라는 이런 상충적인 정책 요구를 동시에 부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도하는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 또 이를 통한 재정기반확충의 목표를 이런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려고 하면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세 정책에는 여러 정책 경로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조세 정책만으로는 이런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를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관련되는 연계 정책이 적절한 정책 조합으

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약화에 대해서도 중장기 세입기반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의도한 만큼 이번 감세 정책의 선순환 효과가 발휘되지 못할 경우 플랜 B 차원이 있더라도 이러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그런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전주성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이 세수 비용 추정치가 정부가 13조 원 연 기준으로, 국회예정치가 17조 원, 한 4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내년도 GDP를 2,200조 원 정도로 볼 때 이게 GDP의 0.6%, 0.8% 정도입니다. 평균하면 GDP의 0.7% 수준이거든요. 참고로 실패한 영국 트러스 행정부의 감세안이 GDP에 1.7% 수준입니다. 이것보다는 물론 작지만 여전히 이번 정부 감세안이 작지 않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세로 경제 활성화가 돼서 세수가 더욱 건진다면 다행이겠지만요.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신동근 간사님, 10분입니다.

● 신동근

예, 더불어민주당의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

는 신동근 의원입니다.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총평 기본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각 법안에 대한 각론을 간략하게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우리 국민들이 처한 경제 사회적인 양극화라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영업 제한 등으로 여전히 서민 자영업자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고요. 또 유동성 증가와 공급망 문제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또 러시아 침공으로 야기된 에너지 위기 등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오히려 필요한데 감세와 거꾸로 지출 축소로 과연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그리고 재정건전성이라는 이 3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지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당에서 바라보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바로 기업 오너 일가, 거액의 금융 자산가, 다주택자 등에 대한 맞춤형 부자 감세다, 이렇게 이게 뼈대 골자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업 오너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기업상속공제, 증여세 특례 확대고요. 금융 자산가들에게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채이자 저율 분리과세 또 부동산 자산가에게는 종부세 다주택자 증과 폐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 당이 봤을 때는 국민 전체를 보지 못한 채 극소수의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한 감세 정책이 결국 국가 재정난을 부추기거나 또 서민·중산층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아시다시피 MB정부의 대기업·부자 감세 정책은 몇 년 뒤에 결국은 중산층·서민의 세금 감면 축소 등 불공평을 심화시켰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평하자면 이번 세법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 상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론으로 들어가서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정부의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현행을 유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과 투자·고용 간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낙수 효과를 빙자하여 백여 개에 불과한 극소수 대기업을 살찌우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명목 최고세율만 높을 뿐 추가 누진과세 구조와 세액 공제로 인해 실효세율이 17.5%로 굉장히 낮습니다. 더불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폐지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현행 유지를 주장합니다. MB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를 기대했던 낙수 효과는 없었고 대기업의 내부 유보만 증가되었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했고 이는 대기업의 배당, 임금증가, 상생협력출연금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투자와 고용에 방점을 두고 수정한 것으로 기업들이 사업 소득을

내부 유보하기보다는 투자확대, 고용증가 내지는 상생협력강화에 지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다만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세법 보완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분야는 고용확대와 연구개발지원에 초점을 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안인 시행유예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정대로 23년 1월 1일 실시할 것을 주장합니다. 철저하게 과세되는 근로소득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매매 차익은 비과세되어서 형평에 반합니다.

또한 유사한 금융투자상품 간에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혼재되어서 조세중립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상충됩니다. 이는 과거의 금융실명제 전산 미비로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던 까닭에 손익과는 무관하게 매도대금의 일정률을 떼는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에 대주주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되었으나 펀드 파생상품 등 새로운 투자상품 등장에도 불구하고 증세 편의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이유로 금융투자상품 매매 차익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채 복잡한 금융투자 과세 체계가 후진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에 여야 합의로 입법

화되었고, 2년이란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앞둔 상태에서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유예하자는 정부의 논거는 주식 시장의 침체를 들고 있으나 첫 번째, 금융투자 회사들은 법인세를 낼 뿐 금투세는 해당이 없고 거액 자산가들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거액 자산가들 또한 시장 침체로 인해 매매 차익 실현이 어렵다면 금융투자소득세제 아래에서는 납부 할 세금도 없습니다. 시장 침체가 정말로 우려된다면 손익과는 무관하게 징수되는 증권거래소를 현재 매도 금액의 0.2~0.3%에서 정부개정안인 0.2%가 아니라 원래 당초 예정됐던 대국민 약속인 0.15%로 인화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 개미 투자자에게도 이득이 됩니다. 또한 주요 5개 증권사 실현 소득금액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연간 수익 5천만 원 초과 고객 비중은 시장 상황이 비교적 좋았던 지난 3년간조차 0.9%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상속세 및 증여세, 기업상속공제 증여 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인 기업상속공제 증여 확대에 반대합니다. 현행 유지 해야 됩니다. 정부안은 구체적으로 대상 기업이 연 매출 종전 4천억에서 1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상속공제한도 역시 500억에서 두 배인 1천억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을 완화하고, 고용 및

자산 유지도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긴 안은 완화 폭이 너무 크고 증가 속도도 빨라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의 대물림이 확대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업상속공제제도는 사업 특성상 기업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 고용 유지를 위해 특별히 예외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지 기업승계를 지원해 주는 보편적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증권기업 협회에서 2020년 조사를 보더라도 80.8%는 기업승계하지 않겠다. 기업승계하지 않는 이유가 상속세가 많아서라고 발표한 사람들이 1%에 불과했습니다. 1%도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혜자도 원치 않는 혜택을 대체 누구를 위해서, 6.3%를 위해서 이런 맞춤형 세제안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기본 공제액이, (서민들이 내는) 97년에 100만 원이었으나 지금 현재 14년째 150만 원으로 25년 동안 5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상속공제는 97년 최초 1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1천억 원으로 25년간 1,000배가 증가했습니다. 서민의 근로소득세와 기업상속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견 형평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기업상속공제제도 역시 2020년,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시점에서 추가 완화는 시기상조이다. 정부조차도 상속제 체계를 연구 용역을 거쳐서 내년에 손보겠다고 한 만큼 저는 상증세법 개정은 오

래 논의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종합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인 다주택자 중과 체계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일부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안은 구체적으로 다주택제에 대한 중과세 폐지를 하고 가액기준으로 단일화할 것, 그다음에 세율도 6%에서 2.7%로 대폭 완화하고, 세 부담 상한액도 최대 300에서 150%로 반 줄입니다.

기본공제금액도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하자는 것인데 사실 정부는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대폭 40%나 하향시켜서 세 부담은 이미 반 이상 완화됐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여야 합의로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이미 부여했구요. 장기적으로 다주택자들을 보유해야 되는 임대 사업자들의 경우에도 이미 세제 혜택이 부여됐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세제 감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종부세 세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인데 2조 원이나 내년에 이대로 가면 급격히 감소해서 지방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 상황 역시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이 내년에는 하락되는 걸로 예상되는 만큼 공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의 보완 위주로 저는 법안 심사에 임할 계획입니다. 예,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국민 여론은 이와 관련해서 물가 상승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다음에 과세당국은 각종 공제 제도에 대한 우리 세법적인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세법 체계상으로 과표 구간 하단을 상향할 경우에 오히려 고소득자가 혜택을 더 많이 보는 문제가 생깁니다.

과표 구간 조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법안으로 제출되어있는 만큼 긍정적인 방향에서 진지하게 논의에 임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세는 쉽지만 증세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 번 감세한 것은 조세 정의로 인해서 증세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 복지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예상되고, 사회복지 수요는 중장기로 예상되는데 효과는 불분명한 감세 정책을 오히려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고 세원을 침식해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 전주성

수고하셨습니다. 감세가 주로 부유층·대기업으로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한 낙수 효과가 크지 않고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재정적자만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 류성길 간사님 순서입니다.

● 류성걸

예,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입니다. 오늘 제목이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저도 첫째 현수막에 걸렸길래 ‘이거 세제개편안인데.’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세제에 관련된 사항이 이제까지는 누더기식 세법, 모자이크식 개정안에서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세제 개편안… 뭐 조금 저한테는 많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일부 소득구간이나 과표구간이라든지 세율을 좀 조정을 하는 세제개편안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지금 신동근 간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반대가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 우리 기재위에서 아주 치열한 논의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큰 틀에서 보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는 먼저 이 부분이 어떻게 현재 세법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법을 강행 처리해서 정상화시키자 하는 것을 가지고 이미 잘못됐는 것을 또다시 부자 감세다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 했던 게 확실하게 부자 증세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잘못됐던 이 세법개정안을 되돌리는 그런 큰 틀에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람직한 조세 제도는 어떤 거여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

세 부담이 각 개인의 응능 원칙에 따라서 부담을 형평성, 공평성 뭐 정확하게는 이제 equity라는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마는 공평하게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조세 부담이 공평하게 분배돼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경제 행위에 대해서 왜곡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조세가 우리들 일반적인 세제가 없을, 세금이 없었을 때에 할 수 있었던 그대로를 될 수 있으면 유지하는 게, 이것을 경제적 효율성이라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기준에 지난 5년간 세법이 개정되면서 효율적 재원 배분이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아울러서 행정적으로 봐서 너무나 복잡하고 이렇게 돼 있는, 행정적 단순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신축성 관련해서는 경제적 여건 변화가 있으면 신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종부세의 경우를 보면 신축적으로 사실상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특히 정치적 책임성, 지난 5년간에 이런 세법을 잘못했으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스스로 고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부족한 정치적 책임성을 아주… 정치적 책임성을 지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수 세법은 명확하게 법률과 또 관련 규정에다가 확실하게 규정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면서 22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글로벌 경기둔화 등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 활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활력,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제개편안이 마련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종래에는 단순히 세법개정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누더기 세제를 고쳐야 되는 첫 단계가 2022년 세제개편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기업과 기업과세체계 개편해야 됩니다.

법인세가 바로 그겁니다. 좀 이따 구체적으로 시간이 되면 이야기드리겠습니다만, 도대체 법인세 과세 구간이 네 개가 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까 세제실장님이 아까 발표할 때 자료에 몇 개가 있었는데, 사실은 법인세는 최종 귀착이 자연인입니다. 그런데 마치 법인이 부자인 것처럼 부자는, 법인이 부자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물론 법인세가 실정법상으로는 법인세라고 하지만 최종적인 조세의 부담은 자연인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인세를 확실히 고쳐야 된다. 대부분의 나라는 지금 현재 practice rate라 해서 한 개, 구간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또 한두 개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이것을 22%, 25%, 또 뭐 더 올리게 되면 마치 부자에 대한 그런 세금 부과인 것으로 진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부동산 세제는 이제는 완전히 정상화를 해야 된다. 이거야말로 이중적, 징벌적, 그런 조세 체계입니다. 그리고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납세자의 세금을 경감시키도록, 특히 소득세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신동근 간사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세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세제, 그러면서도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정성이 달성될 수 있는 세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겠습니다. 소득세의 경우에 하위 2개 과표 조정해서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률 크게 그렇게 설계가 됐었습니다. 절대 금액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금액이 더 적게 되어있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내면은 감세가 많이 되는 거고, 세금을 적게 내는 부분에서는 절대 숫자가 적어질 수가 있는데 그 비율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본다면 아까 자료를 보니까 최대 27%에서 최소 1%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서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률이 아주 크게 설계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세, 법인세는 진짜 우리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또 관련되는 연구를 하는 분들이 함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미 empirical study가 전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는 세금을 최고세율을 낮추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높이게 되면 결국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

니다. 제가 학문적 이야기는 크게 안 하겠습니까. 다만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있어서도 전체 사용자 비용이 줄어들면 당연히 투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다른 게 다 똑같다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저는 한 practice 아니면 두 개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10% 중소·중견기업의 특례를 인정하는 거니까 사실상 뭐 2개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요. 20%, 지금 현재 OECD 평균 기준이 최고세율이 21.2%인데 사실 한 20% 정도 더 낮췄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낮추게 되면 세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22%로 낮추는 거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 이 방송을 또 이 토론회를 지켜보는 분들이 어떻게 이 종합부동산 세제가 만들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행 처리를 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제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정부 5년 동안 부동산은 말하여 천장이 어디 일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세제 개편도 잘못됐지만 부동산 정책도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 세제는 당초에 잘못돼 올라갔던 것을 이제는 정상화시킨다 이런 차원에

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이 부분은 지난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그 지난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그 지난 정권 때도 계속해서 가업상속공제 부분은 계속 확대를 해 왔습니다.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정권에 관계없이, 그다음에 정치이념에 관계없이 인정했던 그런 사향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세제 개편 관련해서 민간의 소비 투자 여력이 확대되어서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물론 투자라는 거는 소득세나 또는 기업 관련해서 세금에 관련되는 사항 하나 만에 의해서 결정되진 않습니다. 앞으로의 예상 수익률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지만 다른 게 다 똑같다면 법인세율을 낮추면 투자는 분명히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세제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하고 증권 거래세 관련되는 부분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세제실장께서 준비 사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준비 사항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10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100억으로 됐을 때 사실상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폐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으로 됐을 때 결국은 부자 감

세가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가 그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안 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행정부가 준비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주성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감세의 소비 투자 촉진 효과가 클 수가 있고 또 왜곡된, 이번 개편안이 왜곡된 조세 제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의원님입니다. 10분입니다.

● 장혜영

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는데 반팔 티 입고 정신력으로 버티겠다.’ 이런 현실성 없는 세제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위기의 시대에 국가가 응당해야 하는 역할 그리고 책무에 대한 자각이 매우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 토론자 그리고 발제자께서 말

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굉장히 복잡적이고 또 총체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 그리고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취약 차주에 대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재정 확충의 필요성은 여야가 공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후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전환은 시장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고, 정부가 재정과 제도로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산업전환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화석연료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그리고 교육을 제공할 책무는 공공에게 있습니다. 이런 복합위기 국면에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미래를 대비할 정부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런 흐름과 시대적인 요구에 정확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예정처의 누적법 기준으로 무려 74조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를 예고했습니다. 또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하면서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낮은 세금, 낮은 국가채무로 높은 재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재정 트릴레마에 입각해서 볼 때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해야 되는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거

나 아주 불충분하게 이행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위기 시대에 이런 대책 없는 감세는 대한민국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을 극심하게 제한하는 자해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이 얘기됐지만 영국은 최근에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가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져서 총리가 바뀌고 다시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게 감세 문제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감세로 취약해진 재정기반 위에서 이번 레고랜드 사태나, 한전채 남발로 인한 채권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꼭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정부의 지급보증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규모 감세의 혜택은 고스란히 대기업, 자산가, 고소득자에게 돌아갑니다. 기재부의 세부담 귀착 자료에서조차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세수 효과가 5.3조, 서민·중산층/중소·중견기업의 세수효과로는 4.6조, 명확히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게다가 여기에 기재부는 기타로 분류했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로 인한 1.6조, 주택분 종부세 감면분 2조도 사실상 고소득층의 세수효과로 잡아야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투자자의 상위 0.1%밖에 되지 않고, 종부세는

잘 아시겠지만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납세자의 상위 10%가 세액의 78%를 부담하는 세금으로 감면 시의 혜택이 이들에게 집중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포함하면 고소득층/대기업 세수 효과는 8.9조가 돼서 서민·중산층/중소·중견기업 세수효과의 거의 두 배로 늘어납니다.

몇 가지만 상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세입니다.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 구간을 22%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고세율 25% 적용받은 과표 3천 억 초과 법인 단 103개에 불과합니다. 이걸 전체 법인 91만 개 중에서 0.01% 수준입니다. 이런 법인세 감면은 기재부 순액법으로 봐도 중소기업에는 2.3조, 대기업에 4.1조가 귀착이 되고요. 나라살림연구소 추정으로 따르면 향후 5년간 28조, 예정처 분석으로는 32조의 세수 감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이 큰 이득을 낸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걸 대기업의 대주주, 외국인 투자자, 성과급 가져갈 수 있는 임원, 상위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개연성이 매우 큼니다. 법인이익상승에 따른 배당이익 종합소득 5억 원 초과하는 초고소득자들의 몫이 될 공산이 큼니다. 정부가 이런 법인세 감면이 투자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에 유리한 근거들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권위 있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최근 유럽

경제리뷰에서 441개 사례를 검증한 결과인데요. 법인세 인하의 경제성장 효과는 평균적으로 0이었습니다.

법인세 감면이 초래하는 세수감소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에도 아랑곳없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뭐 글로벌 스탠더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옛말입니다. 바닥으로의 경주를 막기 위해서 BEPS 협의를 통해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했고 미국에서는 IRA로 법인세 대규모를 증세했고요. EU에서도 황재세 195조를 결의한 상황입니다.

영국, 네덜란드도 법인세율 인상 논의하고 있고요. OECD 국가들이 그동안 법인세율을 인하했던 맥락은 투자 유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득세 비중이 높은 이런 세입 상황에서 세수 체계 리모델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처럼 소득세 비중이 매우 낮은 OECD 최하위 수준인 나라에서 소득세랑 법인세를 동시에 감세하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종부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택분 종부세 82%를 납부하는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1주택자 수준으로 대폭 감면하는 것은 사실상 다주택자 중

과제도 폐지, 그렇죠? 그리고 공제금액 3억원 상향의 세액감소효과는 말 그대로 엄청난 것으로 보입니다. 3주택자 이상한테는 사실상 50% 이상의 감면이고, 이것은 올해 적용된 공정가액시장비율 하향 조정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기재부 추산으로도 세법개정안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내년 중 부세액 올해보다 1.7조 톨 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상위 10%가 자산의 59% 보유하고 있고요. 하위 50%가 겨우 6% 나눠 갖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비금융 자산 비중 64%, OECD 기준으로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 조목조목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토론문으로 참조하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기후위기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한 반성적 평가도 재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기재부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8.8조 원의 세수감소 예상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유류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들보다 정유사에 돌아갔다는 지적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정유 4사가 상반기에만 12조 이익을 냈고 이들의 매출은 30~50%가 국내 매출입니다.

실증적으로도 국제유가 변동, 환율 고려해도 세금 인하분이 충분히 반영되는 되지 않았

다,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하 효과가 불충분하고 불확실한데도 정부에서는 이런 인하 정책의 효과를 극구 분석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계속 막대한 세수를 포기하고 정유사들의 이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제유가 상승해서 석유소비량 오히려 늘었고요. 원유수입액 사상 최고, 그만큼 무역적자도 확대됐고, 탄소 배출량도 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화석연료 산업에 지나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IMF는 2020년 한국의 화석연료 보조금 규모를 81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정유사들은 탄소 배출권 100% 무상할당 받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산업용 전기 혜택으로 평균전력 구입단가에 비해서 2,823원 적게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정유사들은 조특법상 각종 명목으로 2,200억 원 법인세 공제를 받았고, 이번 세제개편안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삭제로 상반기 이익만으로도 2,500억 원 이상의 혜택 누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유공사랑 산업부가 운영하는 오피넷 자료를 분석해 보니깐요, 대한민국 유류세 감소세율이 21.1%, 다른 비교 가능한 OECD 국가들 24개국 중에 가장 높습니다. 유류세 자체도 낮는데 그걸 더 대폭 깎아준 셈입니다. 그 가운데 11개국은 예전보다 부담세액이 늘었습니다.

대조적입니다. OECD가 그래서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 혜택이 고소득층에 간다면서 한국정부에게 유류세 인

하 줄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중심으로 재정 집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IMF도 비슷한 권고를 했지만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이런 글로벌 스탠더드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탄소세 도입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후 대응에서 조세의 역할을 완전히 간과한 이번 세제개편안이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에너지 전환의 지연에 부정적인 효과를 더욱 크게 증폭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평등 기후위기를 비롯한 온갖 시대적인 과제들을 외면한 채로 감세와 긴축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정부는 국민들과 스스로 약속한 내용조차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대선 당시의 윤석열 후보가 주요 공약으로 매니페스토 본부에 제시했던 국정과제 공약 예산 266조 원이었습니다. 지역공약 예산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주요 공약 예산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아주 미미하게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본부에 제출하지 않은 공약 중에서 대형 공약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경부선·경인선·경원선 철도 지하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수조에서 수십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사업들 모두 공약이 취소되거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각종 복지공약들이 대기업과 부자감세로 후퇴되고 삭제되는 것이 현 정부의 명확한 기조입니다. 이렇게 시대에 역행하는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예산 세제개편안 대

꼭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해서 당선이 취소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재원 계획상 불가능한 공약을 무더기로 제시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내팽개치는 풍조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치적인 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전주성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정부 지출을 해야 할 곳이 한둘이 아닌데 지금이 감세할 때인가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 환경, 에너지 등 문제에 대한 세제상의 관심도 촉구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안이죠.

다음은 강남대 유호림 교수님 토론입니다. 10분입니다.

● 유호림

예, 안녕하십니까. 강남대 유호림입니다. 제가 이번 세제개편안의 토론을 준비하면서 사실 버전을 네 개를 만들었거든요. 네 개 만들었는데 앞서 발제해 주신 세제실장님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비슷한 내용을 많이 다뤄 주실 거 같아서 저는 앞에 발표하신 내용 중에 빠진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세제개

편안을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한 부자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보면 초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했고요. 그리고 중견기업과, 특히 중견기업이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하고 가업중과제도를 완전히 다 풀어서 실질적으로 중견기업들도 엄청난 조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와 더불어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 자산가들에 대해서 종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제개편을 통해서 조세부담을 매우 낮게 낮춰주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이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대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세제개편안이 사실상 굉장히 큰 폭의 조세부담이 경감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조세 회피를 위한 조세 전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세제는 상속·증여세법에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기업들이 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특수 관계인 범위도 줄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체를 묶어놓고 보면 대기업들이 국내외 자회사의, 국내외

소재해 있는 자회사들에 이익을 몰아줄 수 있게 돼 있고, 그 이익에 대해서 배당금을 익금 불산입하는 구조로 전체 흐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도 필드에 있는 조세 전략가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장이 열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군데에서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더 큰 조세 우대가 발생 또는 조세, 세수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해외에 유보돼 있는 배당금, 배당 가능한 이익(기재실 발표), 기재부 세제실 발표로 100조 정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봤을 때, 물론 모든 금액이 다 현금은 아닙니다만 대기업들이 유보하고 있는 금액이 대략 한, 유보 이익이 대략 한 957조, 뭐 현금은 아니겠습니다만 전부 다. 예컨대 그 중에 한 20%만 현금으로 쥐고 있다 하더라도 200조 정도를 배당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조세의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25%에서 22%로 세율을 인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세제개편안에 여러 가지 구멍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더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스탠더드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컨

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2020년에 OECD에서 코로나 위기 단계, 봉쇄 단계, 전환 단계 그리고 포스트 코비드 시즌 해가지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조세 정책, 세제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권고가 있었는데, 그 권고에 따라 지금은 전환 내지 포스트 코비드로 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증세를 하고 복지 지출을 확대해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타격을 입은 경제 주체에 대한, 특히 중산층과 서민이겠죠. 그에 대한 지출을 강화해야 된다는 단계인데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포스트 코비드를 준비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대기업에 증세를 하고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해서는 복지 지출 증대시키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금방 뭐 여러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코비드에 따른 유동성 증가, 그리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의 힘으로는 그 어느 하나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렇다면 결국에는 좀 전에 장혜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시장의 시대가 아니라 재정의 시대가 온 게 맞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번 세제개편안은 ‘완전히 시장에 모든 걸 맡기겠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좀 전에 2021년도에 발표된, 올해 발표된 거죠. 올해 발표된 유럽 이코노미 리뷰에 나온 논문도 마찬가지로 과거 2014년

에 OECD도 그랬구요. 2015년에 IMF에서도 '이런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 낙수 효과는 전혀 없고 재정악화만 심화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증수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 2022년도에 영국이 감세를 하겠다고 했을 때 월드뱅크, IMF는 대놓고 '감세 정책 철회하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긋지긋한 낙수 효과라고 하면서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 정부가 이런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세제개편안도 여전히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과거지향적인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이 국가 체제가 사실은 시장이 먼저냐, 국가가 먼저냐? 답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론적으로 풀어봤을 때 결국에는 사회계약설에 근거한 시민이 주체가 되는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시민들이 계약자유와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낸 것이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시민을 보

호해야 시장이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들은 이 부분에서 국부론과 조세원칙을 ...보수처럼 내세우면서 조세 원칙은 응능부담에 따라야 되고, 간소한 세금, 납부 편리,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거 350년 전 얘기입니다. 350년 전에 절대 왕권 지배하에 있던 시민 계급이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니까 '그것 좀 물을 정해라.'라고 해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350년 전에 얘기를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이대는 것이 과연 아직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관점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80년대와 레이거노믹스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가 모두 감세 정책을 해왔다, 감세의 주된 대상은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상속·증여세였죠. 지금 우리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과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 레이거노믹스 이후에 미국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대부분 다 잘 아시는 사건이라고 생각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촉발된 것이 유해로운 조세 정책입니다. 1990년대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자본 유출을 우려하니까 모두 다 법에서 인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 ... 프로그램을 가동해

서 이런 과정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미 40년이 지난 대처리즘부터 시작해서 레이거노믹스부터 지금까지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전혀 이 현대 사회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 체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법에 의해서 내라.’가 아니라 ‘국가가 법에 의하지 않고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그것이고요. 이런 취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죄형법정주의 또한 범죄자를 잡아넣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불필요하게 시민의 인권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일관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대기업의 감세하고, 뭐를 서민들에게 증세하고 하는 이 관점에 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가.

물론 어느 한쪽은 자유주의론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계약론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민이 먼저 시장의 주체가 되어 있고, 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먼저 보호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번 정부가 제출한 첫 번째 세제개편안은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시장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격안을 두고 살펴보면 예컨대 카네기 같은 경우는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데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기회균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 ... 이상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잘 아시는 카네기는 대부호였죠. 그런데 거대한 부의 축적은 사회가 생산한 것을 개인이 소유함으로 발생한다는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자유는 정치적 자유가 시장의 자유보다 우선하고 있다. 경제적 자유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제가 도표로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분배는 점점 악화되고 그 가운데 인구는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는 감소하고 투자는 그나마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투자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

다시 말하면 지난 40년 동안 계속해서 감세해 온 결과 자유주의 경제학을 추종해 온 결과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건이 이렇다고 한다면 뭔가 다른 방향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22년도 미국의 소득 불평등도

가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려 1997년 IMF 이후에 지금까지 대략 20년의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 그 양극화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 전주성

1분 정도 마무리...

● 유호림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가운데서도 자산의 양극화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는 건데, 자산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근본에는 사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성장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뒤에 남아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시다만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결코 높지 않고요.

OECD 평균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OECD 평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GDP 규모 매우 낮은 나라들, 예컨대 우리와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런 법인세율 10%, 15%짜리 나라들 경제 규모 작은 나라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걸 평균을 내버리니까 당연히 우리가 높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뒤에 보시는 것처럼 G7 국가를 중심으로 놓고 살

펴보면 우리나라가 결코 높지 않고요. 다만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건 개인 소득세의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세수입 중에 매우 높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세 세수가, 법인세 부담... 세율 구조를 전 세계랑 비교해 보면 우리가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 우리나라에서 거둬들인 세금 중에서 소득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소득세를 더 많이 감면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은 참고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유효세율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세수를 제가 계산해 본 건데요.

노동자들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과 같은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금융과 관련된 소득, 특히 부동산 보유,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이상하죠, 우리나라가 훨씬 더 또 토지 가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금융자산도 훨씬 늘어나고 있는데 그 세수는 줄어들고 있다. 뭔가 좀 잘못 작동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주성

마무리해 주시죠.

● 유호림

네,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

는 나라 우리가 가는 경제 발전 구조를 보면 결국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 있는데 이번 세제개편에서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고요. 향후 이런 경제 구조로의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점차 심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조세 제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21세기형 새로운 조세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조세 제도 전반은 1970년대 중후반에 틀이 잡혀서 지금 대략 40년 진행돼 왔는데 이미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 맞는, 말 그대로 정말 중요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전주성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료집에 내용이 다 잘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김우철 교수님입니다.

● 김우철

네, 앞에서 참 다양한 견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조금 큰, 좀 멀리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준비한 내용은 있지만 제일

끝에 했기 때문에 접치는 게 많고 그래서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뭐 특징 같은 거는 되게 두꺼워요. 다른 때보다 훨씬 두껍다, 개수도 많고. 그러나 가장 특징적인 건 결국 방향과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두 가지 비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잘못된 감세다라는 비판과 왜 부자의 세금을 지금 또 깎아주는 거냐? 이것이 아마 지금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감세 기조는 저도 당초에 정확하게 이 정도 규모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중급보다는 조금 큰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은 언제 깎아줘야 되고, 언제 더 걷어야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지난 두 해 동안에 벌어진 일은, 제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하고 세입확충, 세입확충... 일종의 증세죠. 얘기를 해 왔는데 지난 2년 동안에 걸쳐서 올해 법인세가 105조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나보는 106조라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법인세 단일세목보다 더 많이 세수가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증세는 아닌데요. 어떤 분은 이거를 증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말을 뭐 보편적으로 쓰진 않으니까. 여하튼 세입 기반이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비, 세수가 확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국회를 통해서 증세를 하고 어디를 더 무겁게 과세를 해야 돼... 이런 아주 소모적이고 힘든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행히도

우리 세수가 110조가 늘어나 준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보통 지금 우리 재정적자가 100조 온다 그래서 아주 큰일 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커버할 만큼의 세수가 늘어나 준 거예요. 대단히... 대단히 사실 오늘 뭐 축하도 하시고 그랬지만 정작 축하해야 할 것들은 우리 세수가 이렇게 늘어나 준 것 즉, 국민이 뭐 기업이든, 중소기업의 근로자든, 일용직이든, 그분들이 어떤 성실히 노력을 해서 국가에 110조 원의 세금을 늘려주고 그것이 국가 재정에 크게 보탬이 됐고 최근에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돼 있었는데 그걸 일거에 지금 해결해 준 거예요. 그건 당연히 인정하고 축하해 줄 일입니다.

법인세만 해도 보통 60조에서 70조 세수인데 올해 105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40조 가까이 세금이 늘어나 준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가해 주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 재정이 다행히도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동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힘들었고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피치도 왔고 SNP도 왔고 다 왔을 거예요. 한국에 뭐 또 트집을 잡아가지고 전망을 낮추던, 등급을 바꾸던, 지금 위기 상황이 보통 상황은 아니거든요.

뭐 이미 다 해외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지금 세계 경제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제일 문제 되는 게 각국의 재정입니다. 영국이 왜 문제가 됐겠습니까? 영국 제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LG엔솔 때릴 제조업체가 없어요. 왜 세금을 낮추려고 했냐면 세율을 아일랜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는 곧 죽어도 대형제국이고 지난 여러 가지 어떻게든 유럽의 중심으로 파리보다는 기업들은 다 런던을 갔거든요. 한 마디로 다국적 기업의 헤드쿼터를 구상한 거죠. 아시아의 홍콩처럼 말이죠. 그러려면 세금이 낮아야 돼요. 근데 다 뺏겼거든요, 그동안 아일랜드에. 어쩔 수 없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상당히 낮춘 거죠. 상당히 낮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코로나 때 재정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불가피하게 올리려고 했고 존슨 총리 때, 그런데 이제 새로 들어오신 총리는 또 반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재정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각국의 법인세율은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뭐 G7, G20, OECD 평균하는데 사실 그거 그렇게 나라의 질적인 변화나 어떤 상황을 무시하고 단순히 비교하는 건 사실은 오히려 오류를 저지를 수는 있어요.

다행히도 지금 우리는 법인세에서 크게 세수가 신장하면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보실장이 여기서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세금을 덜어 주어도 법인세가 국세에 기여하는 부분에 타격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내년 세수나, 내후년 세수도... 내후년이면 이제 감세가 들어가는 때인데 초반이라 그런지 1조도 안 되는...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세수가 감소가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나보 우리 실장님은 조금 높게 보시는 거 같아요, 8조라고. 아

마 8조에서 6조 사이가 될 텐데 이걸 뭐 경기가 좌우하겠죠.

그러나 한 해에 8조, 6조를 덜어 주는 건 맞죠. 그러나 법인세에서 30~40조의 세금이 더 들어오고, 이 세입 기반이 유지가 된다면 이거 할 만한 선택인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그렇게 법 세제를 통해서 사회 정의를 이루고 인류의 평등을 이루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법인세가 할 일은 국제 경쟁력 유지하고, 뭐 세금 좀 깎아줄 테니까 더 벌어들이다. 그런 거거든요. 왜 과거에 법인세를 낮춰도 투자가 안 늘어나느냐? 세계화 시대는요, 거의 비용 싸움이에요, 비용 싸움. 조금이라도 더 한계 비용을 낮추고 평균 비용을 낮추는 쪽에 공장을 세우고 공장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원료가 싸고, 노동비가 싸고, 세금이 낮은 곳으로 무조건 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세금을 조금 낮춰준다고 국내 투자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코로나 시기 동안에, 여러분 들었죠? 리쇼어링이라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뺏아가려고 그래 우방에서,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바이든이 서울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은 게, 엘런 장관이 제일 먼저 찾은 게 LG의 배터리 공장이었고요. 바이든이 단독으로 면담한 사람이 삼성이 이 채용, 뭐 보러 왔겠습니까? 삼성이 정말 나노, 10나노 기술까지 갖는지를 확인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엄청난 인센티브를 줄게 오라고 했어요. 그게 연초부터 이제 터져 나오면서 수십

조의 돈을 주고 각국의 경쟁력, 특히 전략산업 기술. 거의 지금 각국이 말입니다.

강대국이 반도체 기술, 이차 전지 기술, 뭐 기타 등등 지금 4차 산업과 연관된 전략 기술의 사활을 걸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나 우리를 부러워하는 많은 국가들, 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죠. 그런 국가들에게 오히려 돈을 줄 테니 데려오라고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과장은 아닙니다. 뭐 그래서 그 돈을 뭐 더 줘야 된다, 대기업.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자본에 대한 과세를,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조금 시대 전환에 맞는 각도로 좀 볼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세제 뭐 합리화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 현실인 겁니다. 현실에서 법인세를 깎아 줄 만큼 충분한 기여를 했고 또 그것이 지금 시대 상황에 상당히 부합하는 면이 강하다 그런 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세금도 지금 오늘 보니까 많이 얻어터지는 거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본다면 시끄러운 세금인데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를 입으면 쌀을 걷고 돈을 걷어서 불우이웃을 나눠주거나 노인들을 지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걷죠? 세금의 논리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을 일단 하죠. 능력 과세입니다. 하지만 보통 단일세율로 걷습니다. 자, 일련 1번부터 끝번까지 소득순, 자산순으로 쪽

서고 그거를 뭐 5명씩 끌어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누진과세를 그것도 뒤에 가서 급격히 올리는 이런 짓은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진세 구조가 상당히 이게 평등하다 이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적, 그 사회에서 정하는 거니까.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기준을 갖다 댔을 때 어떤 누진세율이 가장 수직적으로 공평한 거냐? 답이 있느냐? 없어요. 대부분 사회주의권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한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이죠, 대표적으로. 앞으로 뭐 북한이 자본주의가 된다면, 뭐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어떤 소득세제의 누진세를 택할 것 같습니까? 실제 20년 전에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단일세율을 택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요, 어쩌면 그냥 ... 한 번 돌려보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차이를 두는 세금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보통 세금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잘 동의 안 합니다. 동학 혁명 때 우리가 조세 형평성 중요했잖아요.

그때 원했던 건 '우리를 가혹하게 수탈하지 말고 그리고 양반도 세금을 내라.'예요, 사실은. '너희들도 세금을 내라, 귀족들도.' 그때 세금의 형평성... 그때는 그랬고 갑오경장에 와도 뭐 그렇게 10배 이상으로 세율을 차이나게 하면서 이렇게 실효세율에서 그것을 공평한 누진세율로 보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동산 세제를 갖고 누진세를 과하게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 과세인 소득세는 그렇게 가지만 보통 자산 과세는 이

게 이제 공공 서비스, 공공재 투입으로 자산가치가 오른 효과를 재정에 기여라는 명목의 일종의 편익 과세거든요. 편익을 많이 봤으니 그만큼 기여해라. 그랬을 때 따지는 세율은 뭐냐면 자산 가치에 그냥 딱 비례하는 겁니다. 단일세율인 겁니다.

저희들 부동산 세제를 갖고 그렇게 많이 논쟁이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세제는 편익과세 관점에서 우리가 비례세율을 적용해도 충분한 세수가 걷힐 수 있고 그것이 중산층의 입장에서 그래도 중산층이 될 수도 있고 또 중산층 아래로 나올 분들도 있지만 보통 이게 수백억, 수천억인 분들은 이게 단일세율이든 누진세든 관심이 없습니다. 삼성의 뭐 높으신 회장이 관심 두겠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상당히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중산층이에요.

그런데 서울의 중산층이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물어야 되는 대상이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편익 과세,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을 기본으로 해 가면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렇게 세율표가 3 페이지예요, 3페이지. 종합소득과세, 종합부동산세 세로 6단계인데요. 이게 세율을, 3페이지예요. 이거 외울 수도 없고 원래 누진... 전국과 전국에 있는 주택들 합산해서 누진과세 하자가 그 취지인데, 하나의 그걸 이루는 거거든, 누진과세. 다 합산해서 누진세 하니까 충분히 누진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2주택이야? 조정주택이

야? 그러면 이제 세율이 막...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이거 합리화 하자.’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의 정상화 정책이지 이게 부자를... 지금 대한민국 어느 정권이 부자 편을 들고 부자에 기대어서 사회 구성원의 그런... 이게 ...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줄이겠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세도 세제도 우리가 보편적인 편입 과세 단일세율인데 아직 우리 정서에는 그래도 주택은 많이 불평등한 그런 정서가 있고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현... 이게 문재인 정부 2019년 조세제정개혁특위에서 만든 거보다 더 강해요. 그리고 실제 이 새로운 세제로 인해서 감소하는 세수가 별로 없어요.

지금 고 실장님 뭐 ‘상당히 경감 했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세법 곤장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뭐 걱정하실 거 없어요. 부동산 가격이 일시 하락하겠지만, 한국 경제가 성장을 해 준다면 가장 빨리 이제 복구되는 또 세금이 자산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주성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이번 감세안이 야당이 우려할 만큼 재정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라는 점을 말씀하셨고, 기업 과세와 부동산 과세의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래 방청객 질의를 들을 시간이지만 주최 측에서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남은 한 3분 정도의 방청객을 대표해서 몇 가지 간단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는데 역시 가장 논쟁이 치열했던 부분은 법인세 감세안 부분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좀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수 비중이 뭐 일반적으로 개도국들이 법인세수 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더 높습니다. 한때는 한 15% 정도로 일반 소득세보다도 높았었는데 지금 좀 낮아져도 여전히 상당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세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법인세 어떤 기업 경쟁력 얘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서 항상 이게 논쟁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 한두 가지 언급을 하면 첫째는 기업 경쟁력을 위한 법인세 감세라면 그것이 명목세율 인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둘째는 요즘 같이 자본 이동성이 자유로운 시대에서 명목세율이 지나치게 국제 표준에서 벗어나면은 국제적 조세 회피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은 경제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수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세수 증감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세수 증감은 이제 잘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은 zero-sum game이 아닙니다. 같은 정책 수단을 가지고도 다양한 정책 조합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지 유능한 정부라고 할 수가 있죠. 경제 활력을 모색하는 단기적인 사안과 복지재원 확보 같은 중장기적 과제의 적절한 배열과 배합이 있어야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 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가 낸 세금이 잘 쓰여져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일곱 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이예재

이상으로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의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발 간 일 2022년 11월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22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

